

2016



Office

Research



Farming

International



#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and Management  
Techniques for KIAHS & GIAHS Sites





## <제 출 문>

본 연구보고서를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 기법 개발 연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환(농어촌연구원)  
연구원 임상봉(농어촌연구원)  
연구원 전택기(농어촌연구원)  
연구원 최예리(농어촌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사)한국농어촌유산학회

책임연구원 윤원근  
대표연구원 전영옥  
연구원 최식인  
연구원 유학열  
연구원 이제이  
연구원 김주인

연구자문 : 이유직(부산대학교), 오충현(동국대학교), 최종희(배재대학교), 이인배(충남연구원),  
황길식(명소IMC), 강희천(금산군청), 김홍상(KREI), 김기엽, 백승석(한국농어촌공사)





## < 요약 문 >

###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6건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 중 2건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에 따라 3년간 15억의 예산을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2016년 10월 현재 6개 유산지역 중 5지역이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
- 그렇지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이후의 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농업유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과는 달리 ‘보전을 통한 활용’에 가치를 두는 정책임. 즉, 해당 유산지역의 유산가치를 지역의 주체들이 인식함으로써,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임. 다시 말해, 농업유산제도는 유산의 지정과 사업비 지원보다도 사후 관리 단계가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임
-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농업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현재 FAO, 일본, 중국 등 관련 주요국들은 아직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 또는 기초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개발은 농업유산의 가치에 바탕을 둔 농업유산지역의 합목적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성과가 현재 제도도입을 검토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주변국 및 FAO에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통하여 한국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3. 연구범위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모니터링의 개념
- 국내 농업유산 제도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분석
- 농업유산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방향
  - 일본 및 중국 GIAHS지역 모니터링 사례
  - 농업유산과 관련성 있는 모니터링 지표 사례(일본)
  - UNESCO 세계유산제도 운영 사례(국내, 해외)
  - 천연기념물 제도 보전 사례(국내)
-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지표개발의 기본방향 설정 및 예비지표 도출
  - 지표의 검증 및 현장 적용성 검토
  - 최종 지표 도출
-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 정립
  -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체계
  -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에 따른 환류
  - 제도적 연계방안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개정안 등)
-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4. 연구결과

○ 도출된 지표를 통한 농업유산지역의 관리 체계

단계	모니터링 종류	시기	주체	주요 내용
준비 단계	지정신청서상 모니터링	지정 신청서 제출시	시장 · 군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점검해야할 부분을 중심으로 농업자원 설명서 속에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
지정 단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 의 모니터링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시장 · 군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수립하게 되는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향후 지속적으로 측정가능한 모니터링 지표(공통지표, 자율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여 기준치로 활용
운영 단계	정기 모니터링 (Periodic Monitoring)	년 1회 이상	시장 · 군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채택된 지표(공통지표, 자율지표)와 각각의 지표에 적합한 모니터링 시기를 적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기술 모니터링 (Technical Monitoring)	2년 1회	시장 · 군수	모니터링 지표 중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년에 1회 전문가들이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모니터링(생물다양성, 농업유산 실측, 항공사진 판독 등)
	통합 모니터링 (Integrating Monitoring)	2년 1회	농림 축산 식품 부	국가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통합모니터링으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유산별로 진행되어 오던 정기 모니터링과 기술모니터링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는 작업으로 2년간 이루어진 농업유산의 변화와 보전관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함
	정책 모니터링 (Reactive Monitoring)	필요시	농림 축산 식품 부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각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중대한 현상변경이 예측되는 경우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을 경우 긴급하게 실시하는 모니터링

○ 최종 도출된 모니터링 지표

구분	지표	모니터링 방법	비고	
운영체제	관리주체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와 농업유산에 관한 전문성을 점검하고 실제 업무계획이나 업무분장표(조직도), 회의록, 농림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증빙서류 등을 제시	체크리스트	
		농업유산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지속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조직도, 관련 활동내용(사진 및 회의록)을 첨부서류로 제시	체크리스트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 및 운영상황(인센티브 유무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및 운영실적을 제시	체크리스트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체크리스트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훼손정도(일정 높이에서 사진 촬영),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할 DB 구축여부 및 2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정량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DB구축 여부 및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정량	
		모니터링 결과 환류	모니터링결과 피드백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반영된 실적을 제시	체크리스트
	관리계획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 수립 및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 등을 검토	체크리스트

구분		지표	모니터링 방법	비고
보전	전통 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및 산출량, 재배면적의 변화	정량
		전통농업 시스템(기술) 유지	농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전통농업기술 또는 시스템을 보전하고 있는지 기술	체크 리스 트
	생태	생물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 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정량 정성
	경관	경관의 변화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 (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 진을 제시	정성
	전통 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남아있는 전통농경생활문화의 특성, 이를 전수할 수 있는 농업인의 유무, 전승을 위 한 노력, 관련 행사 등에 대해 점검	체크 리스 트
활용	경제 적 효과	관련 상품개발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1, 2차 상품 및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 념품 등) 개발	체크 리스 트
		농가소득향 상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 득증가율	정량
		관광객 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 율	정량
	사회 문화 적 효과	홍보활동으 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언론매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내용 제시	체크 리스 트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주민협의체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사업 비 확보 및 활동내용 제시	체크 리스 트
	환경 적 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관광기반시설, 주민 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 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체크 리스 트

○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

구분	대항목	중항목	지표	단계			
				준비	지정	운영	
공통 지표	운영 체계	관리주체 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	○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	○	○	○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	○	
			DB구축		○	○	
			모니터링 결과 환류			○	
		관리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	
	보전	전통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	○	
			전통농업시스템(기술) 유지	○	○	○	
		생태	생물다양성	○	○	○	
		경관	경관의 변화	○	○	○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	○	○	
	활용	경제적 효과	관련 상품개발			○	
			농가소득향상			○	
			관광객 증가율			○	
		사회문화적 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	
		환경적 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	
	자 율 지 표	청산도 구들장논				○	○
		제주 돌담밭				○	○
		구례 산수유 농업				○	○
담양대나무밭				○	○		
금산 인삼농업				○	○		
하동 전통차농업				○	○		

## 5. 타 사례와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

구분	일본	중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연기념물	본 연구
모니터링 기본 틀	농림수산성이 설치한 '농업유산 전문가회의'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일본농업유산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보전관리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크게 기록(문헌) 검사, 현장 검사, 종합 평가로 구성	- (등재신청 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에 모니터링 지표 기재 - (등재 후) 운영지침 상 모니터링: 정기모니터링, 대응모니터링	- 3년마다 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생육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조사 실시	- 농업유산 지정 및 운영 단계별로 모니터링
관리 체계	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기록검사: 중앙정부 현장검사: 해당 지역 지방농업부 종합평가: 해당 지역 담당부서	- 정기모니터링: 세계유산등재신청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정기모니터링 실시. 6년 주기의 정기보고에서 각 협약국의 유산별 모니터링 결과를 유네스코에 보고 - 대응모니터링: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산의 위협·훼손 여부를 모니터링함	- 정기조사: 연1회 실시,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 와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조사 - 간이조사: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천연기념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	- 지정신청서상 모니터링→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 모니터링→운영단계(정기모니터링, 기술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정책모니터링)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	- 각 협약국의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등이 유산을 관리	- 관련 전문가가 모니터링 -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	-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분	일본	중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연기념물	본 연구
관리 주체	이머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리	분담		립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수리(식물) 기술자 등해당	관리주체이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이 현장을 관리
지원 예산	별도의 예산 없음	확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협약국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활용</li> <li>- 한국의 경우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 예산(국비5, 지방비5)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전국사업)로 일괄 지원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에 위임, 자체 처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제안</li> </ul>
주요 모니터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업의 추이</li> <li>-신규귀농자수</li> <li>-농업유산 인증제품 판매점수</li> <li>-지역해설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면적 보호</li> <li>-전통품종 보호</li> <li>-생태기능 보호</li> <li>-농지환경 보호</li> <li>-농지경관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의 물리적 측면: 자연환경, 관개시설, 무형요소 등</li> <li>-영향요인: 유산구역 주변 건설사업 규모, 자연재해 범위 등</li> <li>-사회·경제·문화적 측면: 농가소득, 관광객 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존사항: 자연환경, 문화재구역관리, 생육실태, 훼손 및 변형, 오염 여부 등</li> <li>-관리사항: 소방 및 안전관리, 방문객 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지표: 보전(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생물다양성, 경관변화 등), 활용(농가소득 증가율, 관광객증가율 등)</li> <li>- 자율지표</li> </ul>



## 6. 결론 및 제언

### 가. 결론

-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모니터링 및 관리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합목적적 운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3년간 15억을 지원해주는 정부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우리 농촌지역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통하여 보전하며 농촌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즉 ‘보전을 통한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다시말해, 농업유산은 ‘사업’적 측면보다는 ‘가치’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지표와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은, 농업유산 선정지역의 평가개념이 아닌,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농업유산관리활동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나. 제도적 개선방안

-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검토
  - 현재 품목별로 구분하여 농지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공역형 직불금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사업 유형에 농업유산 주민활동 지원 추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등 보완을 통하여 농업유산지구의 보전과 활용과 관련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업유산 관련 유형 추가
  - 농업유산 유형을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새롭게 추가하여 향후 보전 및 활용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일반농산어촌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농업유산’등 보전의 개념을 가지는 신유형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기간 연장
  - 기존 3년 15억에서 5년 15억으로 기간을 2년 연장해주는 방안 (3+2) 검토
  - 최초 3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 진행, 차후 2년은 모니터링 및 주민활동 예산확보를 중점으로 하되, 사업 종료 후 예산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전관리계획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농업유산의 복구와 관련된 예산 확보 필요
  - 농업유산의 복구 등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함
  - 문화재청의 보수정비사업 예산확보 사례를 보면 국고보조금(총액 계상)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음
  - 또한 문화재청은 자연재해 등 긴급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매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확보하고 있음
  
-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개정 필요
  - 제시한 농업유산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확정하게 되면, 현재 운영중인 농업유산 관리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
  -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제5조, 13조, 16조, 17조, 18조, 19조가 해당 (모니터링 및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 농업유산의 전문적 관리기구(중간지원조직)의 지원 필요
  - 농업유산을 ‘사업’개념이 아닌 ‘가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농업유산을 바람직하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유산의 총괄적 관리를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음

## 7.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본 연구결과는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 선정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직 정립되지 않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일본 및 중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방안 등의 국제적 기준정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 궁극적으로 농업유산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은 농업유산지역의 정기적,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



##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and Management Techniques for KIAHS & GIAHS**

**2. Research Period** : March, 2016 ~ December, 2016

### **3. Background & purpose of study**

- This study is one of 「Rural Development Experiment Research」 funded by MAFRA(Ministry of Agricultural Foetry and Rural Affairs) and aims to develop monitoring index and management techniques for KIAHS and GIAHS sites in Korea.

### **4. Major Contents & Characteristics of study**

- Establish the concept of KIAHS and GIAHS sites' management and monitoring
- Case study for domestic and foreign sites
- Development of monitoring index fo KIAHS and GIAHS sites
- Development of guidelines to utilize periodic monitoring report that i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 **5. Application & Expected Effects**

- Suggest directions for policy introduction to MAFRA(Ministry of Agricultural Foetry and Rural Affairs).
- Suggest implications for FAO, Japan and China where are still preparing introduction of monitoring system for agricultural heritage sites
- Contribute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agricultural heritage sites where is located in Korea through consistent monitoring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개요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추진체계 .....	5
4. 농업유산 모니터링 동향 및 선행연구 .....	6
<b>제2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모니터링 : 개념적 논의</b> .....	<b>17</b>
제1절 농업유산관리의 개념 .....	19
1. 개요 .....	19
2. 농업유산관리의 필요성 .....	19
3. 농업유산개념의 검토 .....	22
4. 농업유산관리체계의 개념 .....	29
제2절 농업유산관리에서의 모니터링 개념 .....	38
1. 개요 .....	38
2. 모니터링의 개념정립 .....	38
3. 농업유산의 지정기준과 모니터링 지표구성 방향 .....	44
<b>제3장 국내 농업유산 및 제도 현황</b> .....	<b>47</b>
제1절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현황 .....	49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49
2.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지침 .....	53
3.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	55
4. 국가중요농업유산 현황 .....	59
제2절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서 분석 .....	63
1. 청산도 구들장 논 .....	63
2. 제주 돌담밭 .....	65
3. 구례 산수유 농업 .....	70

4. 담양 대나무밭 .....	71
5. 하동 전통차농업 .....	72
<b>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b>	<b>77</b>
제1절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방향 .....	79
1.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기본 목적 .....	79
2.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기본 방향 .....	80
제2절 일본 GIAHS 지역 모니터링 사례 .....	82
1. 일본의 GIAHS 지역 모니터링 제도 개요 .....	82
2. 일본의 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 기본 틀 .....	82
3. 사도지역 GIAHS 모니터링 사례 .....	87
4. 우사지역 GIAHS 모니터링 사례 .....	92
제3절 중국 GIAHS 지역 모니터링 체계 .....	95
1. 중국의 GIAHS 지역 모니터링 기본 체계 .....	95
2. 중국의 GIAHS 모니터링 시스템 .....	96
3. 중국의 GIAHS 모니터링 항목(지표) .....	96
4. 중국의 GIAHS 모니터링 항목별 구체적 기준 .....	97
제4절 농업유산과 관련 있는 모니터링 지표 사례(일본) .....	98
1.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 지표: 미야기현 都農町(쓰노초) 사례 .....	98
2. 효고현 지역만들기 지표 .....	98
3. 농림수산성 자원보전실태조사사업 관련 지표 .....	100
4. 일본 환경기본계획 관련 환경 지표 .....	102
제5절 UNESCO 세계유산제도 .....	103
1. 개요 .....	103
2. 세계유산 보호 및 관리의 기본방향 .....	109
3. 모니터링 방법 .....	110
제6절 천연기념물 제도 .....	127
1. 개요 .....	127
2. 천연기념물(식물) 수림지 관리의 기본방향 .....	130
3. 모니터링 방법 .....	132



<b>제5장 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개발</b> .....	<b>145</b>
제1절 모니터링 지표 개발방향 .....	147
1. 기본방향 .....	147
2. 예비지표 개발과정 .....	148
제2절 모니터링 예비지표 도출 .....	153
제3절 예비모니터링 지표의 검증 .....	163
1. 1차 검증 .....	164
2. 2차 검증 .....	172
3.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 .....	178
<b>제6장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정립</b> .....	<b>193</b>
제1절 보전관리 체계 .....	195
1. 기본방향 .....	195
2. 주체별 역할 .....	195
3. 유지관리 .....	198
제2절 모니터링 방법 .....	201
1. 모니터링 기본원칙 .....	201
2. 지정신청서상의 모니터링 지표 .....	203
3.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의 모니터링 지표 .....	204
4. 정기 모니터링(Periodic Monitoring) .....	208
5. 기술모니터링(Technical Monitoring) .....	211
6. 통합 모니터링(Integrating Monitoring) .....	212
7. 정책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 .....	212
제3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	214
1. 기본방향 .....	214
2. 인센티브 정책 .....	215
3. 보수정비 .....	216
제4절 제도적 연계방안 .....	218
<b>제7장 결론 및 제언</b> .....	<b>221</b>

부록 1. 정기모니터링 작성 가이드라인 .....	233
부록 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의 모니터링 관련 조항(Ⅳ~Ⅴ) .....	249
부록 3.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전문 .....	259
부록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문 .....	265
부록 5. 천연기념물 정기조사 서식 매뉴얼 .....	270
부록 6.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전문 .....	275
부록 7. Survey of the Impacts of Actions Plans for Dynamic Conservation of the GIAHS sites .....	309

## 표 목 차

<표 1-1> 농업·농촌유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최종 평가지표 .....	9
<표 1-2> 성과지표검증 관련 선행연구 .....	15
<표 2-1>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요소 .....	45
<표 3-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시행규칙」 제2조의3) .....	51
<표 3-2>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지원내용 .....	56
<표 3-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및 농업자원 설명서 .....	57
<표 3-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	61
<표 3-5> 청산도 구들장논 모니터링계획 .....	63
<표 3-6> 제주밭담 관리지표 .....	66
<표 3-7> 제주 밭담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체계 .....	67
<표 3-8> 하동 전통차농업지구 지정 기준 .....	73
<표 3-9> 하동 전통차밭 경관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계획 .....	75
<표 4-1> GIAHS에서 각국에 요청한 설문 일부 .....	81
<표 4-2> SEPLS 주제별 세부 지표 .....	86
<표 4-3> 사도지역 GIAHS 보전관리 주요 지표 .....	91
<표 4-4> 우사지역 GIAHS 보전관리 관련 지표 및 산출 방법 .....	93
<표 4-5> 우사지역 GIAHS 보전관리 주요 지표별 실적 .....	94
<표 4-6> 중국 GIAHS 모니터링 항목 예시 .....	96
<표 4-7> 생태학적 보호 관련 지표 예시 .....	97
<표 4-8>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형성’ 사업 지표 .....	98
<표 4-9> 효고현 마을만들기 지표 예시(일부) .....	99
<표 4-10> 농촌지역 자원 보전 활동을 위한 조사 항목 .....	100
<표 4-11> 자원보전활동지침검토조사 관련 지표 예시 .....	101
<표 4-12> 세계유산 유형에 따른 정의 .....	104
<표 4-13>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영역 .....	105
<표 4-14> 농업과 관련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	106
<표 4-15> 세계유산 등재기준 .....	108
<표 4-16> 세계유산 등록절차 .....	109
<표 4-17>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4~6번 항목의 내용 .....	111

<표 4-18>	홍허 하니 계단식 논 등재신청서 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113
<표 4-19>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등재신청서 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115
<표 4-20>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등재신청서 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116
<표 4-21>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의 부문별 상세 모니터링 지표	117
<표 4-22>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신청서 상의 구역 구분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	118
<표 4-23>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부문별 상세 모니터링 지표	119
<표 4-24>	보호 및 관리체계 변화에서의 모니터링 측면	120
<표 4-25>	정기보고서의 구성 및 포함 내용	122
<표 4-26>	천연기념물 식물분야 지정기준	127
<표 4-27>	천연기념물 식물분야 지정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128
<표 4-28>	지역별 수립지 지정 목록	129
<표 4-29>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의 정기조사 구성내용	131
<표 4-30>	상시관리 기본 방향 및 수행 방안	132
<표 4-31>	세계유산 신청서 중 4~6번 항목 세부 내용	134
<표 4-32>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138
<표 4-33>	천연기념물 수립지 정기조사 대장	141
<표 4-34>	천연기념물 수립지 간이조사 대장	142
<표 4-35>	문화재청 훈령 제347호 제6조의 천연기념물 점검표	143
<표 5-1>	사례검토와 예비모니터링 지표 도출	154
<표 5-2>	모니터링 지표 체계	156
<표 5-3>	공통지표-운영체계와 관련된 모니터링 예비지표	157
<표 5-4>	공통지표-보전과 관련된 모니터링 예비지표	158
<표 5-5>	공통지표-활용과 관련된 모니터링 예비지표	160
<표 5-6>	자율지표-농업유산별 특수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예비지표 예시	162
<표 5-7>	1차 검증된 모니터링 공통 지표	169
<표 5-8>	1차 검증된 모니터링 자율 지표(예시)	171
<표 5-9>	2차 검증된 모니터링 공통 지표	175
<표 5-10>	2차 검증된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	177
<표 5-11>	3차 검증(현장적용)된 모니터링 공통 지표(최종)	181
<표 5-12>	3차 검증된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	183
<표 5-13>	모니터링 보고서(안) 검토	184
<표 5-14>	모니터링 보고서(안) 금산 인삼농업에 적용	188

<표 6-1> 유사사례의 모니터링 시기 .....	200
<표 6-2> 단계별 모니터링의 종류 .....	202
<표 6-3> 자율지표-농업유산별 특수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예비지표 예시 ..	207
<표 6-4>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예산 .....	217
<표 6-5>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신규 조문 비교 .....	218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프로세스 .....	8
[그림 1-2] 지표개발 Process .....	12
[그림 2-1] 성과위주관리제도 .....	31
[그림 2-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	37
[그림 2-3] 농업유산모니터링의 개념도 .....	40
[그림 2-4] 통합적 유산관리단계와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 .....	43
[그림 3-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절차 .....	53
[그림 3-2]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현황 .....	60
[그림 3-3] 국가중요농업 유산 지정 현황 .....	62
[그림 3-4] 청산도 구들장논 분포현황 .....	64
[그림 3-5] 제주 밭담 보전지역 권역 구분 .....	66
[그림 3-6] 구례 산수유농업 보전협의회 .....	70
[그림 3-7] 구례 산수유 군락지 현황 .....	70
[그림 3-8] 담양 대나무밭의 현존식생도 .....	72
[그림 3-9] 하동 전통차 농업지구 관리위원회 조직도 .....	73
[그림 3-10] 화개면 차밭 분포도 .....	74
[그림 4-1] 일본 GIAHS 보전 및 평가를 위한 중점 분야 .....	83
[그림 4-2] 일본 GIAHS 지역 모니터링 기본절차(안) .....	84
[그림 4-3] UN 개발계획(UNDP)의 ‘성과기반관리(RBM)적 접근’ 기본 틀 .....	85
[그림 4-4] 일본 GIAHS 지역 모니터링 방법 기본구상(안) .....	87
[그림 4-5] 사도시 생물다양성 지리정보시스템 도식도 .....	89
[그림 4-6] 중국 GIAHS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본틀 .....	95
[그림 4-7] 벼 생육상태 모니터링 .....	113
[그림 4-8] 기상 상태 변화 모니터링 .....	113
[그림 4-9] 정기보고서 Section 2 .....	121
[그림 5-1] 모니터링 지표개발의 지표체계 구축과정 .....	149
[그림 5-2] 예비모니터링지표 도출과정 .....	150
[그림 5-3] 모니터링 지표개발 과정 .....	152
[그림 5-4] 모니터링 지표 체계 .....	153
[그림 5-5] 모니터링 지표 검증방법 .....	164

제**1**장

서 론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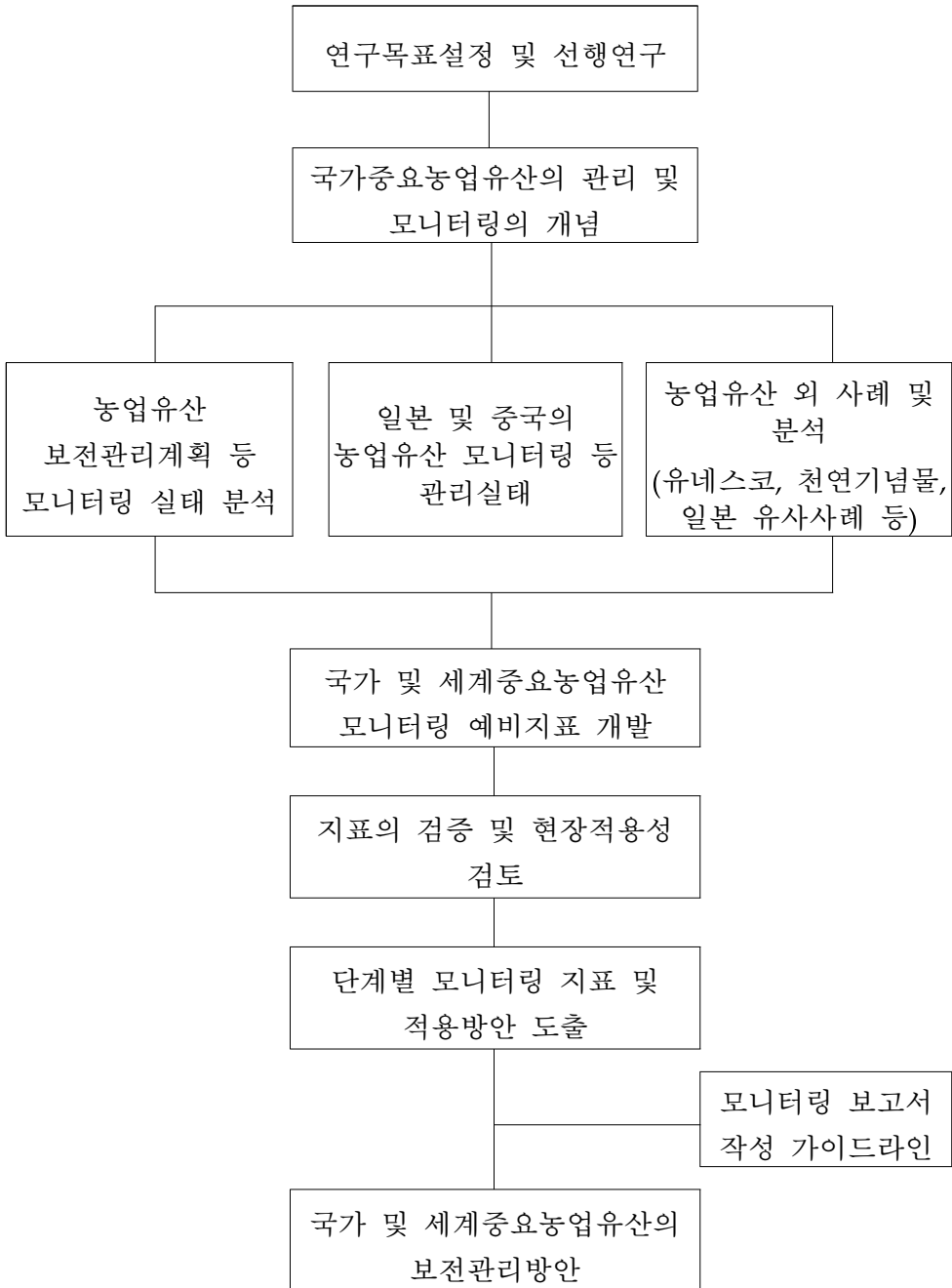
-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6건의 농업유산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 중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의 경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도 농식품부의 농업유산제도 바탕으로 어업유산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3건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는 등 국가적으로 농어업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또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개발사업)을 선호하므로, 농업유산지역은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역이 보유한 농업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이러한 농업유산의 경우 지정된 이후 해당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합심하여 지정된 농업유산의 보전과 전승, 그리고 보전을 통한 활용을 위해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나, 현재까지 기 지정된 농업유산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은 물론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한편, 농업유산이 지정된 이후 농식품부는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역이 농업유산 지정 이후에도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등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농업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기 어려움

- 특히, 지역주민의 경우 물리적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상당기간 시일이 지날 경우, 주민들은 보전위주의 농업유산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유산의 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고유한 자원(농업유산)의 보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에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및 보전관리방안의 정립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지역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보전 및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통하여 한국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방안 정립을 목적으로 함

### 3. 연구추진체계



## 4. 농업유산 모니터링 동향 및 선행연구

### 가. FAO 및 주요 국가의 농업유산 모니터링 동향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 : GIAHS)는 2002년에 유엔식량 농업기관(FAO)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어업적 토지이용, 전통적인 농어업과 관련되어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6년 6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정된 GIAHS SITES는 15개국 36개에 달하며, 이에 따라 FAO는 이러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까지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농업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sup>1)</sup>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나. 농업유산 관련 주요 연구

- 1)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농식품부·농어촌연구원, 2012)
  - 상기 연구는 현재까지 역사·문화유산과 함께 분류되어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하고, 농어업 문화보전·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과 이러한 농어업적 토지이용의 산출물로서 결합된 경관을 국가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유산 지

---

1) 한중일 농업유산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16.3.2)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우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발표하지 않아, 중국과 일본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정기준을 정립하고, 지정 이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어업유산 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함

- 뿐만 아니라, 상기 연구는 지정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어촌지역 발전의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른 연구성과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에 기틀이 되었으며, 이후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신설(2015년)에 농업유산제도가 영향을 줌으로서 본 연구가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됨. 뿐만 아니라 농어업유산의 관리, 보전을 위한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농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도입
- ※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 농업유산 지정지역 1개소 당 3년간 15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발굴·보전계획의 수립 및 유산자원의 주변 정비와 활용사업 추진으로 유산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이 소득증대 및 주민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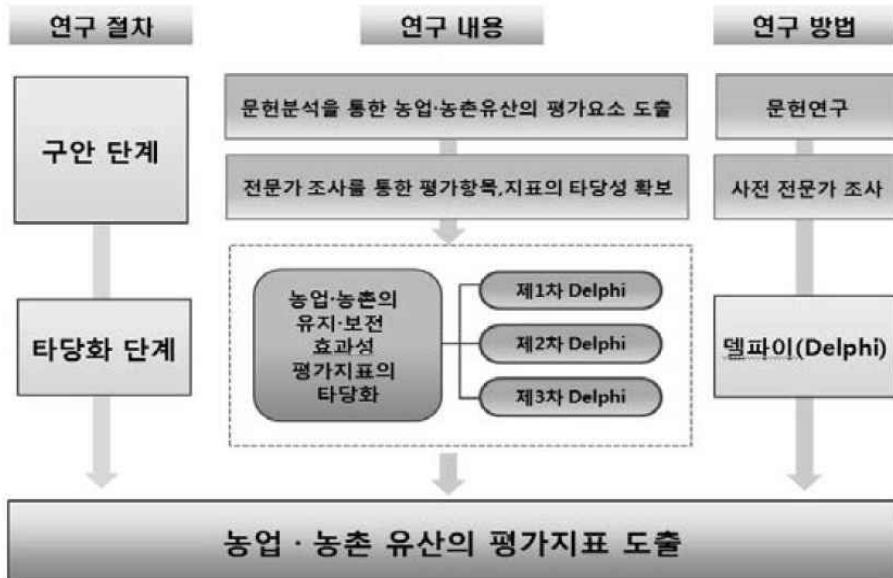
## 2)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 개발(농식품부·농어촌연구원, 2014)

- 상기 연구는 농업유산지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보전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농업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보전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립·유형화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에코뮤지엄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확립을 통하여 에코뮤지엄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유산을 활용한 유형별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에코뮤지엄의 대상범위를 ‘농업유산’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농촌유산’으로 확대시켜서 농촌지역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에코뮤지엄 시범 조성 모델을 제시함

#### 다. 농업유산 평가 관련 연구

- 1)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농업·농촌유산 유지·보전 평가지표 개발(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4)
  - 상기 연구의 목표는 농업·농촌유산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에 있으며, 주요연구내용은 농업·농촌유산의 평가지표 도출에 있음



[그림 1-1] 연구 프로세스

## 가) 연구결과

&lt;표 1-1&gt; 농업·농촌유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최종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내용
1. 관리 계획	1-1. 보전정비	농업유산의 진정성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보전 정비 정도
	1-2. 모니터링	농업유산의 관리상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1-3. 수행계획	농업유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
	1-4.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가적인 농업유산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도
	1-5. 복원 및 전승계획	유·무형 자원의 의미, 가치, 형태 등을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한 계획 마련
	1-6. 재해대비	화재, 홍수, 지진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상시훈련과 대비체계의 구축
2. 관리 지원 체계	2-1. 법령조례의 구비	유산보전관리에 필요한 법령·조례구비 정도
	2-2. 관리기구	유산관리에 필요한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의 조직구성 상태
	2-3. 인력구성 및 교육	필요인력을 구성 및 교육, 연수, 훈련의 구성 및 실시 여부
	2-4. 기록의 유지 및 문서화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주요 가치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2-5. 위협규명과 대처 방안	주요위협 등의 종류, 피해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대처방안 마련
	2-6.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관리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인지·관리 수준
	2-7. 국내외적 협력과 교류	유산관리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학술교류, 세미나, 민간교류협력
3. 평가 항목	3-1. 개발충돌	주변 지역의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한 유산 훼손 정도
	3-2. 농업생활영향요소	유산지역의 농업생활 측면의 영향 정도

평가 항목	평가지표	내용
	3-3. 생태계 관리	유산지역의 생물다양성 유지·보전 위한 계획 및 실행정도
	3-4. 방문객 수용관리	유산지역 방문객 수가 적정 수용력에 비해 초과된 정도
	3-5. 경관적 조화성	유산자원과 자연경관 등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상태
	3-6. 완충지대 관리	완충지역의 경계선, 면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정
4. 지역 네트워크	4-1.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주민협의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실제적 추진정도
	4-2. 민·관 협력	유산의 유지·보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수
	4-3. 주민공동체 구성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을 위한 주민 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정도
	4-4. 주민역량 강화	농업유산의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주민의식 함양 및 제고 실행정도
	4-5. 도농교류	농업유산에 대한 도시·농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정도
	4-6. 주민들의 노력도	주민들이 농업유산에 대한 조례, 협약 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정도
5. 유산 활용	5-1. 유산자원의 다양화	유산자원의 프로그램, 행사 등 다양한 활용 정도
	5-2. 홍보	농업유산에 대해 다양한 정보의 제공수준
	5-3. 서비스체계	안내 시설 보유 및 해설서비스 실시와 사전예약, 등 체계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정도
	5-4. 문화콘텐츠 개발	농업유산과 관련된 역사, 문화 등 무형자원 발굴 및 문화콘텐츠 개발 정도
	5-5. 브랜드개발	농업유산의 지역브랜드화가 이루어져 있는 정도
	5-6. 농업유산 교육	농업유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운용 정도



## 나) 본 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 ○ 연구 대상의 차이

- 상기 연구는 농업유산은 물론 농촌유산을 포괄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기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평가’와 ‘모니터링’

- 평가<sup>2)</sup>는 관련 사업이 잘 되었는지를 종료 후 성과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니터링은 (농업유산) 자체의 보전 및 활용 상태 및 변화를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상기 연구에서는 모니터링이 다수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으며, 평가지표의 개발 목적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평가지표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출하는 것인데, 평가대상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결여됨)
-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기법<sup>3)</sup>을 도출함으로써 보전과 활용 상태를 잘 살피기 위한 관리기법 도출에 목적이 있음

### ○ 정책적 활용방안 부재

- 평가지표의 활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시 지표별 측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 ○ 도출된 지표는 본연구의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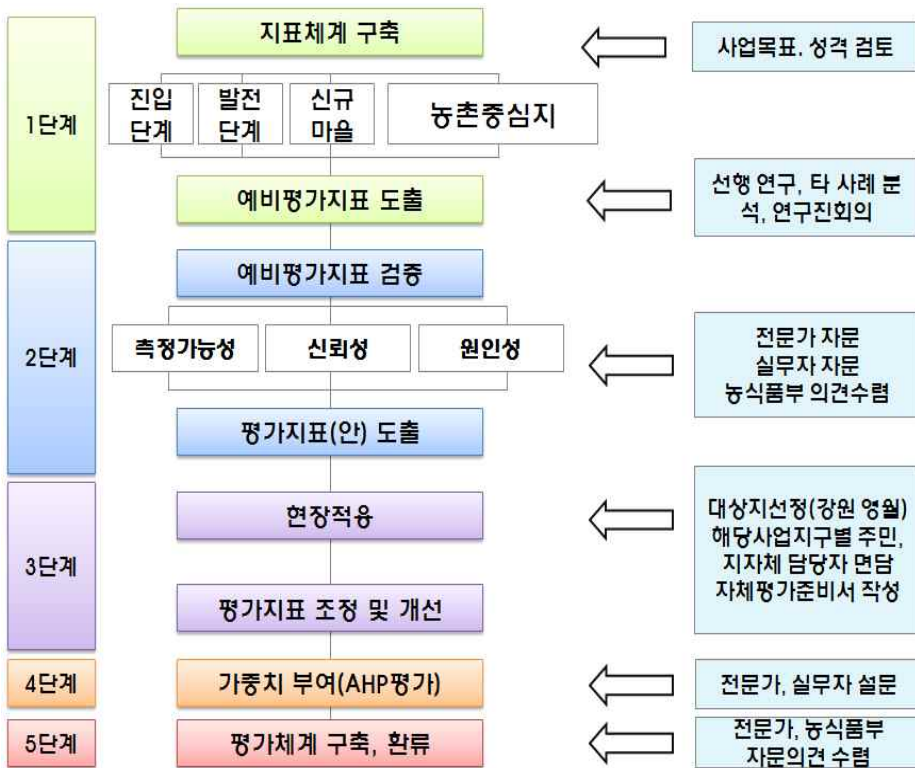
2) 문화재나 세계유산과 같은 경우, 인문학적 관점에서 평가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음. 각 유산이 가지는 독특성과 유일무이성을 한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임

3) 지표와 측정방법을 포함

### 라. 농촌지역개발 분야 평가지표 개발 관련 연구

- 1) 농촌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평가지표 및 현장적용기법 개발 연구  
(농식품부·농어촌연구원, 2015)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모니터링<sup>4)</sup> 및 평가지표 개발에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 마을단위와 읍면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지표를 각각 개발하였음

#### 가) 연구프로세스



[그림 1-2] 지표개발 Process

출처 : 농식품부·농어촌연구원(2015)

4)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을 과정평가로 정의

## 나) 연구결과 (발전단계 마을종합개발사업 지표 예시)

영역	부문	발전단계 세부지표	측정방법	시작	종료	정책값
목표달성도	공통	사업목표 이행충실도	기본계획서의 내용과 사업준공 내역서를 비교하여, 사업기간연장과 사업계획 변경 회수로 측정			7
		주민 만족도	추진위원회를 제외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전체인구의 20% 설문조사 -남성/60대 미만, 남성/60대 이상 - 여성/60대 미만, 여성/60대 이상			15
	지역소득증대	고용창출인원	사업추진기간 중 완료된 경제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일용직수*일수(사무장의 경우 1인*22*근무개월수)			8
지속가능성	운영력	경제조직수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 또는 권역의 등록된 경제조직(비영리민간단체, 주식회사,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수			18
		운영비조성 실적	사업준공 직전 1년간 마을통장내역(수입총액/지출총액)			21
		추진위원회 공동회의 건수	작성된 추진위원회 회의개최기록을 통해 회의건수 측정			15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실적	사업추진기간 중 이루어진 역량강화사업 준공도서를 검토하여 참가자수*교육이수시간(이동시간 등은 제외)			16
합 계						100

출처 : 농식품부·농어촌연구원(2015)

다) 시사점

- 예비지표 도출, 전문가 그룹 및 농식품부 자문을 통한 여러 단계의 지표 검증과정을 통하여 최종 지표를 도출하는 전반적인 지표 도출 프로세스는 본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표간 가중치 분석을 위해 진행된 계층위계분석(AHP)의 경우 사업 평가(성과측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된 측면이 있어 농업유산 모니터링 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sup>5)</sup>
- 지표 도출의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한 지표도출(FGI)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또는 전문가 델파이 기법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지표검증 관련 선행연구

- 지표검증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2015), 기재부·한국조세연구원(2102), 임성일·서정섭(2004)의 연구가 있음
- 지표의 검증은 지표가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할지, 본래의 목적을 적절히 담고 있는 지표인지 등 여러 목적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상기 선행연구 중 본 연구에 적용시키기 용이한 것은 기재부 매뉴얼(2012)로 판단되며, 특히 제시된 5개 검증항목(명확성, 측정가능성, 원인성, 신뢰성, 적시성)을 본 연구에 맞게 일부 보완/변경하는 것을 검토

---

5) 또한 AHP의 경우 응답자의 전문성에 따라 지표의 가중치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전적으로 응답하는 전문가의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며, 설문대상 전문가 Pool이 일정 인원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 농업유산의 경우 해당 분야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않아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lt;표 1-2&gt; 성과지표검증 관련 선행연구

구분	선행연구																																			
출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5, 산림사업 평가지표 개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임성일·서정섭, 2004, 지방재정분석 및 평가지표 실용성 검증																																	
검증방향	측정된 성과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제시	SMART 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점검 후 최종 지표결정 (명확성, 측정가능성, 원인성, 신뢰성, 적시성)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검증																																	
성과지표 검증방법	<p>- 실제 성과를 유관기관 통계자료, 사업보고서, 활동보고서 등 어떤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원 제시</p> <p>※ 외부자료는 자료의 원천(예: xx기관 '03년 통계자료)을 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지표 예시</th> <th>검증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 고용률</td> <td>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출자료</td> </tr> <tr> <td>문화시설별 고용만족도</td> <td>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조사</td> </tr> </tbody> </table>	지표 예시	검증방법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출자료	문화시설별 고용만족도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조사	<p>※ SMAR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검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S: 명확성</td> <td>지표는 명확히 표현되고 쉽게 이해되는가?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td> </tr> <tr> <td>M: 측정가능성</td> <td>성과측정 데이터 존재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td> </tr> <tr> <td>A: 원인성</td> <td>성과지표는 사업의 영향력 내에서 측정되는가?</td> </tr> <tr> <td>R: 신뢰성</td> <td>성과지표의 데이터는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가?</td> </tr> <tr> <td>T: 적시성</td> <td>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td> </tr> </tbody> </table>	검증항목		S: 명확성	지표는 명확히 표현되고 쉽게 이해되는가?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M: 측정가능성	성과측정 데이터 존재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A: 원인성	성과지표는 사업의 영향력 내에서 측정되는가?	R: 신뢰성	성과지표의 데이터는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T: 적시성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검증방법</th> <th>검증특성</th> <th>판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상관관계 분석</td> <td>지표 간 상관관계 정도</td> <td>지표 간 중복성</td> </tr> <tr> <td rowspan="2">왜도 분석</td> <td>왜도</td> <td>지표값의 치우침분포</td> </tr> <tr> <td>분포특성</td> <td>범위(최대,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정도</td> <td>지자체 간 변별력</td> </tr> <tr> <td>도표분석</td> <td>분포상태 실제 그래프화로 확인</td> <td>밀집도 및 상대비교 가능성</td> </tr> </tbody> </table>	검증방법	검증특성	판별기준	상관관계 분석	지표 간 상관관계 정도	지표 간 중복성	왜도 분석	왜도	지표값의 치우침분포	분포특성	범위(최대,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정도	지자체 간 변별력	도표분석	분포상태 실제 그래프화로 확인	밀집도 및 상대비교 가능성
지표 예시	검증방법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출자료																																			
문화시설별 고용만족도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검증항목																																				
S: 명확성	지표는 명확히 표현되고 쉽게 이해되는가?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M: 측정가능성	성과측정 데이터 존재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A: 원인성	성과지표는 사업의 영향력 내에서 측정되는가?																																			
R: 신뢰성	성과지표의 데이터는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T: 적시성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검증방법	검증특성	판별기준																																		
상관관계 분석	지표 간 상관관계 정도	지표 간 중복성																																		
왜도 분석	왜도	지표값의 치우침분포																																		
	분포특성	범위(최대,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정도	지자체 간 변별력																																	
도표분석	분포상태 실제 그래프화로 확인	밀집도 및 상대비교 가능성																																		
비고	<p>자체점검한 지표에 대해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한다는 의미가 강함</p>	<p>5개의 기준(SMART)을 가지고 도출된 지표에 대해 검증 후 최종 지표를 도출</p> <p>-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p>	<p>통계적 분석을 통해 지표 중 부적절한 지표들을 걸러냄</p> <p>-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 따르는 물리적 어려움으로 금년도 연구에 반영하기 어려움</p>																																	

출처 : 농식품부·농어촌연구원(2015)



## 제2장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모니터링 : 개념적 논의

제1절 농업유산관리의 개념

제2절 농업유산관리에서의 모니터링 개념





## 제2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모니터링 : 개념적 논의

### 제1절 농업유산관리의 개념

#### 1. 개요

- 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먼저 전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 유산지역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파악되어야 이에 기초하여 다음단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 이상과 같이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기로 함. 이를 위하여 다음에서는 농업유산관리의 필요성, 농업유산 개념의 특수성,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개념정의를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2. 농업유산관리의 필요성

- 농업유산관리의 필요성은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됨. 그 배경은 현 국가중요농업유산정책이 도입단계를 지나서 성숙단계로 이행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음. 즉, 국가중요농업유산정책은 2012년에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이후, 이에 의해 2016년 현재까지 6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이 지정되기에 이르렀음. 그동안은 농업유산정책의 초기단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의 지정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음
- 그러나 향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의 지정이 누적될 것이므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지정 못지않게 더욱 중요할 것임.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기 지정된 유산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 같은

요구는 농업유산정책이 도입단계에서 벗어나 성숙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국제적으로 볼 때도 이상과 같은 농업유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3월에 개최된 바 있는 ERAHS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이 대회를 통하여 알게 된 바로는 최근에 FAO 역시 세계농업유산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임. 또한 일본, 중국 등도 최근에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모니터링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부분적이지만 이미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가의 농업유산관리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한편 ERAHS 대회를 통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대표들은 농업유산관리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또는 이들 대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마련, 농업유산 관련 인적자원육성 등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였음
- 실제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필요성은 그동안의 관리상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정된 국가유산지역의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임.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데 연유한 것임<sup>6)</sup>
  - 다만 현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각 유산지역의 운영에 관한 계획이 지자체의 주관 하에 수립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이 같이 수립된 운영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후 점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즉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정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짐으로서

6) 각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 수준에서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는 2012년의 농업유산관련 제1차 연구과제(농림축산부·농어촌연구원,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방정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이후에 독자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음.

-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장치가 부재한 데서 관리상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 둘째, 각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의 활용이 미비하다는 점임. 국가유산지역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유산지역에 대한 정확한 운영실태의 파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에 상호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 현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셋째,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체계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정 이후의 관리에 있어서는 각 주체간의 역할분담관계가 불분명함
  - 예컨대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으로 지정 후에 지역 단위에서 지정 목적과 달리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운영함으로써 유산의 원형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즉, 현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조직 간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 이에 따라서 각 주체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어디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함. 그러므로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상과 같이 예상되는 관리상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 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는 것이 필요함
  - 돌이켜 보면, 그 동안 농업·농촌관련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는 많지 않은 실정임. 그 이유는 주로 제도 도입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 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이와 같은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향후 농업유산정책은 그 무게 중심이 지정에서 관리로 옮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해서 현행의 국가중요농업유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향후의 사후적 관리제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임

### 3. 농업유산개념의 검토

#### 가. 개념의 특수성

- 농업유산정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된 문제들의 대부분이 농업유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것임. 그러므로 농업유산관리의 실패를 방지하고 유산관리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유산의 개념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농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인 농업유산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유산의 지정 및 운용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왜곡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관리실패가 발생하였음. 그 이유는 주로 농업유산의 개념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과 같은 유사개념과 혼동한 데 따른 것이었음. 그러므로 농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유산 개념을 유사개념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유산의 개념은 FAO에서 정의한 것임. 즉 FAO에서 2002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목적 및 농업유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먼저, FAO는 GIAHS의 목적을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기술과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보전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농업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이에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서 인류의 삶과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농업유산(agricultural heritage)의 개념은 7) “지역사회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으로 정의하였음.<sup>8)</sup> 이 정의에서 보면 농업유산이란 오랜 세월에 걸친 농업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적 토지이용시스템과 이것으로 인하여 형성된 경관을 지칭하고 있음.

- 이렇게 정의된 농업유산의 개념 속에는 경관이라는 하드웨어적 요소와 경관에 특징을 부여하는 토지이용시스템이란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점은 다른 유산의 개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유산 개념만의 특수성인 것임.
- 농업유산의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먼저 경관은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이때 인공적 요소란 자연에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예컨대 농업관련 시설물이 이에 해당함. 그러므로 이 개념상의 경관이란 다시 말하면 자연경관이 아니라 문화경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논, 밭, 어장 등을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두 번째 구성요소인 토지이용시스템이란 인류의 농업활동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토지와 수자원의 이용시스템 즉,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의미함. 여기서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란 주로 생계농업으로 소규모 생산기술과 관련된 것이며 가족농업으로서 주로 소수종족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승되어온 농업생산기술체계에 해당됨. 그리고 이 같은 체계 속에는 공동체에 의해서 오래 동안 전승되어온 기술 및 지식체계, 그리고 고유한 문화가 포함되어 있음. 이런 점에서 농업유산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농업유산의 개념에는 이상의 핵심적인 두 개념요소를 수식하며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개념요소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여기서 생물다양성이란 전통적 농업활동에 의해 오래 동안 보존되어 온 토종의 생물 품종들을 지칭함. 특히 생물다

7) 다음은 윤원근 외(한국농어촌유산학회, 2014)농어업유산의 이해, pp.18-24를 참고하였음.

8) FAO의 홈페이지에서 정의한 농업유산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Remarkable land use systems and landscapes which are rich in globally significant biological diversity evolving from the co-adaptation of a community with its environment and its needs and aspir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양성의 강조는 GIAH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임. 다른 유산제도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바가 없었음. 그러므로 생물다양성의 강조는 농업유산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 제도에서는 특히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류의 미래의 생존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생태시스템의 붕괴는 곧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임. 실제로 오늘날 이런 예는 도처에서 목격됨. 세계 도처에서 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하여 식량자원의 고갈, 생물자원의 파괴, 생활터전의 파괴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임.

- 이상을 요약하면, 농업유산이 갖는 개념적 특징은 다른 유산의 개념이 주로 하드웨어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농업유산은 농업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함께 갖는다는 점임. 또한 유산의 개념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농업유산은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됨. 그러므로 이 제도를 살리는 것은 곧 농촌의 낙후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짐. 즉 이 제도에서는 현대적인 농업이 아니라 소규모 전통적인 농어업을 인류의 미래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이런 점에서 농업유산제도는 최근에 대두되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나. UNESCO 세계유산개념과의 비교

##### 1) 유네스코의 유산개념

- 유산제도라고 할 때 일반인들은 흔히 유네스코의 유산제도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농업유산제도도 유네스코 유산제도의 일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나 농업유산제도는 유네스코의 제도와 개념 및 운용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

제도는 1972년에 도입된 바 있으며, 당초에 대상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두 범주만이 있었으나 그 후에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었음. 그리하여 오늘날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세계복합유산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됨. 또한 세계문화유산의 영역에는 이것들 외에 문화적 경관의 개념이 1992년에 추가되게 되었으며, 그 이외도 인류의 무형유산(2003), 세계의 기록유산(1997) 등이 다시 추가되었음.<sup>9)</sup>

- 특히 1992년에 추가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은 농업유산과 혼동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이런 점에서 농업유산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음. 문화적 경관의 개념은 간단히 소개하면 기존의 문화유산개념에 자연적 개념요소를 가미하여 만든 것임. 따라서 문화적 경관은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농업유산의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그러나 두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sup>10)</sup>
- 이상과 같이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 개념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는데, 이들을 농업유산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2) 자연유산과 농업유산의 비교

- UNESCO 제도의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자연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로 정의되었음. 이 같은 UNESCO의 정의에서 보면 자연

9) 유네스코유산제도는 1972년에 세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유산 제도로써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음. 이 제도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산을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통하여 보호하자는 데에 있음. 이 가운데 복합유산은 자연유산의 등재조건과 문화유산의 등재조건을 동시에 하나씩 만족시키는 유산을 의미함.

10) 윤원근 외(2014), 위의 책, pp. 34-41.

유산은 자연적 지역이나 자연적 유적지를 대상으로 함. 이때 자연 유산은 과학 및 미적인 관점에서 세계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대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또한 이 정의에는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가 세계적 수준으로 가치가 있을 경우에 지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정의된 자연유산은 농업유산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임. 자연유산은 세계적 수준의 자연적 경관이 대상임. 그러나 농업유산은 이 같은 조건만으로는 부족함. 농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외에 여기에서 전통적 농업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야 함.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것을 생활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어야 함
- 종합해서 말하면 자연유산과 농업유산은 모두 미적, 과학적,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유산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두 개념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두 개념상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자연유산은 자연적 생성물이 그 대상인데 반하여 농업유산은 전통적 농업활동에 의해 인공적으로 이루어진 농업적 생성물이 그 대상임. 특히 FAO의 농업유산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적인 가치에 유네스코보다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 개념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3) 문화유산과 농업유산의 비교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농업유산을 문화유산과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러나 두 개념은 엄연히 정의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함. 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됨.
  - 첫째 기념물은 건축물, 조각 및 회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헐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등으로 세계적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함
  - 둘째, 건조물군이란 건축성, 균질성, 입지성의 측면에서 역사적, 미술적으로 세계적 가치를 갖는 독립 또는 연속된 구조물을 말함.
  - 셋째, 유적지에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 관상, 민족학 또는 인



류학의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유산들이 포함됨.

- 유네스코가 자연유산제도와 별도로 문화유산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자연유산제도에서는 자연의 소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문화유산제도에서는 인공의 소산이거나,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임.<sup>11)</sup> 그러므로 문화유산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결합에 의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함. 이런 때문에 문화유산과 농업유산이 혼동되기도 함
- 특히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의 세 번째 범주인 유적지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물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FAO에서 정의한 농업유산의 개념과 혼동하기 쉬움.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문화유산의 유적지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으로서 단순한 유적지를 말함. 한편 FAO의 농업유산 역시 인공과 자연의 결합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FAO의 농업유산에서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농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즉 유네스코의 유적지란 생활의 흔적으로서 건축물, 무덤 등이 남아 있는 역사적 장소에 해당함. 이에 반해 FAO의 농업유산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유적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또한 농업유산에서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가치요소로서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이상의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농업유산의 개념이 문화유산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차이 때문에 문화유산이 모두 농어업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 그리고 이는 문화유산제도와 별도로 농어업유산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이유인 것임

#### 4) 복합유산· 문화적 경관과 농업유산의 비교

-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가운데 복합유산과 문화적 경관의 개념은 이 상에서 설명한 문화유산의 개념보다 더욱 농업유산에 가까운 개념

11) 윤원근 외(2014), 위의 책, p36.

임. 두 개념의 등장배경은 문화유산제도의 개념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즉 유네스코는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 인공적인 유적, 유물을 주로 지정하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자연유산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반성으로서 복합유산제도를 추가하게 되었음. 이때 복합유산이란 말 그대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요소를 함께 가진 유산을 그 대상으로 함. 다시 말해서 복합유산이란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유산을 지칭함<sup>12)</sup>

- 이와 같은 연유로 도입된 복합유산제도는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므로 이 개념 속에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임. 이런 점에서 이 개념은 문화유산보다도 농업유산의 개념에 좀 더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복합유산 역시 모두 모두 농업유산이 될 수는 없음. 그 이유는 농업유산의 개념에는 현재 시점에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중요한 가치요소로 하지만 복합유산의 개념에는 이 같은 조건이 포함되지 않음. 그러므로 복합유산이 모두 농업유산이 될 수 없음. 그러나 농업유산은 복합유산이 될 수 있음. 이 때문에 농업유산지역이 복합유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이 다수 있는 것임
- 한편 유네스코는 1994년에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도입한 바 있음. 여기에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음<sup>13)</sup>. 따라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은 복합유산의 개념보다도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음. 즉 이 개념은 복합유산의 개념을 좀 더 정치화한 개념임. 문화적 경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첫째,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은 인공적으로 창조된 경관(designed landscape), 둘째는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셋째 신앙 및 종교,

12)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조건을 적어도 한가지씩은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함. 세계유산에는 등재조건이 총 10개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1번~6번은 문화유산의 조건, 7번~10번은 자연유산의 조건임. 10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 됨. 그러나 복합유산의 경우는 1번~6번 중 1가지 이상, 그리고 7번~10번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위의 책 p40).

13)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의 개념은 문화유산의 범주에 새로 추가되었음,

문학 등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경관으로 이를 결합된 경관(associative landscape)이라고 함.<sup>14)</sup>

- 이상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특히 둘째 영역인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의 개념은 농업유산의 개념과 매우 근사함. 이 범주에는 생물다양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유적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도 동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개념 역시 농업유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일시될 수 없음. FAO제도의 농업유산 상에서의 경관은 단순히 진화하는 경관이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있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서 진화하는 경관을 의미함. 다시 말해서 농업유산의 개념은 그 안에 농업생산시스템, 생태시스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체계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와 결부된 경관만을 강조하는 문화적 경관의 개념과는 차별성을 갖는 것임.
- 정리해서 말하면 농업유산이 세계유산과 다른 점은 농업유산에서는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단위인 자연, 생물, 전통문화가 주민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공생하는 시스템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임. 그러나 세계유산에서는 시스템보다는 자연, 생물, 문화 등 각각의 요소가 현저하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관심의 초점이 있음. 따라서 두 제도는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

#### 4. 농업유산관리체계의 개념

##### 가. 관리의 개념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의 유형, 강도 등을 어떤 수준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의 목적, 농업유산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논의의 순서상 먼저 관리의 통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14) 오만근(2005), 문화적경관 개념의 도입과 보호체계, 국토논단. pp.9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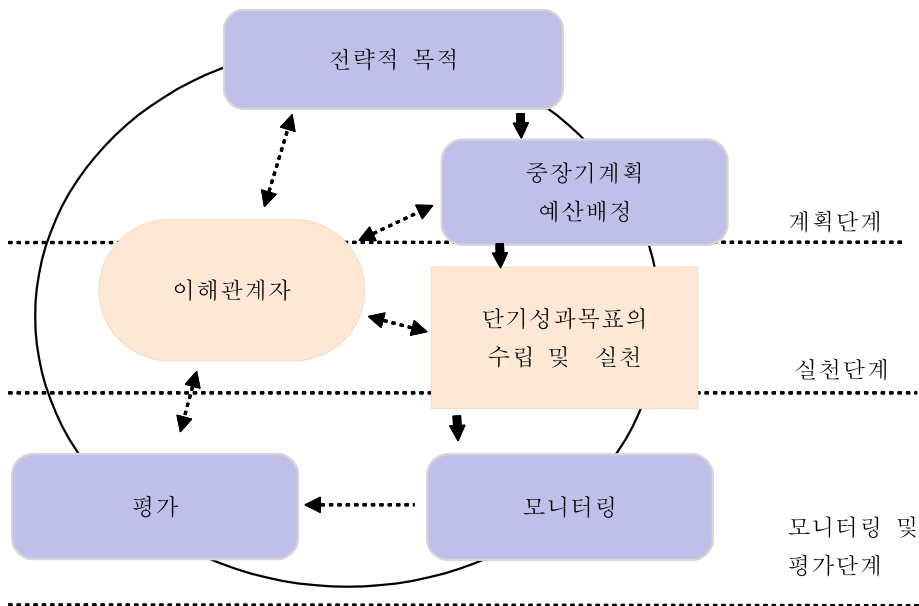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관리란 목적, 대상에 따라 연성적인 관리에서부터 경성적인 관리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즉, 관리란 통제 중심의 행정관리, 기업의 경영 및 조직 관리 등 여러 형태가 있음.
-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관리란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sup>15)</sup>으로 정의되어 있음. 이 같은 정의에서 볼 때 관리란 전통적으로 지도와 조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오늘날의 관리의 개념은 과거와 같이 지도·조정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관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의 합리화·과학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 즉 오늘날은 관리란 관리목적·관리주체·관리대상·행동 등을 체계화하여 정의함. 이와 같은 사고의 흐름에 기초하여 생각할 때 관리의 개념에는 계획·조직·통제라는 세 가지의 주요한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겠음.
- 그러므로 합리적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구성 개념인 계획, 조직, 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sup>16)</sup> 여기에서 먼저 계획이란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검토하여 예정된 행동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단계에 해당함. 그리고 통제는 계획과 실적을 비교 대조하는 과정으로 이들 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며, 또한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시키는 단계를 말함. 다음으로 조직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성원의 협동 체계에 해당함.
- 기본적으로 관리는 계획 → 조직 → 통제의 반복적 순환활동에 의하여 운영됨. 이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이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재설정되며, 계획의 실천성이 강화됨.<sup>17)</sup>
- 합리적 또는 과학적 관리를 이상같이 정의할 때 관리기술의 정도 또는 수준은 계획·조직·통제라는 각 부분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됨. 즉, 계획을 위한 관리기술은 예측·대안의 설계 및 대안의 선택 등에 관한 능력, 조직을 위한 관리기술은 활동의 분석이나 평가·조직설계·인사 등의 능력, 그리고 통제를 위한 관리기술은 계산·비교·분석·감사 등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

15)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16) 김정구(1969), 관리회계의 기본적 전제, 건국학원지(제4집)

17) 이것을 매니지먼트 사이클(관리의 순환활동)이라고 함.

- 이외에 UNDP에서는 개발계획을 모니터링 및 평가할 때 성과위주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RBM이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류과정(feedback loops)을 중시하는 관리의 한 방법임. 여기에서는 성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업무의 과정, 산출물 등을 상세히 제시함. 이때의 성과는 물적 산출물, 새로운 변화 및 영향일 수도 있고 또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목표에 대한 기여일 수도 있음. 이러한 실제적 성과들은 책무의 평가, 보고 등으로 사용되며, 그리고 계획의 설계, 자원조달 과정 등으로의 환류를 가능하게 함.<sup>18)</sup>



[그림 2-1] 성과위주관리제도

18) 이상과 같은 성과위주관리란 전략적 통제 메커니즘의 하나로서 균형성과관리제도와 유사함. 균형성과관리(BSC: balanced scorecard)란 전략적 관리·성과평가 시스템의 하나임. 이 모형에서는 조직의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측정지표를 작성하여 활용함. 이 모형의 특징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간의 균형을 중시함. 특히 과거노력에 의한 결과의 측정지와 더불어 미래성과를 유발하는 동인 간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이것은 데이비드 노턴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카플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1992년에 최초로 제시하였음. 현재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도입한 무형자산 평가시스템임(한경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 나. 관리체계상의 모니터링 기능

- 관리의 과정에서 관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음. 관리의 유효성은 최종적으로 목적의 달성도에 따라 판정되기 때문에 이를 판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의 절차가 관리에서 필요한 것임
- 모니터링이란 일반적으로 관리시스템의 움직임을 관찰·통제·검증하는 작업을 말함. 즉 모니터링이란 관리대상의 상태, 운영행태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시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리의 순환과정에 재투입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sup>19)</sup>
- 특히 정책 모니터링이란 해당 정책 프로그램이 처음의 설계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법임. 즉 정책 모니터링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설계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함<sup>20)</sup>
- 이와 같이 관리체계상의 모니터링은 관리의 실패를 방지하고 관리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임. 특히 오늘날 모니터링은 관리체계상의 한 단계로서의 의미 이상을 가짐. 즉 모니터링은 단순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정책의 목표로 다시 피드백 함으로써 목표를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함. 그러므로 모니터링은 관리체계상의 첫 단계인 동시에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짐

## 다.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개념정의

### 1) 기본방향

-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점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개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현 시점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

19) 모니터링의 결과에 기초하여 관리대상의 책임자에 대하여 지도, 조언, 경고 및 주의 등이 주어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음. 중국에서는 모니터링을 감측(監測)이라고 함. 이는 모니터링이 감시와 측정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됨.

20)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 사전, 용어해설,

가중요농업유산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었음. 그러므로 농업유산관리의 개념은 이 같은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립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개념은 농업유산관리의 수준에 대한 사전적 선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즉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강한 수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약한 수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에 열린 ERAHS 대회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약한 수준의 관리 즉, 바턴 업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탑 다운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한국은 두 접근의 중간적인 수준을 전제로 하여 관리의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셋째는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관리의 범위는 상이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그 가운데 하나의 관점은 관리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관리의 중심이 통합적 관리인가 아니면 개별유산지역의 관리인가 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의 초점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국가중요농업유산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임. 현재 개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즉 개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수립된 개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계획과 그 실천 사항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sup>21)</sup>
- 넷째는 국가농업관리체계는 농업유산의 성격 및 특성의 관점을 고려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즉 관리의 성격이 규제 중심의 강한 수준의 보전관리인지 아니면 활용 중심의 약한 수준의 보전관리인지에 대한 사전적 전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1) 다른 하나의 관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정책의 운용절차에 관한 범위로, 농업유산의 관리체계를 지정단계에서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 이후의 보전, 활용의 단계에 국한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개념은 이상과 같은 관리의 목적, 범위,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정해져 할 것임. 농업유산은 그 특성상 관리의 성격이 강한 수준의 보존관리라기보다는 활용 중심의 보존 관리가 바람직할 것임
- 부연하면 농업유산은 규제가 중심이 되는 행정관리나 능률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영관리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즉 농업유산은 문화재 등의 보존제도와 달리 활용, 지도, 합의를 통한 보존, 그리고 능률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성, 정체성 확보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개념을 정립할 때는 FAO 및 각국의 관리시스템의 마련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FAO는 최근에 세계농업유산지역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본, 중국 등에서는 농업유산지역의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ERAHS 회의에서 세계농업유산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만큼, 한국 역시 이에 맞추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2) 농업유산관리의 개념정의

- 관리의 개념은 관리주체와 관리 객체가 갖는 특성과 의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전통적 관리의 개념은 주로 관리주체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 즉 관리의 일반적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인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이라고 정의됨
- 농업유산의 관리를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하면 정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이 당초의 지정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조정하는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와 같은 전통적 관리의 개념을 과학적 관리의 개념으로 대



체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즉 농업유산의 관리란 정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조직을 편성하며, 이를 통하여 계획목표의 성취도를 점검함으로써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을 지도·감독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이상과 같이 농업유산의 관리를 일반적인 관리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관리의 목적이 관리주체의 통제라는 점이 강하게 반영됨. 반면에 관리대상인 농업유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sup>22)</sup>
-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관리모형이 소개되고 있음. 이들의 경우를 보면, 관리의 모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관리의 순환 등이 주요 개념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 농업유산의 관리개념은 농업유산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UNDP의 모델과 같이 협치의 성격을 갖도록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다른 부처의 유산제도와 달리 동태적 적응적 관리의 필요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음. 즉 농업유산은 경직된 보존 중심이 아니라 활용을 통한 보전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리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들의 상호작용, 되먹임(feedback) 등의 개념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농업유산관리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에 이에 기초하여 농업유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sup>23)</sup> 관리체계는 통상 행태론적 접근과 생태론적 접근방식으로 구분됨. 관리체계의 행태론적인 접근방식에 의한 설명은 중요한 한 조직이나 개별 주체에 초점을 두고서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식이며, 이와 달리 생태론적 접근방식이란 조직을 유기체로 인식하고 외부적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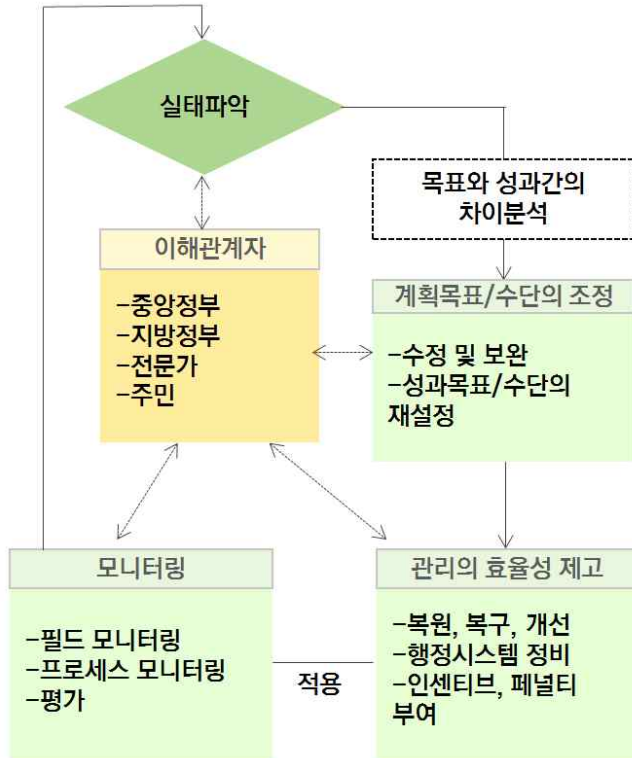
22) 이상과 같은 문제를 보완하여 등장한 새로운 관리의 개념이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RBM, BSC 등의 관리 모형임.

23) 체계(system)란 일반적으로 각각의 것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계통적으로 결합된 조직, 또는 각각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계통적으로 결합되고 조직되어 전체를 이루는 것 등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음( <http://search.daum.net/>). 따라서 여기서 체계란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복합체라는 의미로 사용함.

- 이상의 두 가지 접근방식과 농업유산개념의 특징을 고려할 때 농업유산의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임. 즉 국가 중요농업유산관리체계란 정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정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보전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주체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운용계획, 운용활동의 조직, 모니터링 과정에 상호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농업유산 관리체계의 개념을 도식화 해보면 그림.2와 같음
- 이상과 같이 정의된 농업유산의 관리는 그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운용상의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임
- 첫째는 농업유산의 관리에서는 활용을 통한 보전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문화재의 경우는 과거에 원형보존을 위하여 활용에 대하여 강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유산 소유자 및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농업유산의 경우는 이와 달리 농업유산의 적극적이고 경제적인 활용을 통하여 농업유산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유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유산 소유자 및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음.<sup>24)</sup> 그러므로 농업유산관리는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제도라는 점이 제일의 원칙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임
- 둘째는 농업유산의 관리에는 주민의 참여성이 강조되어야 함. 농업유산의 관리에서 중앙정부가 최종적인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만 관리인원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적인 관리에서는 민간단체 및 주민의 참여가 필요함. 더욱이 농업유산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존보다는 활용이 중심이 되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함
- 셋째는 전문성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 농업유산제도의 도입이 일천함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제한되어 있음. 행여 전문성이 부족한 집단에 의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농업유산제도의 기본취지와 달리 농업유산이 남용, 과용됨

24) 최근에 문화재 보호에서도 활용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원형보전의 원칙, 소유자관리원칙, 공개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으로서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농업유산의 관리 및 운영은 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그림 2-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 제2절 농업유산관리에서의 모니터링 개념

### 1. 개요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실행이 기본적으로 전제됨. 관리의 성패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법의 개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즉 효율적인 농업유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의 파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것임. 그러므로 모니터링은 관리와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은 관리의 한 절차로서 관리의 개념에 포함되는 한 개념요소로 볼 수 있음
- 이런 의미에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법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모니터링의 개념을 주제, 범위, 내용 및 기법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 후에 이를 활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
-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농업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실효적인 모니터링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실패적 요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관리의 계획, 조직 단계로 환류시킴으로서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하여 먼저 모니터링의 개념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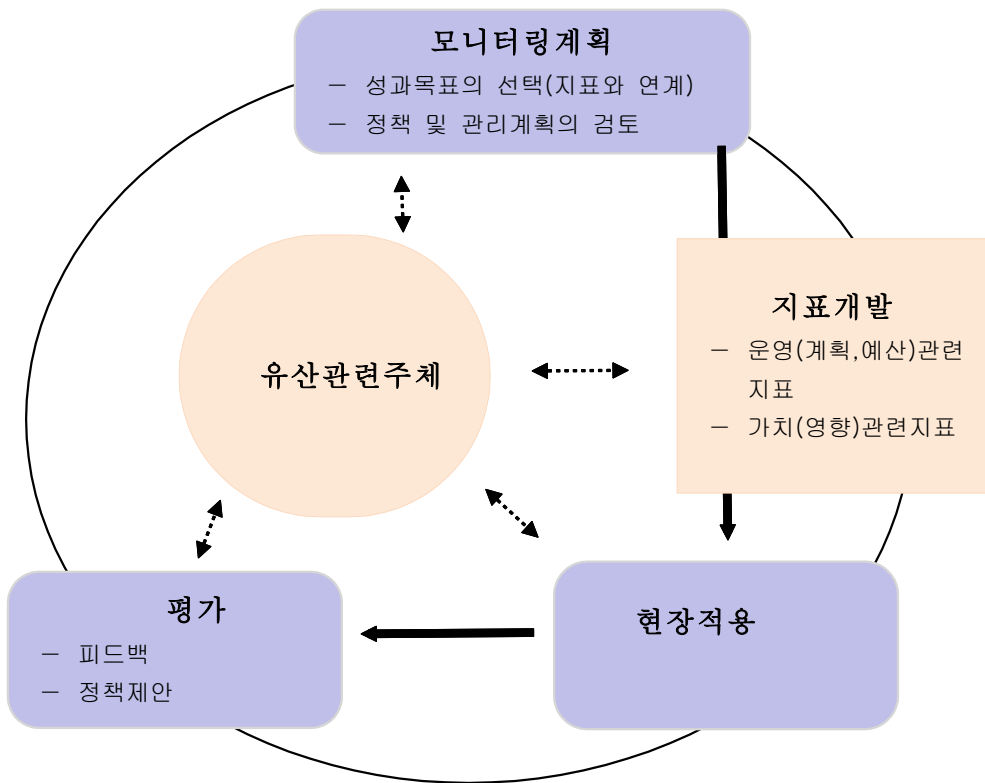
### 2. 모니터링의 개념정립

#### 가. 개념 정의

- 모니터링은 원래 공학이나 생물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오늘날 사회과학으로 전파되어 사용되고 있음. 즉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함은 공학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움직임을 관찰·통제·검증하는 활동을 지칭하며, 생태학에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식생의 변화, 수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의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활동을 의미함<sup>25)</sup>

25)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이에 입각하여 농업유산의 모니터링을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면 관리의 대상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상태, 운영실태, 또는 농업유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통하여 농업유산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운영의 주체에 대하여 경고, 충고,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즉 농업유산의 모니터링이란 앞 절에서 정의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산지역의 관리계획, 조직, 운영 상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농업유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된 제반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되는 모니터링의 개념을 주요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기로 함



[그림 2-3] 농업유산모니터링의 개념도

#### 나. 모니터링의 주요 관점

##### 1) 모니터링의 주체

- 농업유산의 모니터링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유산의 관리와 연계된 개념이므로 농업유산의 관리주체가 동시에 모니터링의 주체임
- 농업유산의 관리에서는 농업유산의 특성상 중앙정부, 각급지방정부, 관련민간단체, 주민 등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체로서 참여함. 모니터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함. 그러나 이때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들 주체들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들 가운데 먼저 중앙정부는 통합적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와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에서 중심적 지위에 있음.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임.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유산관리 및 자체 모니터링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적절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이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의 가이드라인이나 지표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모니터링의 주체적 입장과 객체적 입장을 동시에 가짐. 지방정부는 소속된 개별 국가중요농업유산관리의 실제적 주체라는 입장에 있음. 현재 각 지방정부는 3년 동안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이의 실천에 대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에 지방정부는 자체 모니터링의 주체적 입장에 있음.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모니터링에서는 그 역할 수행의 적합성이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임
- 이외에도 민간관련단체 역시 모니터링 실행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자체 인력으로 모니터링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이때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는 모니터링대행의 주체로서 역할을 가짐
-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이외에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함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주체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예컨대 주민들이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중앙정부에 제공하는 것임

## 2) 모니터링의 범위

- 먼저 모니터링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모든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될 수 있음. 이것을 통합적 농업유산관리 및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때는 중앙정부가 관리 및 모니터링의 주체가 됨
- 한편 모니터링의 범위를 개별 농업유산지역으로 한정하여 논의할 수 있음. 이때는 지방정부가 모니터링 수행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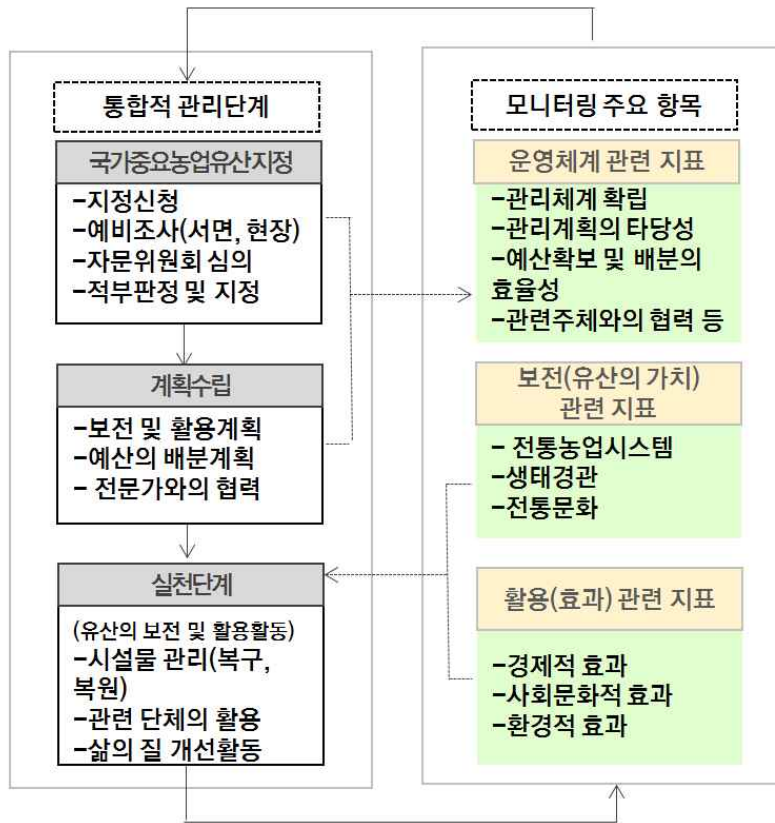
가지게 될 것임. 이상에서 양자 간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리 및 모니터링의 범위 안에 각 지역의 개별 농업유산지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의 결과가 포함될 것임

- 또한 개별농업유산지역내에서도 관리의 범위가 핵심지역 및 주변 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별 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에는 이들 지역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별해서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키게 될 것임

### 3) 모니터링의 내용

- 모니터링의 내용에는 운영체계(행정) 관련 내용, 농업유산의 보전 상태, 농업유산의 활용에 관한 것 등으로 세분될 수 있을 것임
- 농업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운영체계는 주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모든 유산지역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항목이 될 것임. 예컨대 지방정부의 개별유산지역에 대한 운영계획수립의 적절성, 그와 관련된 국비사용의 적합성 등이 해당될 것임
- 다음으로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농업유산의 5가지 가치의 관점이 포함될 것임. 예컨대, 식량의 공급 및 생활의 안정성, 생물다양성, 농업관련 전통 문화적 가치체계 및 사회적 조직, 농촌의 경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농업유산의 활용의 관점에서는 크게 농업유산의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생태·환경적 효과 등의 관점이 고려될 것임.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는 식량생산, 고용 및 소득변화 등의 요소가, 생태·환경적 관점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의 변화 등이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주민교육, 주민의 의식변화,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농업유산은 특성상 활용을 통한 보전을 중시하므로, 농업유산의 활용과 관련되는 내용은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과 연계될 것임





[그림 2-4] 통합적 유산관리단계와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

### 3. 농업유산의 지정기준과 모니터링 지표구성 방향

- 농업유산의 모니터링지표는 실제로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임. 지정기준은 농업유산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일종의 성과지표에 해당함. 그러므로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으로부터 모니터링요소를 추출하는 것은 성과관리모형에 부합됨
-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크게 유산의 가치성, 파트너쉽, 그리고 효과성으로 크게 구분됨
- 첫째, 유산의 가치성 관련 지정기준은 5가지로 이들 지표는 유산의 현장조사와 관련된 핵심지표에 해당됨. 이들 5 가지 지표는 모든 유산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됨
- 둘째, 파트너쉽의 기준은 유산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농업유산의 관리계획, 예산배분, 조직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모든 농업유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에 해당함
- 셋째, 효과성의 기준은 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지표로서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성과 관련된 지표임. 경제적 효과 면에서의 모니터링지표는 도농교류활동, 관광객, 지역브랜드 가치향상, 고용 및 소득의 향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련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 및 환경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전통문화를 창달을 위한 주민의 활동관련 지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에서 볼 때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지표는 크게 운영체계관련지표와 보전(가치) 및 활용(효과) 관련 지표로 구분됨

&lt;표 2-1&gt;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요소

구 분	지정기준	모니터링요소
1. 유산의 가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의 식량공급기능</li> <li>○ 유산의 관리에 관한 지식 및 기술체계</li> <li>○ 공동체의 전통문화가치체계 및 조직</li> <li>○ 희귀 생물다양성의 존재</li> <li>○ 수려한 경관</li> </ul>	생산 활동관련 지표 토지·수자원이용관련 지식 및 기술의 발굴 및 보전활동지표 전통문화활동과 이와 관련된 조직의 활동지표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조사를 위한 활동지표 경관의 보호관련 지표
2. 파트너 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관련단체의 협력성</li> <li>○ 주민참여성</li> </ul>	해당지방정부의 관리계획의 타당성평가관 련지표(계획 및 예산의 배분관련) 전문가집단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지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참여 관련지표
3.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적 효과</li> <li>○ 경제적 효과</li> <li>○ 환경적 효과</li> </ul>	전통문화를 창달을 위한 주민의 활동관련 지표 도농교류활동, 관광객, 지역브랜드 가치향 상, 고용 및 소득의 향상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련된 지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지표

주: 이 표는 2012년 10월 이전의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지정기준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  
어업유산지정기준을 기본 틀로 하여 일부 수정한 것임.



## 제 3 장

# 국내 농업유산 및 제도 현황

제1절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현황

제2절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서 분석



## 제3장 국내 농업유산 및 제도 현황

### 제1절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현황

####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가. 국가중요농업유산 개요

- FAO 세계농업유산제도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농촌 자원의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전통유산의 품격 향상과 더불어 이를 지역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함
- ‘국가중요농업유산’<sup>26)</sup>은 농업인이 오랜 기간동안 농경행위로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 활동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농촌경관 등 관련 산물을 말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9월 농업유산제도의 도입 추진을 시작하여 2013년 1월 처음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 현재 6호까지 지정되었는데, 주요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11년 7월) 제6차 농촌지역정책 전문가포럼에서 농어업유산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12년 3월) 농어업유산제도 도입방안 마련
  - (‘12년 12월) 농식품부 장관 고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정 및 본 기준 제12조에 의거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구성
  - (‘13년 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청산도 구들장 논), 2호(제주 돌담밭) 지정
  - (‘14년 6월) 국가중요농업유산 3호(구례 산수유 농업), 4호(담양 대나무밭) 지정
  - (‘15년 3월) 국가중요농업유산 5호(금산 인삼농업), 6호(하동 전통차농업) 지정

##### 나.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주요 내용

###### 1) 개요

-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관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농촌의 문화역사 및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농어업·

26) 2012년 도입 당시에는 어업유산까지 포함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로 도입 및 시행되었으나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 관할로 이관됨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령과 함께 '1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고시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됨

- 그러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5년 8월 농업유산과 관련된 대상, 절차 등을 포함시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농업유산의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함
- 상기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또한 「농업유산 지정 관리기준」으로 개정함

## 2) 지정대상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으로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2제1항에 의거하여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이 해당됨. 여기서의 유형과 무형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가공시설·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과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전통지식·농업문화·사회조직'을 의미함

## 3) 지정기준

- 한국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국제적 기준인 FAO GIAHS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나, 한국적인 정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현실 적합성과 국내 유산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기준을 조정함(윤원근 외, 2014)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제시된 지정기준에 따라 '농업자원의 가치성'에 해당하는 6개의 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갖추고,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함
- 「농업유산 관리기준」에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세부 기준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배민식, 2014)



&lt;표 3-1&gt;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시행규칙」 제2조의3)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 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 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 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계 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 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 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 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4) 지정 절차

## ○ 지정 신청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제2항과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sup>27)</sup>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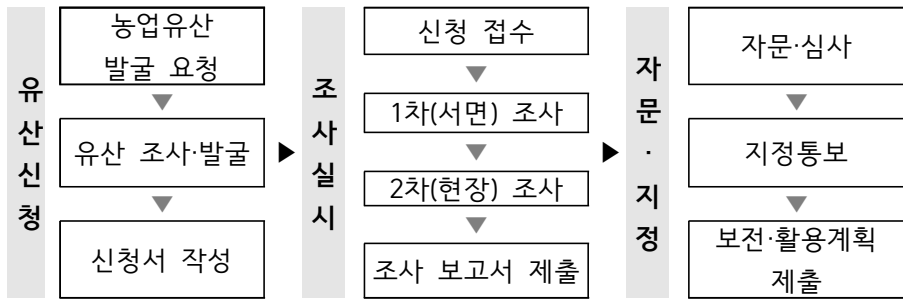
27)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 동의서는 「농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농업유산 지정 대상지역(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1/2 이상 또는 주민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2/3 이상이 서명하여야 함. 주민협의체는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5조에 의거하여 농업유산의 소

에게 제출

- 농업자원의 설명서에는 역사성, 특징, 현대적 의미, 위협요인과 도전과제,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 국가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 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등을 서술하도록 함(별첨 1 참고)
- 지정절차
  -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취소신청서에 지정서 원본, 변경 내용 증명 서류(변경 시),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취소 동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자문위원회의 설치
  -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유산 자문위원회를 설치
  -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7조부터 제12조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9조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 지정취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절차·명칭의 제정 및 변경,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음

---

유자와 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함



[그림 3-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절차

## 2.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지침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3년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다원적 활용사업 실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되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의 자격이 주어짐
-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농업유산지역 및 자원의 현황과 특징, 여건 등을 분석하고 기본구상, 실행계획, 투자계획 등의 순으로 작성하되, 농업유산의 특성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단, 실행계획에 있어 보전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振興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13~19조를 따름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振興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7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 (3)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또한,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13~19조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시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제13조), 유산의 복원 및 수리(제14조), 유산의 활용 사업(제15조),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제16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실태조사(제17조), 조사결과 조치(제18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제19조) 등임

- 이들 중 모니터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16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현상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제1항), 모니터링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제2항)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모니터링과 유사한 용어인 실태조사<sup>28)</sup>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17조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할 주체는 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1항),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제2항)는 내용이 명시됨.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의 개념적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여부
  - (2)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
  - (3) 안내판, 경고판 등 각종 보호 및 홍보 시설물의 상태
  - (4) 기타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18조에 의거하여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관리기록부는 보존 상태, 활용 사항, 조치 사항, 협의 사항, 특이 사항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별첨 2 참고)
- 결과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에 있어 모니터링 및 이와 유사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는 「농업유산 관리기준」의 제16조, 제17조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18조, 제19

28) 개정 이전의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25조제1항에서는 정기조사의 의미로 실태조사를 사용함

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횟수(년 1회 이상)와 포괄적인 조사 내용에 모니터링 관련 지침이나 유산의 보전·관리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은 전무함

### 3.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 가.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 농업유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전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농촌 다원적자원<sup>29)</sup> 활용사업’을 만들

##### 1) 사업대상 지역

-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의 대상지역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된 유산지역 중 최근 3년 내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곳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유사한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등이 해당됨

##### 2) 지원내용

- 본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된 지자체에 3년간 15억 원이 지원(국고 70%, 지방비 30%)되며 사업비는 유산자원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세부설계, 활용방향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농업유산의 복원이나 보전을 위한 사업, 농업유산 주변 환경정비, 방문객들의 휴식과 관광에 필요한 친환경적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과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농업유산지역 내부적으로는 시·군과 주민협의체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유산을 관리하고 지역농가의 농업유산 보전활동 참여와 지속적 사업 운영을 위해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업유산 중심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함

29) 개정 이전의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2조제3항에서는 농어의 다원적 자원을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제공,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생태계 유지, 국민정서의 순화, 보건휴양과 학습·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휘하는 자원’이라고 정의하였으나, 현재 본 규정은 삭제됨

<표 3-2>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지원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정비 개발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등
가치 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물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축제장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5), 국가 중요농업유산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백서

#### 나. 지자체의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 및 관리 조례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유산 발굴 및 심의와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하고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활발한 사업을 시행함
-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촌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제2조),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수립 및 신청(제3~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11조), 연구기관의 설치 및 주민참여(제12~17조) 등임
- 전라남도 역시 청산도 구들장 논 기본계획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 계획에서 ‘구들장논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상기 사업과 지자체의 자치법규 외에 통합적인 지침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임

&lt;표 3-3&gt;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및 농업자원 설명서

## 국가중요농 · 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 대상	명칭 특징	대상지역(면적)
신청자	시 · 군 · 구명 연락처	담당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국가중요농 · 어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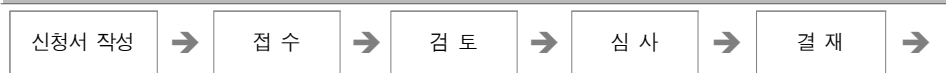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농 · 어업자원 설명서 2. 농 · 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농 ·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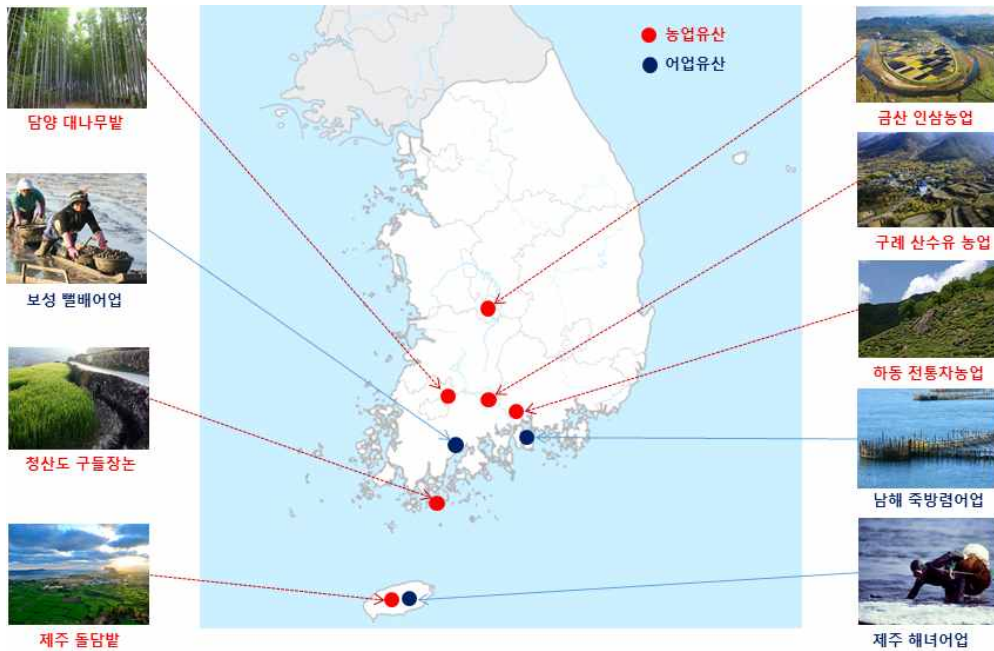
## 농·어업자원 설명서

<p>&lt;요 약&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기관</li> <li>2. 협력단체</li> <li>3. 대상지 위치(면적)</li> <li>4. 대상지 접근방법</li> </ol>
<p>I. 역사성</p>
<p>II. 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산물·수산물 생산 및 주민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li> <li>2. 농·어업자원의 지식체계 및 기술</li> <li>3. 농·어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관련단체</li> <li>4. 현저한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관리 특징</li> <li>5.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기능</li> </ol>
<p>III. 농·어업자원의 현대적 의미</p>
<p>IV. 농·어업자원 위협요인과 도전과제</p>
<p>V.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p>
<p>VI.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적, 환경적 영향</p>



#### 4. 국가중요농업유산 현황

- 국가 중요농업 유산 1호 청산도 구들장논
  -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은 전통온돌과 유사한 구들장을 통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바닥 밑에 설치하고 그 위에 진흙으로 틈새를 메워 만든 논
  - 구들장 논은 경지면적이 작고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심한 청산도의 열악한 논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업시스템
- 국가 중요농업 유산 2호 제주 돌담밭
  - 제주 밭담은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약 2만 2천km에 달하는 밭 주변의 담으로서 고려시대 고종 때부터 형성되어 역사성이 있고,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제주 농업인의 개척정신과 지혜가 돋보여 농업유산으로 지정
- 국가 중요농업 유산 3호 구례 산수유 농업
  - 구례 산수유 농업은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산수유를 재배하여 마을과 산수유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형성
  - 228ha에 달하는 산수유 군락지는 주변생태계를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돌담과 함께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
  - 산수유 군락지와 돌담은 생태계 다양성을 형성하며, 시비법, 수확 및 씨 제거방법 등 고유의 전통농법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 1938년 구례에 산수유조합 창립(동아일보 1938.9.30)하였으며, 수령 100년 이상 된 산수유 1,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
- 국가 중요농업 유산 4호 담양 대나무밭
  - 전국 대나무 재배면적의 26%가 담양지역에 분포하며, 대부분의 농경지주변에 식재되어 생물다양성 및 독특한 경관을 형성
  -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로 이용되어 농업에 널리 활용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계곡하부에 형성, 물을 함유하여 갈수기에 수자원으로 이용되었으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경관 형성함



[그림 3-2]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현황

출처 : 이정환, 2016, 한일 농업유산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 죽초액과 대숲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와 토양개량 등 전통농사기술을 보유
- 세종실록지리지에 담양 지역의 산업으로 왕대·오죽·화살대 등이 공물로 기록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대나무가 재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나무로 다양한 죽제품이 생산되어 조선시대부터 전국 유일의 죽물시장이 조성되었음
- 국가 중요농업유산 5호 금산 인삼농업
  - 금산은 개성, 풍기와 함께 조선시대부터 국내의 대표적인 인삼생산지로서 재배기술 및 가공기술이 발달
  - 1923년에 금산삼업조합이 설립되어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는 등 인삼유통의 중심 역할수행.
  - 인삼재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 재배, 직파재배 등 다양한 재배기술이 발달하였으며, 금산군 전역을 둘러싼 아름다운 산세와

- 금강이 인삼밭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
- 인삼재배, 가공 및 유통에 관여하는 종사자가 가장 많음

&lt;표 3-4&gt;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구분	명칭	유형	면적	가구수	대상자원
1호	청산도 구들장논	농업시스템	5ha	99호 (3개 마을)	구들장논, 긴꼬리투구 새우, 초분, 고인돌, 돌담 등
2호	제주 돌담밭	농업시스템	542ha 담길이(22,108 km)	224,713호	돌담밭
3호	구례 산수유농 업	농업시스템	228ha	952호 (48개 마을)	산수유 군락지, 돌담, 전통농법 등
4호	담양 대나무밭	복합	36.2ha	83호 (2개 마을)	대나무밭, 농사도구 등 죽제품, 전통음식
5호	금산 인삼농업	복합	297ha	902호 (14개 마을)	인삼밭, 인삼재배기술, 인삼가공법
6호	하동 전통차농 업	복합	597.8ha	801호 (20개 마을)	차밭, 전통차 가공기술, 전통문화

\*복합: 농업시스템, 농업과 관련된 문화,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유산

- 국가 중요농업유산 6호 하동 전통차농업
  - 경작지가 부족한 지리산 산간지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산비탈에 차밭을 조성하여 독특한 경관과 지역문화를 형성하였음
  - 차 재배 및 가공기술이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하여 잣살차(홍차), 고뽕차(혼합차) 등 전통방식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다원(茶園)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
  - 삼국사기에 신라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차씨를 지리산에 심었다고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화개지역에 차 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안에 자원조사와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4개 농업유산(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돌담밭,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서를 분석하여 농업유산 관리주체인 각 지자체의 모니터링계획을 파악

	
<p>청산도 구들장 논</p>	<p>제주 돌담밭</p>
	
<p>구례 산수유농업</p>	<p>담양 대나무밭</p>
	
<p>금산 인삼농업</p>	<p>하동 전통차농업</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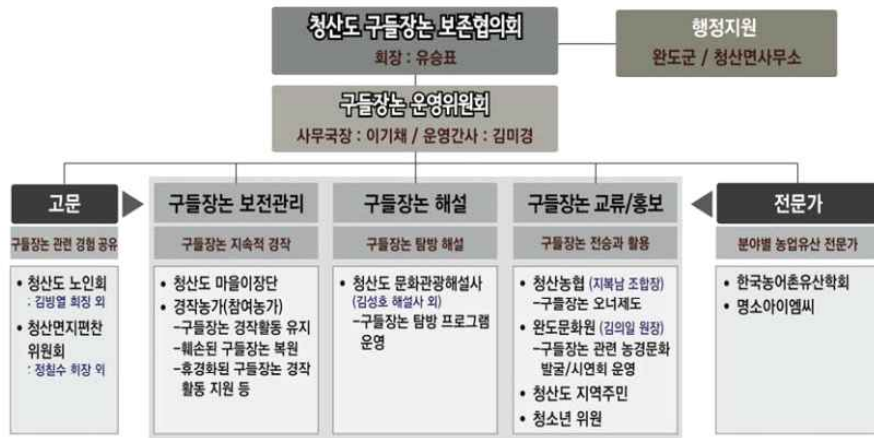
[그림 3-3] 국가중요농업 유산 지정 현황

## 제2절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서 분석

### 1. 청산도 구들장 논

#### 가. 모니터링계획

- 모니터링방향은 구들장논 보존협의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구들장논의 복원작업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실시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

<표 3-5> 청산도 구들장논 모니터링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훼손된 구들장논</li> <li>- 휴경논</li> <li>- 농생물(생물자원)</li> <li>- 구들장논 경관모습 등</li> </ul>	
활동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들장논 보존협의회 청소년위원, 청산도 지역주민, 지역학생</li> <li>- 생태전문가(자문단)</li> </ul>	
시기	①모니터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2회 실시(7월, 10월)</li> <li>- 활동기간 설정: 1~7일/회</li> </ul>
	②활동결과 공유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2회 실시(7월, 10월): 모니터링 활동 실시 후 기록내용 서로 공유, 의견교환</li> <li>- 1일(2~4시간)/회</li> </ul>
조사대상지 공간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도전역 내 마을별로 공간구분: 부흥리, 양지리, 상서리, 도청리 등</li> </ul>	
활동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전문가를 포함하여 4~5명의 소그룹(3~5개) 결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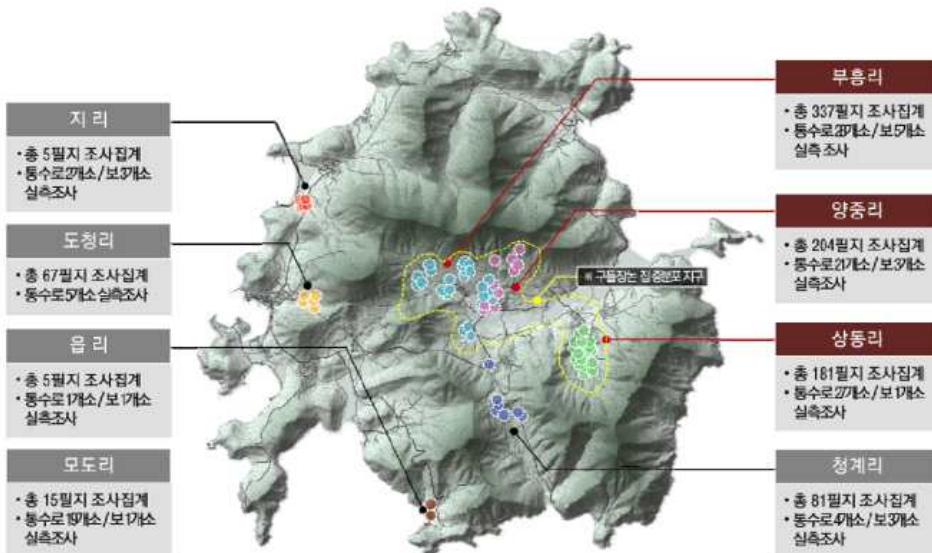


**바. 모니터링 관련사업**

- 구들장논 보전교류회
  - 구들장논 보존협회의 운영을 정기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연간활동 정리 및 공유
- 복원작업을 위한 지킴두레 결성
  - 지킴두레: 석축 등이 무너진 구들장논부터 복원
- 모니터링활동 DB구축
  - 마을별로 공간을 나누어 소규모 그룹을 매칭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DB로 구축



<청산도 구들장논 DB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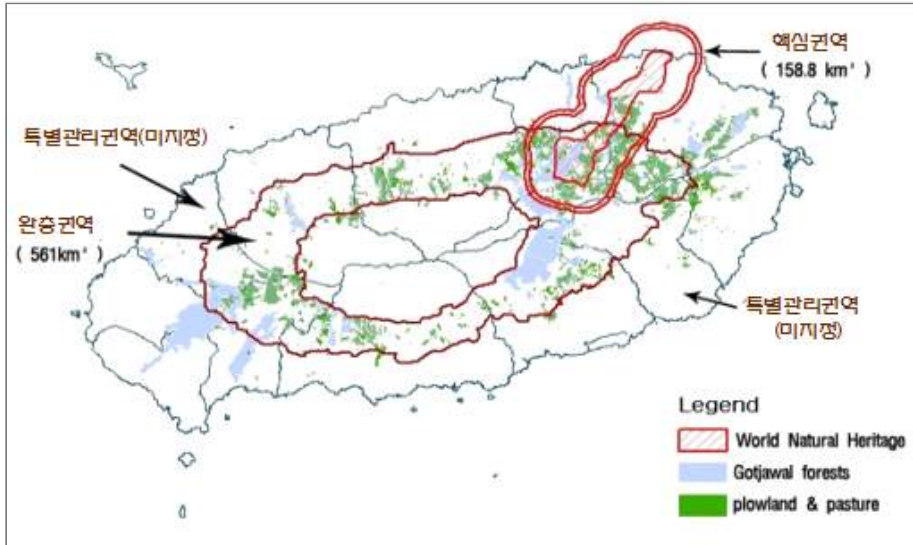
[그림 3-4] 청산도 구들장논 분포현황

## 2. 제주 돌담밭

### 가. 모니터링 계획

-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돌담밭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유산가치, 경관가치 등이 뛰어난 지역을 제주밭담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관리지표를 설정
-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은 제주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전과 함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함
- 보전지역 지정기준
  - ①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 ② 주변에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특히 꽃자왈지역과의 관련성)
  - ③ 현행법에 의해 경관이 관리되고 있거나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 ④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구, 생물권보전지구, 세계지질공원 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
  - ⑤ 보전과 아울러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세계자연유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핵심권역, 중산간지대를 완충권역, 기타 지역 가운데 특별관리권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핵심권역: 세계자연유산 핵심지구는 대부분 공유지로서 관리가 용이하고 지구관리계획에 의해 친환경농업 등이 이루어지므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용이함. 5개 농촌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블랙농업특구 지정 등 다양한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본 계획에서는 세계자연유산지구를 포함한 사방 5km 범위에서 세계자연유산지구에 포함된 마을 경계로 한정함.
  - 완충권역: 중산간지대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보전에 용이함.
  - 특별관리권역: 해안에서 중산간지대에 이르는 지역 가운데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집중도와 경관이 우수한 군락지를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이 권역은 위에서 언급한 제주밭담 우수관

리지구 지정기준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의 제주밭담 보전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우수관리지구로 지정함.



[그림 3-5] 제주 밭담 보전지역 권역 구분

- 제주밭담 관리지표를 통하여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관리지침을 마련
  - ①원형성, ②경관성, ③고유성, ④활용도, ⑤관리주체

<표 3-6> 제주밭담 관리지표

관 리 지 표	가치평가 기준	등급
원 형 성	조성시기, 원형유지 등	A - B - C
경 관 성	주변과 조화, 밀도·균락 등	A - B - C
고 유 성	형태·기능 등 유형특성	A - B - C
활 용 도	도로·마을과 거리 등 접근성, 농업경영 유지, 활용프로그램 등	A - B - C
관 리 주 체	마을조직 등 관리주체의 상존여부 및 활동내용	A - B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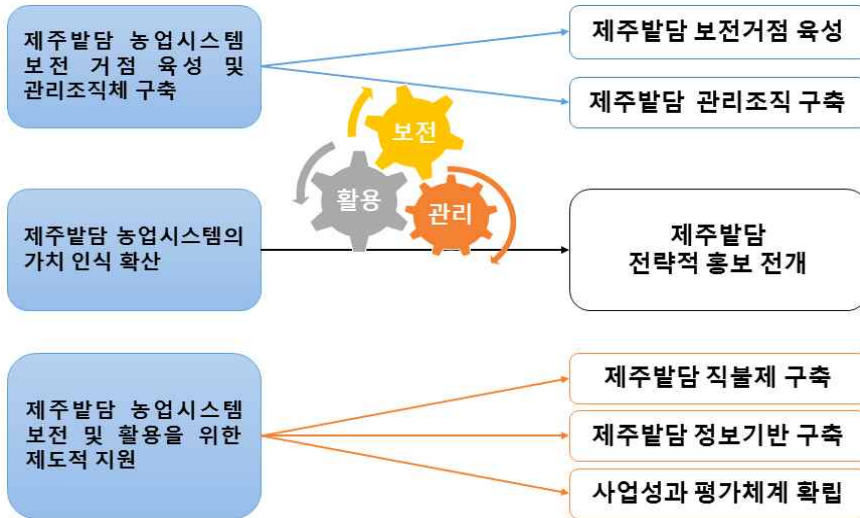
## 나. 모니터링 관련 사업

- 제주밭담 복원 및 정비
  - 핵심권역내 밭담 탐방코스와 연계하여 훼손된 구간 1,500m 복원
- 제주밭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주밭담의 지속적인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밭담 전수조사 시행 및 지도제작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마을별 경관협약 체결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및 3년 단위 경관협약지구 지정, 협약이행 사항의 모니터링, 경관보전직불제 및 ‘삶의 질 향상법’과 연계한 운영방안 마련
- 밭담장인연합회 조직 및 석공장인 발굴
  - 밭담을 쌓는 전문 석공들의 고령화로 기술 전수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밭담 쌓기 기술을 복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 밭담 쌓기 기술은 지역마다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석공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적 교류가 없는 상태여서 지역별 및 석공들 간 밭담 쌓기 기술을 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 밭담 관련 석공들의 조직화를 통해 기술전수 및 관리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표 3-7> 제주 밭담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체계

<p>▶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활용의 비전과 목표</p> <p>목표 : 지속가능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p> <p>비전 : 농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p>
--

▶ 세부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과제 및 과제별 핵심전략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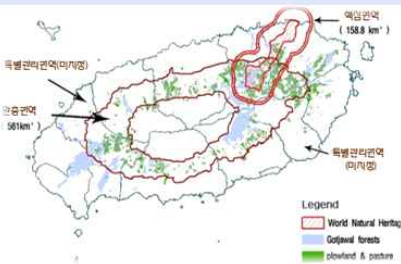


▶ 핵심전략(6개)별 실천과제 (단기과제: 3년 15억 예산확보)

전략 1: 제주발담 보전거점 육성

단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담 보전지구 지정 : 유산가치, 경관가치 등이 뛰어난 지역을 제주발담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li> <li>• 발담 보전 및 정비</li> <li>• 탐방코스 및 테마공원 조성</li> </ul>

중장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지역 단계별 확대</li> <li>• 권역별 특화브랜드 창출</li> <li>• 권역별 탐방코스, 테마공원 조성</li> <li>• 친환경농업 단계적 확대</li> <li>• 농촌관광 활성화</li> <li>• 마을별 경관협약 체결</li> </ul>



**전략 2 : 제주밭담 관리조직체 구축**

**단기과제**

- 밭담장인 발굴 및 지정

**중장기과제**

- 권역별 제주밭담관리사업단 구성
- 제주 세계농업유산 교육관 건립
- 밭담 문화해설사 제도 신설

**전략 3 : 제주밭담 전략적 홍보**

**단기과제**

- 제주밭담 홍보 기획
- 제주 밭담축제 개최
- 제주 돌문화 아카데미 운영

**중장기과제**

- 밭담 가치 재발견프로그램 운영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밭담축제 주기적 개최



▶ 핵심전략(6개)별 실천과제 (중장기 과제로 제시)

**전략 4 : 제주밭담 직접지원제도 구축**

- 농업유산 직불제 도입 추진
- 향토문화 관광지구 지정
- 밭담 공공자원화(토지비축제 활용)

**전략 5 : 제주밭담 정보기반 구축**

- 제주밭담 DB구축
- GIS활용한 밭담 관리시스템 구축
- 제주밭담 지도제작
-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전략 6 : 사업평가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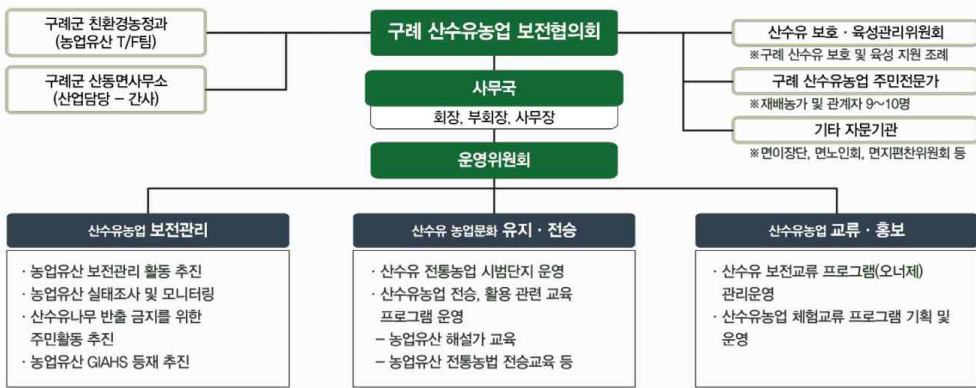
- 보전관리실태 평가지표 개발
- 주기적 평가에 의한 지원방안 개선
- 밭담 우수마을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출처 : 이정환, 2016, 한일 농업유산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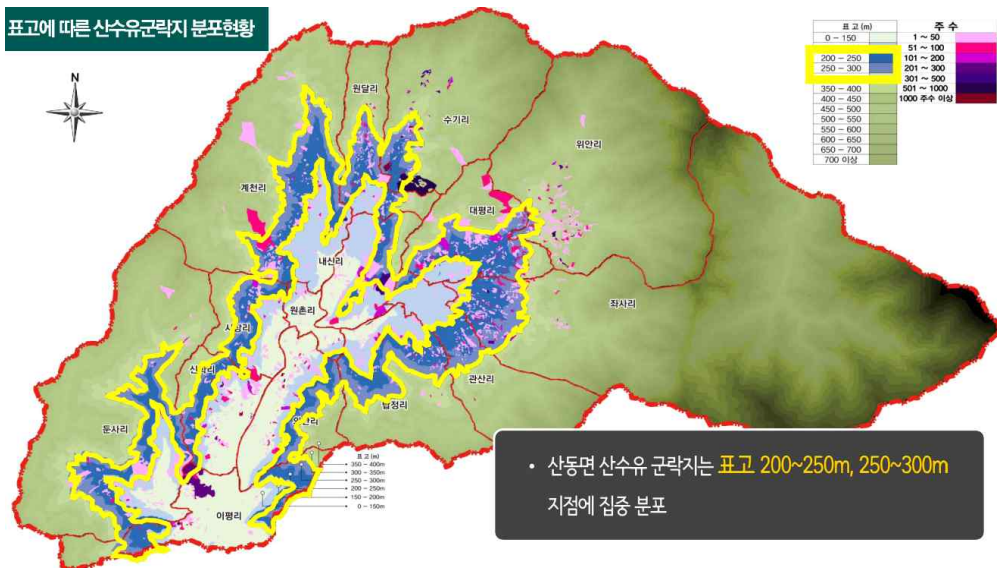
### 3. 구례 산수유 농업

#### 가. 모니터링계획

- 모니터링방향은 구례 산수유농업 보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산수유농업 전승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실시
  - 구례 산수유농업 보전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학생, 생태전문가가 공동참여하여 산수유 군락지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
  - 산수유 군락지 및 주변지역의 보전실태 현황 및 생태환경조사 실시



[그림 3-6] 구례 산수유농업 보전협의회



[그림 3-7] 구례 산수유 군락지 현황

#### 나. 모니터링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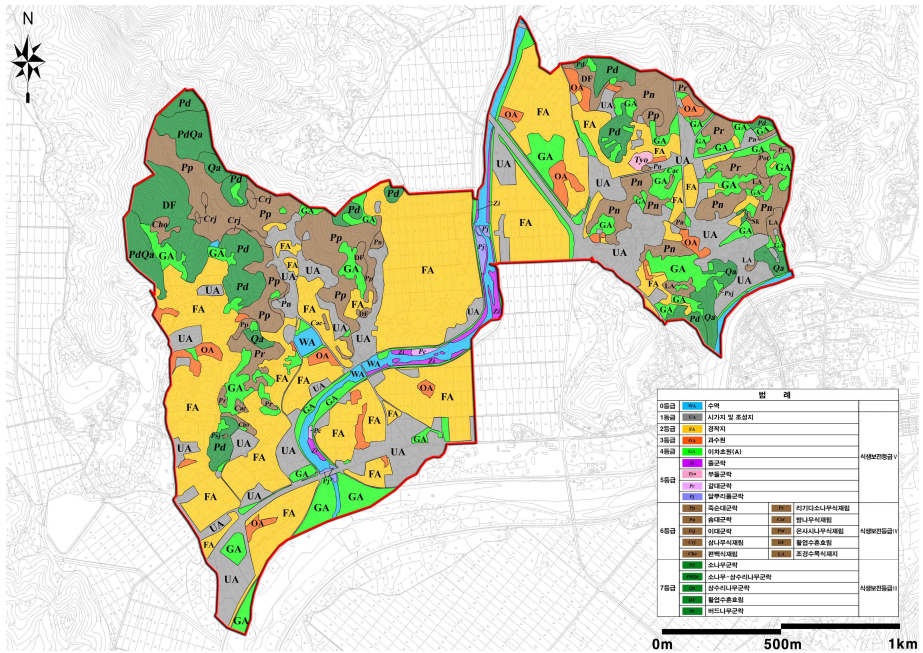
- 구례산수유 농업지킴이두레
  - 구례 산수유 농업환경 모니터링, 전통농업 전승 및 활용 등을 실시
-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농업정보 코드화 관리
  - 농가별 산수유 재배정보관리로 산동면에서 재배되는 산수유의 객관적 재배현황 파악
- 산수유 전통농업 시범구역 운영
  - 산동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 공모방식을 통해 마을단위로 선정

### 4. 담양 대나무밭

#### 가. 모니터링계획

- 담양대나무밭의 종합적·계획적 보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한 농촌자원 보전지구 설정
  - 보전지구 지정기준 설정 : 원형성(조성시기, 원형유지 등), 경관성(주변과 조화, 밀도·군락 등), 유형특성, 활용도, 접근성, 관리주체 유무 등을 척도로 하여 보전지구 지정
  - 보전지구 관리지표 설정 : 지정기준에 준하여 복원·정비 및 관리를 위한 지표 설정





[그림 3-8] 담양 대나무밭의 현존식생도

### 나. 모니터링 관련 사업

- 농업유산권역 정비 및 경관조성사업
  - 대나무밭 정비를 위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2개 지구 36.2ha를 대상으로 보전·관리를 위한 임도 개설 추진
  -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산책로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향후 산업화를 위한 대나무밭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임도 개설
  - 테마공원(삼다리) 및 산책로(만성리) 조성지역 주변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하며, 여타 권역에서는 경관 가치, 산업화 가치 등 제 이용 가치를 고려하여 권역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 5. 하동 전통차농업

### 가. 모니터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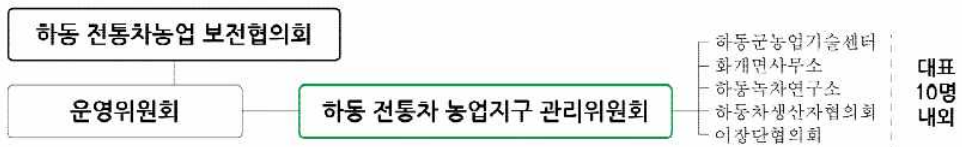
- 하동 전통차농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개면 전통차 농업지구 지정

및 지원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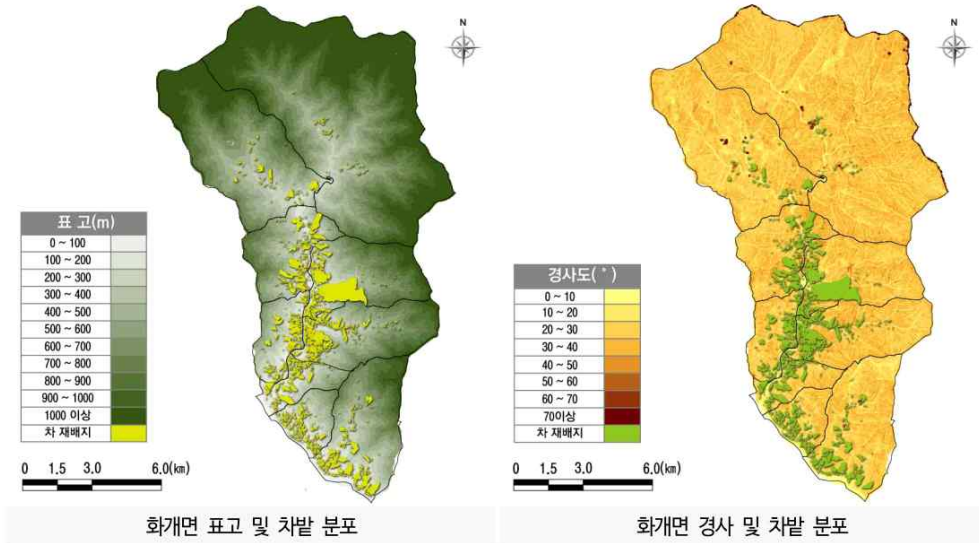
- 전통방식 그대로 차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전통농법을 유지해 농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보전가치가 있는 전통차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통차 농업지구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표 3-8> 하동 전통차농업지구 지정 기준

기준	주요내용	비고
차밭 조성시기	100년 이상 역사성을 가진 전통(자생)차밭	주민의견 반영
차밭 조성형태	경사지 위치, 정형화되지 않은 전통차밭(평지차밭 제외)	현장조사 확인
차밭 재배면적	1ha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차밭	지적면적 확인
차밭 재배방식	자연농법에 의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밭, 친환경인증이 가능한 차밭	생엽 농약잔류검사/ 토양성분검사



[그림 3-9] 하동 전통차 농업지구 관리위원회 조직도



[그림 3-10] 화개면 차밭 분포도

- 하동 전통차 농업지구 관리운영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하동 전통차 농업지구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협약체결사항의 농가 이행점검
  - 농업지구 지정 이후, 농업활동 지원을 통해 향상된 농업생산량,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조사로 ‘하동 전통차밭 경관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지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농업활동이 유지 및 활성화된 농업지구는 기존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50% 이하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농업지구는 지정해지 또는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관리

#### 나. 모니터링 관련 사업

- 하동 전통차밭 경관보전 지원사업
  - 하동 전통차농업 분포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경 전통차밭 현황을 파악하고 급경사지 전통차밭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경관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



- 하동 전통차밭 경관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 차재배농가, 학생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를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조사 역량교육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단을 구성
  - 사진, 영상, 그림, 메모(조사표)를 이용한 조사결과 기록
  - 하동 전통차밭 경관 및 생물다양성 DB 구축

&lt;표 3-9&gt; 하동 전통차밭 경관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계획

구분		주요내용	비고
경관 (년 1회)	조사단 구성:	- 전통차밭의 주요경관 조망점 파악 - 전통차밭의 훼손 정도 파악 휴경, 작목변경, 용도변경 등	항공촬영 비교(사진·영상)
생태(연2회)	전문가 1인, 조사원 5인	- 육상: 식물상, 곤충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조류 - 하천: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전국 자연환경조사 지침 반영



## 제4장

#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방향

제2절 일본 GIAHS 지역 모니터링 사례

제3절 중국 GIAHS 지역 모니터링 체계

제4절 농업유산과 관련 있는 모니터링 지표  
사례(일본)

제5절 UNESCO 세계유산제도

제6절 천연기념물 제도



##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 제1절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방향

- 최근 들어 FAO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일본 노토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회의에서 ‘GIAHS 지정 지역은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
- 이렇듯 FAO에서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향후 농업유산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일본에서도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중국에서도 농업유산지역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유산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1.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기본 목적

- 첫째, 농업유산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현세대에서 제대로 보전하고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에 있음
  - 농업유산 자원의 보전 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를 체계적 관리 및 계승하기 위함
- 둘째,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농업유산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엄밀히 파악하기 것에 있음
  - 농업유산적 가치들이 변화되는 상황을 감지하고 위협적 요소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
- 셋째, 농업유산 관리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참가를 도모하고 농업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것에 있음
  - 농업유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관심 유도 및 모니터링 활동에 자율적 참여 독려하기 위함

## 2.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기본 방향<sup>30)</sup>

- 농업유산과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모니터링 실시
  -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농업인 및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농업활동(농업과 관련된 활동 포함)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또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해당 지역 공무원,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참여 필요
  
- 농업유산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모니터링 지표 선정
  - 농업유산지역은 각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농법, 풍습, 사회적 규범 등이 있어 이러한 독창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 관련 모니터링 지표도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자율적 지표 선정이 필요
  - 기본적으로 각 GIAHS 지역이 계획한 보전관리 활동 내용과 연관된 지표를 설정. 즉 보전관리 계획에 의해 보전관리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 농업유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농업유산 관련 교육 강화
  - GIAHS 보전관리 활동에 직접 관계가 있는 농업인은 물론 간접적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까지 폭 넓은 참여 필요
  - 지역주민 대상으로 농업유산의 중요성과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홍보 관련 지표 설정 필요
  -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농업인)이 농업유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관련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
  
- 모니터링 결과의 투명성과 신속한 피드백
  - 모니터링 결과는 수시로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업유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농업유산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

30) 현재 FAO에서는 GIAHS 지역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농업유산 보유국에 설문조사를 요청(2016.9)한 바 있으며(부록7 참고), 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유산 관련 전문기관(단체)으로부터의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 정기적 자문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유산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 자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표 4-1> GIAHS에서 각국에 요청한 설문 일부(Background)

**Survey of the Impacts of Actions Plans for Dynamic Conservation of the GIAHS sites**

**Background**

Almost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series of GIAHS sites have been designated. Now the number of the GIAHS sites has reached 36 sites in 15 countries. In view of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GIAHS Programme, which is to aim at conservation of the GIAHS site while pursuing agricultur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ynamic conservation), it is the high time for us to extend our activity to consideration on which measures, activities, undertakings could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 of dynamic conservation.

In order to pursue thi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lready designated GIAHS sites including the impacts of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s for dynamic conservation from various aspects would be very effective. If the measures taken are evaluated and turn out to be not effective, analysis to detect the causes of the obstacles should be conducted to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s such as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the measures. Furthermore, effective methodology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should also be established to support this operation. It is our belief that only through appropriate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quality of the measures taken for conservation of GIAHS sites can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this survey is the first attempt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the GIAHS sites and impacts of implementation of measures of the action plans after their designation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under action plans are sufficiently achieving the objectives and whether there is any necessity for modification, improvement and alternation of the measures.

The outcome of this survey will be used to develop our thought on how best we can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s and furthermore, how we can establish a system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 제2절 일본 GIAHS 지역 모니터링 사례

### 1. 일본의 GIAHS 지역 모니터링 제도 개요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 3월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회의’ (이하 ‘전문가회의’) 를 설치,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 및 농업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해 옴
  - ‘전문가회의’ 는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3회 개최함
  - ‘전문가회의’ 에서는 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일본농업유산<sup>31)</sup>(현재 공모 중) 인정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수립한 보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을 실시
  - 별도로 구성된 전문가그룹<sup>32)</sup>에 의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에 관한 활동 상황(자기평가표)’ 점검 및 현장 실사 실시
  - 자기평가표 구성 항목: 농업유산지역명, 신청주체, 과거 4년 간 보전·관리 활동내용, 보전·활용에 관한 주요 지표, 종합 평가, Action Plan 개선점 등
- 일본 내 농업유산지역은 농업유산시스템에 대한 보전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성 농촌환경과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보전계획에 따른 활동 상황을 5년 마다 농림수산성에 보고(필수)
  - ‘전문가회의’ 평가 결과에 의해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 2015년 8월 大分縣國東半島うさ地域(우사지역) 평가
  - 2016년 2월 新潟縣佐渡地域(사도지역)、石川縣能登地域(노토지역) 평가
  - ‘전문가회의’ 결과 내용 및 지역별 자기평가표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공개<sup>33)</sup>

### 2. 일본의 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 기본 틀<sup>34)</sup>

- GIAHS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 농업유산적 요소들이 변화되는 상황 감지 및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

31) 일본농업유산제도는 농림수산성에 의해 2016년 4월에 도입됨

32)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

33) 2016년 8월 현재 이시카와현 노토지역의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4) Evonne Yiu(2016), ‘Monitoring and Evaluation Metho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Through Multi-Stakeholders Governance’ 제3회 ERHAS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참고 및 인용함



신속히 대응

- 농업유산 자원의 보호 활동 및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정부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주민의 지속적 관심 유도 및 보전활동 참여 독려
- GIAHS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5대 중점 분야
  - 식량 및 생계보장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 지식체계 및 적응 기술
  - 문화, 가치 체계 및 사회적 조직
  - 농업경관, 토지 및 물 관리
- 상기의 5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 분석



[그림 4-1] 일본 GIAHS 보전 및 평가를 위한 중점 분야

○ GIAHS 모니터링 절차 구상(안)

- 현재 구상중인 모니터링 기본절차(안)는 아래와 같음



[그림 4-2] 일본 GIAHS 지역 모니터링 기본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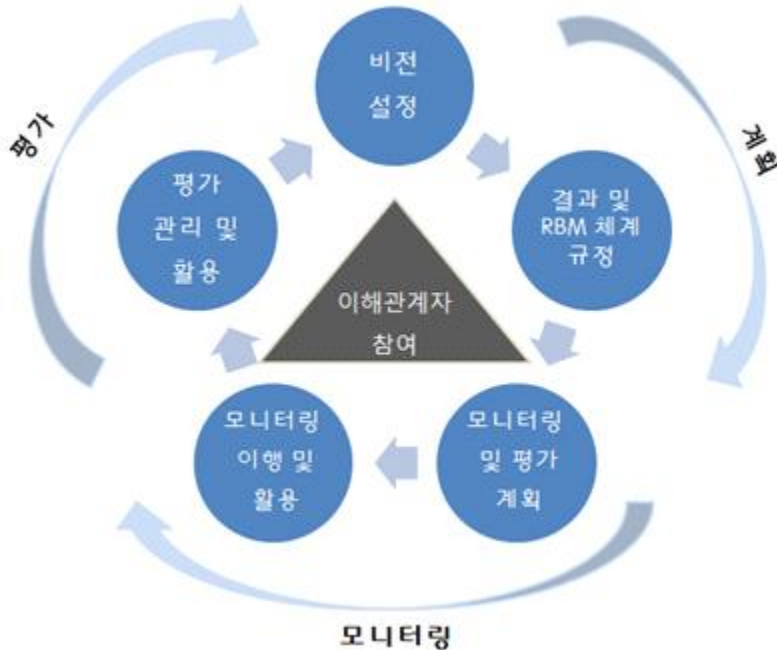
- 현재 UN대학<sup>35)</sup>에서 구상 중인 GIAHS 지역 모니터링 체계구축의 기본 틀은 UN 개발계획(UNDP)의 ‘성과기반관리(RBM)<sup>36)</sup>적 접근’ 방식과 사토야마(里山) 계획의 ‘해양 및 토지경관의 사회생태학적 생산(SEPLS)<sup>37)</sup>’의 탄력성 지표를 기초로 하고 있음
- UN 개발계획(UNDP)의 ‘성과기반관리(RBM)적 접근’ 방식이란 일련의 성장실적을 달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현장의 모든 행위자들이 생산품, 서비스가 바람직한 성과(생산량,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임
  - 성과기반경영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명확하게 규정된 책임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행실적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추진 상황에 대한 자기 평가와 모니터링을 필요로 함
  - 성과기반경영은 비전 수립과 성과 프레임의 규정과 같은 기획요소로부터 출발하는 라이프사이클 접근법과 유사함[그림 3].
  -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의 성과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

35) 일본 도쿄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엔기구가 설립한 정규 대학임

36) RESULTS-BASED MANAGEMENT HANDBOOK (2001),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자료 참고

37) SEPLS: Socio-Ecological Production in Landscape and Seascape

면, 실행에 옮겨지고, 확실한 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은 필수적 요소임



자료: RESULTS-BASED MANAGEMENT HANDBOOK (2001),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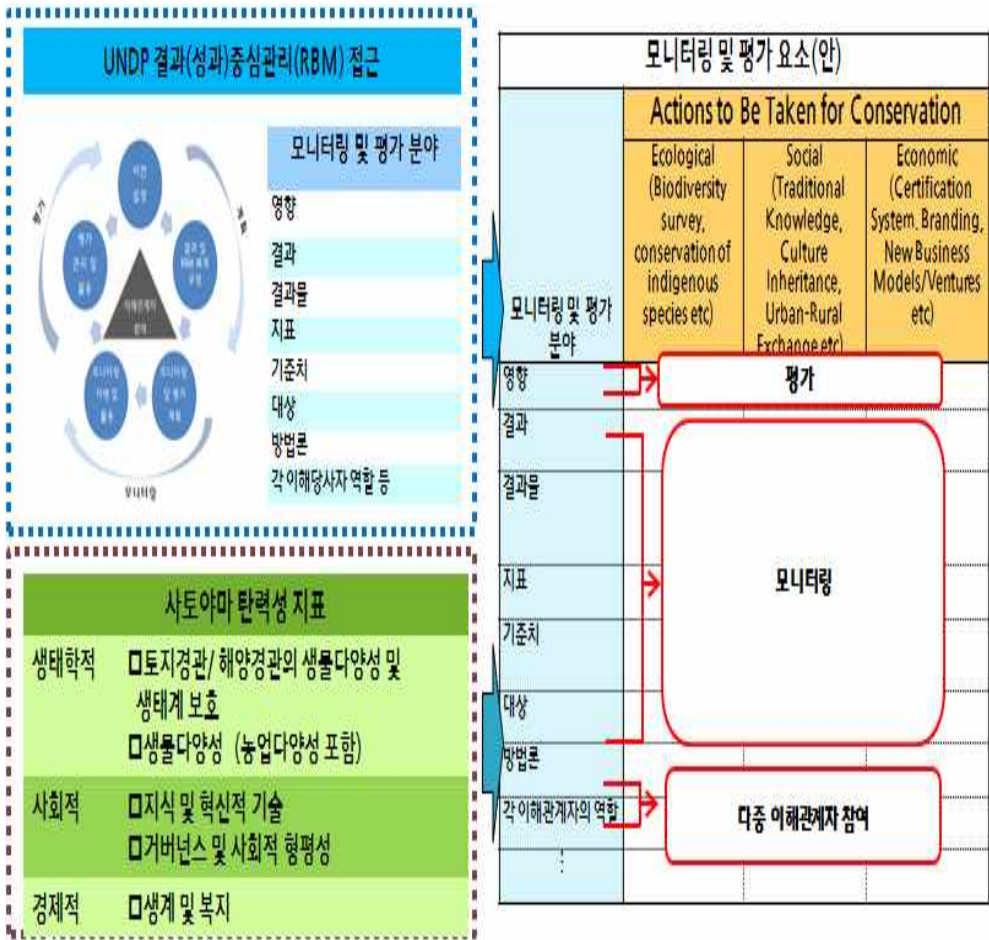
[그림 4-3] UN 개발계획(UNDP)의 ‘성과기반관리(RBM)적 접근’ 기본 틀

- 사토야마 계획의 ‘해양 및 토지경관의 사회생태학적 생산(SEPLS)’의 탄력성 지표는 지역 내 토지경관 및 해양경관의 적합한 관리를 위한 도구임
  - 해당 지역은 SEPLS를 증진하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SEPLS 지표는 크게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 지표로 구분함
  - 생태학적 지표: 토지경관, 해양경관, 생물다양성, 생태계보호
  - 사회적 지표: 지식 및 혁신적 기술, 거버넌스, 사회적 형평성
  - 경제적 지표: 생계 및 복지

- SEPLS 지표는 5개 주제 19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는 5단계 척도로 평가됨

<표 4-2> SEPLS 주제별 세부 지표

주제	세부 지표
농림수산업과 생물	지역식재의 소비
	토종 작물의 보전과 이용
	공유 자원
자연환경	토지이용의 다양성
	자연,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의 보호
	상이한 토지 및 장소의 연결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
지식 및 새로운 기술	농업, 환경에 관한 새로운 도전
	지식, 전통문화의 계승
	지식, 전통문화의 기록
	여성의 지식, 경험, 기술
자연자원의 관리	토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
	자연자원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력
	지역 내의 격차
생활, 생계, 건강	사회, 경제적 인프라 정비
	건강 상태
	수입원의 정도
	자원의 활용에 따른 생계 향상
	자원이용, 생산의 이동, 변경



[그림 4-4] 일본 GIAHS 지역 모니터링 방법 기본구상(안)

### 3. 사도지역 GIAHS 모니터링 사례

#### 가. 사도지역의 기본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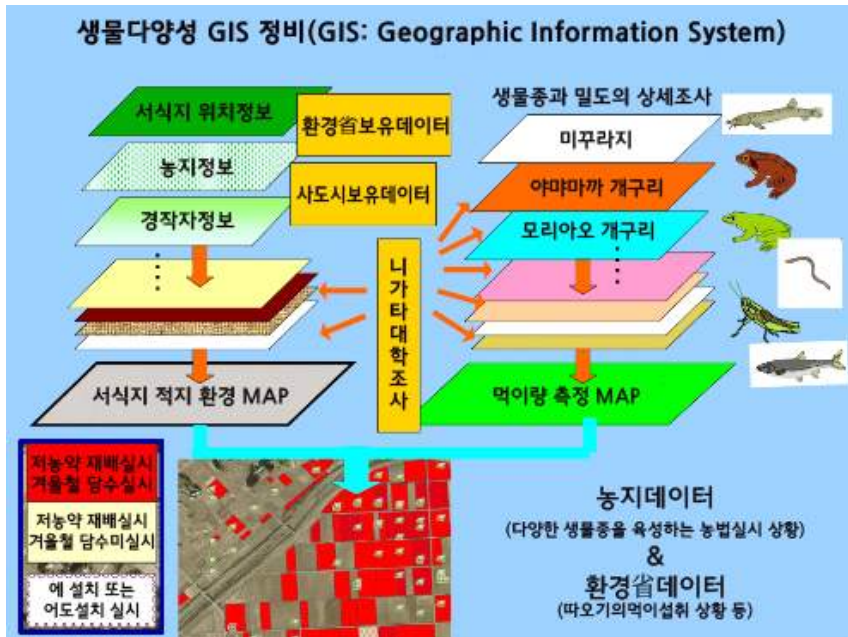
- 사도는 일본해 중앙에 위치함 섬으로, 니가타(新潟) 현(縣)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다. 섬의 크기는 약 855km<sup>2</sup>이며, 280km에 달하는 해안 지대는 다채롭고 아름다움
- 코쿠푸가와(國府川) 강이 섬 중앙을 흐르고 있으며 이 강의 분수령에는 벼를 재배하는 쿠니나카(國仲) 평야가 북쪽으로 오사도(大佐渡) 산과 남쪽으로 코사도(小佐渡) 산 사이에 펼쳐져 있음
- 섬의 대부분이 준국립공원이나 현(縣)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

- 다. 사도 섬은 최근 방생한 따오기<sup>38)</sup>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북쪽의 오사도 산의 향나무림이 바다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축복 받은 곳임
-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사도 섬의 인구는 62,724명이었으며 매년 1,0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노령 거주자(65세 이상)의 비율이 36.8%로 니가타 현에서 5번째로 높고 일본 전체 평균 2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2004년, 10군데 지방자치제 구역이 통합하여 사도시를 구성하였으며, 사도시는 전체 섬을 포괄함. 통합 이후, 사도 섬은 ‘생태섬 사도(Eco-Island Sado)’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주민과 따오기의 공존과 온실 가스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진하였음
  - 농지는 전체 6,000ha이며 이 중 4,000ha가 섬 중심의 내륙 평야지대에 위치하며 사도 섬의 언덕과 계곡은 벼논, 농지, 삼림, 연못, 수로로 가득 차 있고, 농업은 벼, 채소, 가축을 주요 품목으로 하며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음. 난류의 영향으로, 섬의 생태계는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사도 섬의 벼 재배는 일본 야요이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1700년의 역사가 있음

#### 나. 사도지역의 GIAHS 보전관리 활동 내용

- 생물다양성보전 및 환경재생농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朱鷺と暮らす郷づくり認定制度)’에 의해 농가단위의 생물체 조사를 실시, ‘농지 GIS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
  - 다양한 생물체와 공생하는 농법의 실천에 의해 어느 정도 생태계가 재생되어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지도에 표시

38) 따오기(*Wild Japanese crested ibis*)는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조류로 일본어로는 ‘トキ(도끼)’라고 불림



[그림 4-5] 사도시 생물다양성 지리정보시스템 도식도

- 생물다양성의 농업기술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대응기반정비 촉진 파일럿 사업’을 실시, 모니터링 조사에 의해 효과를 검증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에(え, 江)<sup>39)</sup>의 설치, 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논과 용수로 간의 어도 설치, 겨울철 논 생태계 유지를 위한 동기담수(冬期湛水), 그리고 따오기의 먹이 확보를 위한 비오톱 설치 하고 있음
- 따오기와 함께하는 친환경적 농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사도시는 독자적으로 소득보상제도를 마련, 추진하고 있음. 소득보상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사도시에 주소가 있는 경영체, ② 사도시 내에서 관행농법에 비해 5할 이상 低화학농약, 低화학비료로 재배하면서 주식용 쌀을 생산, ③ 국가의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의 조성대상자의 경우에 해당돼야 함. 보상단가는 10a당 동기관수가 1,000엔, 에의 설치 2,000엔, 어도의 설치 4,000엔 임. 이와

39) 논 의 일부이며 논에 서식하는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말함



는 별도로 논의 생물체 조사를 할 경우에도 4,000엔이 지급됨

- 환경재생을 지원할 인재 육성
  - 니이가타 대학과 연계하여 ‘따오기의 섬 환경재생 리더 양성 사업’을 실시함.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한 환경, 자연, 경관 보전과 재생활동을 추진함
  - 귀농, 귀촌자의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실시함
- 사도지역 GIAHS와 관련된 전통예능 보전 활동
  - 사도지역에는 전통예능의 보고로 알려질 정도로 다양한 민속예능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음. 특히 노우(のう:能)<sup>40</sup>라는 전통예능이 다수 남아 있으며 최근에도 각 마을의 노우무대에서 각종 노우가 공연되고 있음
- 사도환경 브랜드와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의 구축
  - 사도産 쌀 브랜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맛, 품질을 향상을 도모함. 니이가타현, 사도시, JA, 농가 등이 연대하여 ‘사도쌀 미래 프로젝트 품질향상 90’ 실천
  - 사도쌀 브랜드 제고
- 지역내외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 협력 활동 추진
  - 다양한 연계협력 활동은 인적자원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공동체 재활성화와 관련하여 니가타대학, 도쿄농업대학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도시 전체를 환경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구할 계획임

---

40) 노우(のう:能)는 일본 남북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예능(연극)임



## 다. 사도지역 GIAHS 보전관리를 주요 지표

<표 4-3> 사도지역 GIAHS 보전관리 주요 지표

지표명	단위
친환경농업의 추이	ha
다면적기능 직불금제도 대상 면적	ha
인정농업자수 <sup>주1)</sup>	명
신규취농자(귀농자)수	명
농업유산 인증제품 판매점수	점포
사도지역인증 농산물 판매점수	점포
사도지역 채소 생산량(직매장으로 납품하는 채소)	톤
사도 어린이 생태계조사 참가자수	명
지역부흥협력대 <sup>주2)</sup> 채용자수	명
비닐봉지 제로 운동 협력점포수	점포
체험프로그램 및 농가민박 숙박자수	명
마을산책 투어 참가자수	명
지역해설자 인정수	명

주1) 인정농업자란 장래 일본농업을 책임질 농업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를 말함

주2) 지역부흥협력대란 2009년에 시행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서 선발된 협력대원을 농촌 지역에 일정 기간(1년~3년) 정주시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지역협력활동)을 하게끔 하는 제도임

## 라. 사도지역의 GIAHS 보전관리 활동의 주요 실적

- 농가의 생물체 조사: 약 6,100건 실시
- 사도지역 내 친환경농업 실시 비율: 약 83%(벼농사)
- 사도지역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
- 환경재생 관련 리더 양성: 211명
- 신규취농자(귀농자) 유치: 20명
- 사도쌀 취급 전문점 증가: 328 점포(GIAHS 지정 후 2배 증가)
- 다랑이논 투어 참가자: 약 1,000명

#### 4. 우사지역 GIAHS 모니터링 사례

##### 가. 우사지역의 개요

- 오이타현 북부 구니사키(國東)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사시 중앙부에 있는 후다고산(721m)을 중심으로 몇 개의 산봉우리가 형성되어 있음. 평야부보다 산림부가 많으며 예부터 물(생활용수, 농업용수)이 부족한 비교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임
  - 인구: 180,572명 (농림어업자: 14,842명)
  - 면적: 1,323km<sup>2</sup>
  - 기후: 온대습한기후
-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을 테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
  - 저수지, 둔병 등 농업용수 공급원에 관한 전통적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진 지역임. 특히 부족한 수량으로 효율성을 극대한 시킨 용수 공급시스템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

##### 나. 우사지역 GIAHS 보전관리 주요 활동 내용

- 우사지역 주민들에게 GIAHS 등재에 대한 자긍심 배양
  - GIAHS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등 개최
- GIAHS 관련 정보지 제작 및 발신
  - 리플릿, 팸플릿 등 제작
  - 우사지역 GIAHS 심벌마크 제정. 홍보용 포스터 등 제작, 각종 방송언론 매체를 통한 GIAHS 홍보
-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상 농업유산 관련 교육 실시
  - 초등학생 대상으로 세계농업유산 교재 작성 배포: 67개 학교
  - 중학생 대상 특별수업 실시: 24개 학교
  - 고등학생 대상 농업유산 관련 구술조사 실시: 8개 학교
- 지역주민 대상 생물다양성 관련 강좌 실시
  - 생물다양성 지역세미나 개최, 지역 생태계 자연관찰 교실
  - 생물다양성 심포지엄 개최
- 지역 전통문화(농경문화) 계승 사업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금 마련
- 농림수산물의 브랜드화
  - '우사지역 세계농업유산 브랜드 인정제도' 도입. 지역에서 생산, 가

- 공되는 농림수산물 및 농식품의 브랜드화 추진
- 교류인구의 확대
    - 세계농업유산을 테마로 한 사진콘테스트 실시
    - 세계농업유산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프로그램 실시
    - 지역 대학에 세계농업유산 과목 커리큘럼 구성
  - 오이타 세계농업유산 계승 펀드 설립
    - 오이타현과 지역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펀드를 설립, 우사지역 세계농업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재양성, 보전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

#### 다. 우사지역 GIAHS 보전관리 주요 지표 및 실적

<표 4-4> 우사지역 GIAHS 보전관리 관련 지표 및 산출 방법

지표명	단위	산출 방법 및 기준
지역주민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지도	%	지역주민 설문조사
중학생 특별수업(농업유산 관련) 수강생수	명	행정조사
고등학생 농업유산 조사 참가자수	명	
농림어업인수	명	
신규취농(귀농)자수	명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량/면적	톤/ha	
지역산 농산물 인증 획득 재배 면적	ha	
농지, 수자원 보전관리 직불금 <sup>41)</sup> 협정 체결 면적	ha	
지역 환경 미화 활동 단체수	단체	
경작포기지(휴경지) 면적	ha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	백만엔	
희소 야생동물의 생식, 생육환경 조사 또는 보전활동 단체	단체	
농가민박 숙박자수	명	
농경문화 계승 관련 활동 단체수	단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브랜드 인증 건수	건수	

41) 농지 및 농업용 수리시설 등을 지역주민들의 공동 활동에 의해 유지관리 할 경우 지불하는 직불금.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는 일본형 직불금 제도의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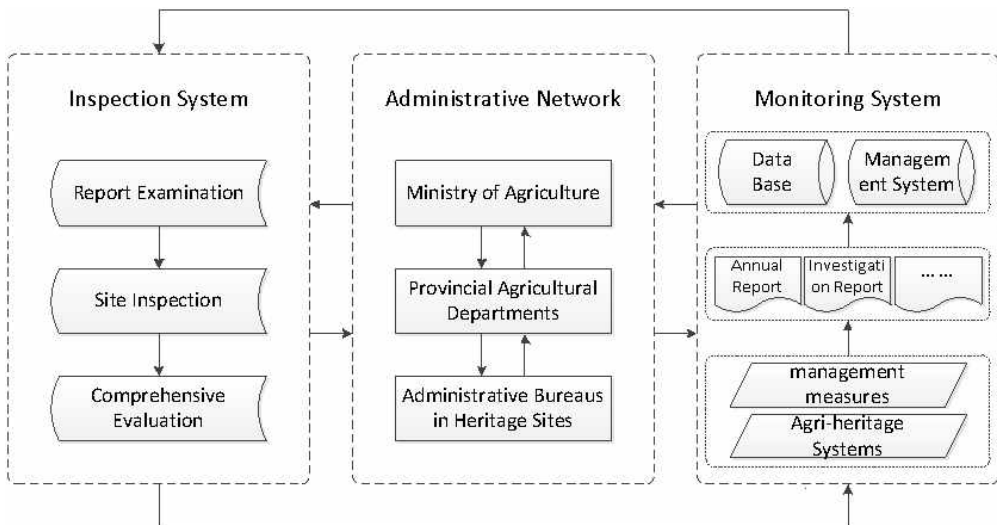
<표 4-5> 우사지역 GIAHS 보전관리 주요 지표별 실적(2014년 기준)

지표명	산출 실적
지역주민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지도	28.9%
중학생 특별수업(농업유산 관련) 수강생수	24개 학교 1,669명 수강
고등학생 농업유산 조사 참가자수	8개 학교
농림어업인수	
신규취농(귀농)자수	67명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량/면적	
지역산 농산물 인증 획득 재배 면적	100.5ha
농지, 수자원 보전 관리 직불금 협정 면적	8,313ha
지역 환경 미화 활동 단체수	8단체
경작포기지(휴경지) 면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	
희소 야생동물의 생식, 생육환경 조사 또는 보전 활동 단체	3단체, 330명 참가
농가민박 숙박자수	15,657명
농경문화 계승 관련 활동 단체수	7단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브랜드 인증 건수	25건

### 제3절 중국 GIAHS 지역 모니터링 체계<sup>42)</sup>

#### 1. 중국의 GIAHS 지역 모니터링 기본 체계

- GIAHS 지역의 모니터링 목적
  - 현재 GIAHS가 어떠한 위협(위험)에 처해 있으며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엄밀히 파악하기 위함
  - 보호 및 개발행위가 GIAH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
  - 어떠한 위협(위험)에 처해 있는 GIAHS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 및 비상상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
- 모니터링은 크게 기록(문헌) 검사, 현장 검사, 종합 평가 3가지로 구분
  - 기록검사는 중앙정부인 농업부에서 실시
  - 현장검사는 GIAHS 사이트 해당 지역 지방농업부에서 실시
  - 종합평가는 GIAHS 사이트 해당 지역 담당부서에서 실시



[그림 4-6] 중국 GIAHS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본틀

42) JIAO Wenjun (2016),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GIAHS in China', 제3회 ERAHS 발표자료를 참고함

## 2. 중국의 GIAHS 모니터링 시스템

- 모니터링 대상: 농업유산시스템, 관리 체계
- 모니터링 방법: 연간보고서, 정기 조사리포트(3~5년)
- 모니터링 범위: 농업유산 사이트 + 주변 지역
- 모니터링 관리 자료: 정기 조사리포트, 관련 D/B, 관리 시스템

## 3. 중국의 GIAHS 모니터링 항목(지표)

- GIAHS 모니터링은 크게 농업유산시스템과 관리 측정으로 구분함
  - 농업유산시스템 관련 세부 항목으로는 크게 생태학적 보호, 경제적 개발, 사회적 유지, 문화적 유산 4가지로 나뉨
  - 관리 측정 관련 세부 항목으로는 역량강화와 홍보·확산으로 나뉨

<표 4-6>중국 GIAHS 모니터링 항목 예시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농업유산시스템	생태학적 보호	농지 환경
		농업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농업경관
	경제적 개발	농산물 생산
		생태 농업
		지속가능한 관광
		경제적 수익
	사회적 유지	인구 구조
		노동의 사회적 분업
		여성 참여
	문화적 유산	사회적 조직
		전통지식
전통문화		
전통마을		
관리 측정	역량강화	문화인식
		관리시스템
		관리 능력
	홍보, 확산	정부 지원
		대중매체 홍보
		교환 방문(상호 교류)

#### 4. 중국의 GIAHS 모니터링 항목별 구체적 기준

- 중국의 GIAHS 모니터링은 크게 농업유산시스템과 관리 측정으로 구분함
  - 농업유산시스템 관련 세부 항목으로는 크게 생태학적 보호, 경제적 개발, 사회적 유지, 문화적 유산 4가지로 나뉨

<표 4-7> 생태학적 보호 관련 지표 예시<sup>43)</sup>

2급 지표	점수	3급 지표	점수	평가 지표(배점)
유산 규모 보호	10	유산 면적 보호	10	유산체계의 유형과 면적의 불변 또는 다소 증가: 7-10점 유산체계의 유형은 불변하나 면적(혹은 古樹 수량)은 다소 감소: 1-6점 유산체계의 일부 유형 소실 혹은 면적(혹은 古樹 수량) 대규모 감소: 0점
농업 생태 보호	30	전통 품종 보호	10	농업작물의 전통품종 보전 또는 다소 복원: 7-10점 농업작물의 전통품종 다소 멸종: 1-6점 농업작물의 전통품종 거의 유실: 0점
		생태 기능 보호	10	핵심 생태계 기능 유지 양호: 7-10점 핵심 생태계 기능이 손상을 입었으나 단시간 내 회복 가능: 1-6점 핵심 생태계 기능이 손상을 입어 회복 불가능: 0점
		농지 환경 보호	10	농지의 토양과 물환경의 질이 다소 개선: 7-10점 농지가 다소 오염되고, 농지의 토양과 물환경의 질이 영향을 받음: 1-6점 농지오염이 심각: 0점
농업 경관 보호	20	농지 경관 보호	10	농지경관 유지 양호: 7-10점 농지경관이 다소 파괴되었으나 단 시간 내에 회복 가능: 1-6점 농지경관이 대규모로 파괴되어 회복 불가능: 0점

43) 일부지표만 예시함. 중국사회과학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 단계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함

## 제4절 농업유산과 관련 있는 모니터링 지표 사례(일본)

### 1.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 지표: 미야기현 都農町(쓰노쵸) 사례

- 미야기현 쓰노쵸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 지표는 크게 아래와 같이 4개 부문으로 나뉨
  - 지속가능하고 살기 편한 지역 형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의 형성
  - 지역 간의 교류 및 연대, 인구 유치
- 상기의 4개 부문 가운데 농업유산과 관련성이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의 형성’ 사업의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8>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형성’ 사업 지표

시책목표	모니터링 항목	지표 후보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과 아름다운 농산어촌 실현	- 자연환경 배려 생산, 생활 환경 개선	농로, 오수처리시설, 정보통신 등의 정비량
	- 자연재해 대응	산림, 농지 등의 보전관리율
도시와의 교류	- 아름다운 경관 유지	재해, 야생동물 피해 발생수
	-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	농촌관광 체험객(방문객)수
농산어촌 활성화	- 농림수산물 및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산품

### 2. 효고현 지역만들기 지표

- 효고현 지역만들기 지표는 효고현 내 기초 지자체의 지역만들기 목표 달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임



- 지표는 아래의 같이 4개의 테마로 나뉨
  - 안전 안심 항목: 자연재해, 교통, 범죄, 주택 관련
  - 환경 공생 항목: 온실가스, 자연에너지, 산림, 자연환경 보전 관련
  - 매력 활력 항목: 인구밀도, 취업률, 관광객, 문화재 관련
  - 자립 연대 항목: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조직, 타 지역과의 교류 관련
  
- 상기의 4가지 항목 가운데 농업유산과 관련성이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4-9> 효고현 마을만들기 지표 예시(일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 비율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
지역의 매력 유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수
	지역 내 등록 문화재수
	거주하는 지역(마을)이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주민 비율

### 3. 농림수산성 자원보전실태조사사업 관련 지표

-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촌지역 자원 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7개 부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4-10> 농촌지역 자원 보전 활동을 위한 조사 항목

조사명	조사항목	주요 지표
농업농촌구조조사	-지역의 농업농촌구조 현상파악 -장래의 농업농촌구조 예측 기초조사	조사지구 속성, 주민 연령 구조, 영농형태 등
자원부존량조사	-지역의 농지, 수로 등의 자원량 파악 -사업이력, 시설의 정비상황 파악	영농기반정비 상황 농로, 수로 부존량
유지보전 활동조사	-시설 등의 유지보전을 위한 공동작업, 개인작업의 실태 파 악	유지보전활동 조사 횟수 지역활동 횟수
환경보전 활동조사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작 업, 개인작업의 실태 파악	환경보전활동 조사 횟수
설문조사	-지역주민, 주민조직에 의해 지역공동체 실시 상황 파악 -향후 자원보전활동에 참여 가능성 파악	
자원보전활동지침 검토조사	-자원보전활동을 위한 구체적 활동에 대한 지역별 설문조사	별도 기술(표10)
지원 사례조사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자원보 전활동을 위한 지원사례 파악	

- 상기 표의 조사항목 가운데 농업유산 보전과 관련 있는 ‘자원보전활동지침검토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생태계보전, 수질보전, 경관형성·생활환경보전, 홍수방지, 자원순환으로 구분됨. 각각의 세부

지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음 [표4-10 참고]

<표 4-11> 자원보전활동지침검토조사 관련 지표 예시

구분	관련 지표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계획 수립 여부 생태계보전에 대한 홍보: 홍보지, 학교교육 자료, 옥외 홍보물 보전대상종특정(선정)을 위한 학습회 특정외래종 제거를 위한 지역주민 이해 휴경지 등에 비오톱 설치 생물조사 실시
수질보전	수질보전계획 수립 수질보전에 대한 홍보: 홍보지, 학교교육 자료, 옥외 홍보물 수질보전에 대한 학습회 순환형 관계 시설 설치 여부 수질 모니터링 실시
경관형성· 생활환경보전	경관형성 및 생활환경보전계획 수립 경관형성 및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홍보지, 학교교육 자료 등 농촌경관에 대한 학습회 지역주민 간 교류활동 농로, 수로에 경관식물 식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순회 점검
자원순환	자연순환계획 수립 자연순환에 대한 홍보: 홍보지, 학교교육 자료, 옥외 홍보물 자연순환에 대한 학습회 농업집락 배수시설 부근 퇴적물 수집 퇴비화 바이오매스 자원작물 식재

#### 4. 일본 환경기본계획 관련 환경 지표

- 일본 환경기본계획 관련 환경 지표는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됨. 여기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표에 대해서만 알아봄
  
-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배려의 향상과 관련된 지표
  - 생물다양성의 인지 상황 및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에 대한 인지도
  - 생물다양성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수
  - 지자체가 정하는 ‘환경기본계획’ 책정수
  -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역의 녹지관리 상황을 표시하는 지표
  
- 생물다양성의 보전·재생에 관한 지표
  - 국내 희소 야생생물 식물종의 지정수
  - 특정 외래생물 및 요주의 외래생물의 관리
  -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 생물 관리
  
-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지표
  - 지역 내 바이오매스 이용량
  - 지역 내 목재의 공급량
  - 지자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계획 책정수
  - 산림경영계획의 책정 면적

## 제5절 UNESCO 세계유산제도

### 1. 개요

#### 가. 세계유산의 정의 및 유형<sup>44)</sup>

-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지칭함
-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각국의 세계유산은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며,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에 자연의 요소를 가미한 개념의 일종으로 문화경관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음
- 이외에도 유네스코는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을 추가함으로써 세계유산은 크게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 세계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이외에 인류의 무형유산(2003), 세계의 기록유산(1997)이 추가됨

#### 1) 자연유산

-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전승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의 기념물,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등을 일컫음
-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에는 특히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의 지역이 포함됨.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정의한 세계농업유

44) 윤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의 제1장 2절의 일부 내용 발췌

산제도(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의 개념요소 중에 생물다양성과 연관되나 FAO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은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토지이용체계 속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의 개념과 구별됨

<표 4-12> 세계유산 유형에 따른 정의

구분	정 의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 중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문화유산	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군 :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2) 문화유산

-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정의에는 인간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가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특히 문화유산을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유산의 정의에 농업과 관련된 구조물, 유적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문화유산에서 말하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란 유적

지로서 FAO에서 말하는 경관과는 다른 의미임. 문화유산에서의 유적지란 조상이 남긴 주거지 같은 건축물이나 무덤 따위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의미하지만 FAO의 경관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물생산지역과 주변의 자연생태지역을 아울러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문화유산의 개념으로는 FAO의 농업유산을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함

- 유네스코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1994년에 문화유산의 개념에 들어 있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이라는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문화유산의 카테고리에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새로 추가하였는데, 이 개념은 FAO의 농업유산과 더욱 근사함

### 3) 문화경관

-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된 이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유산은 인류가 쌓아온 기념적인 건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연유산은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난 자연지역이 대부분이었음. 세계유산목록이 이와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양극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종래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이를 메우는 개념으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을 고안함<sup>45)</sup>

#### <표 4-13>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영역

영역	내용
제1영역:의장(意匠)된 경관 (designed landscape)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 창조된 경관
제2영역: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1)지속형 경관: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 (2)잔존형 경관: 유적 주위의 화석경관 등과 같이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

45) 「운영지침」에 따르면 복합유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유산’인 반면 문화경관은 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하는 유산으로 「운영지침」 제1조에 진술된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을 대표하는 것이다. 즉 문화경관은 세계유산의 등재조건 중 문화유산의 조건인 1번~6번 중에서 최소한 하나(특히 4번)만 충족시켜도 등재가능하다. 그러나 문화경관이면서 복합유산이기 위해서는 7~10번 중 하나 이상을 더 충족시켜야 한다. 문화경관 중 만약 자연유산의 준거를 한 개 이상 충족한다면 복합유산으로도 동시에 등재 가능하다.

제3영역:관련된 경관 (associative landscape)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종교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연상적(聯想的)
--	---

자료: <http://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1>

- 1992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회의에서 출간된 ‘Cultural Landscapes of Universal Value’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4년에 문화경관의 개념이 구체화됨. 그리고 1995년에 문화경관 중 진화하는 경관의 사례로 필리핀의 콜디레라(Cordilleras) 산맥의 계단식 논이 등재됨
- 이상의 정의에서 보듯이 문화경관의 제2영역인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속에는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이 포함되어 있음.<sup>46)</sup> 그러나 문화경관 역시 FAO의 농업유산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농업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유산의 개념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FAO의 농업유산제도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FAO의 농업유산과 유사한 유산은 총 17가지로 추릴 수 있음

<표 4-14> 농업과 관련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단위:ha)

연도	유산명	국가	주요작물	유산면적
1995	필리핀 코르디레라스 다랭이 논	필리핀	쌀	-
1997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이탈리아	포도	4689
1999	비날레스 계곡	쿠바	담배	-
1999	생테밀리옹 특별지구	프랑스	포도	7847
2000	월란드 남부 농업경관	스웨덴	복합	56,323
2000	쿠바 남동부 최초 커피 재배지 고고 경관	쿠바	커피	81,475
2000	바하우 문화경관	오스트리아	복합	18,387
2001	알투 도루 와인 산지	포르투갈	포도	24,600

46) 문화경관의 제2영역은 대상지역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유산보다 넓다. 즉 대상범위에서 문화경관의 외연이 농업유산보다 넓다. 여기에는 농림수산업 관련 경관은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산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2001	페르퇴/노이지들러 호 문화경관	오스트리아-헝가리	복합	68,369
2002	토케이 와인 역사 문화경관	헝가리	포도	13,255
2004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경관	포르투갈	포도	987
2004	발 도르차	이탈리아	복합	61,188
2006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	멕시코	용설란	35,019
2007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스위스	포도	898
2013	홍허하니족의 다랑논 문화경관	중국	쌀	16,603
2014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 란게-로에로와 몬페라토	이탈리아	포도	10,789
2014	바티르-남부 예루살렘 올리브와 포도밭 문화경관	팔레스타인	포도, 올리브	349

자료: Paola Gullino et al.(2015). Assessing and Monitoring the Sustainability in Rural World Heritage Sites.

#### 4) 복합유산

- 복합유산은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유산으로, 하나의 공간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조건을 적어도 한가지씩은 부합하는 유산을 말함. 세계유산의 등재기준 총 10개의 항목에서 문화유산의 기준 중 1가지 이상, 자연유산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나. 세계유산 등재기준

-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협약에 근거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운영지침」이 마련됨
-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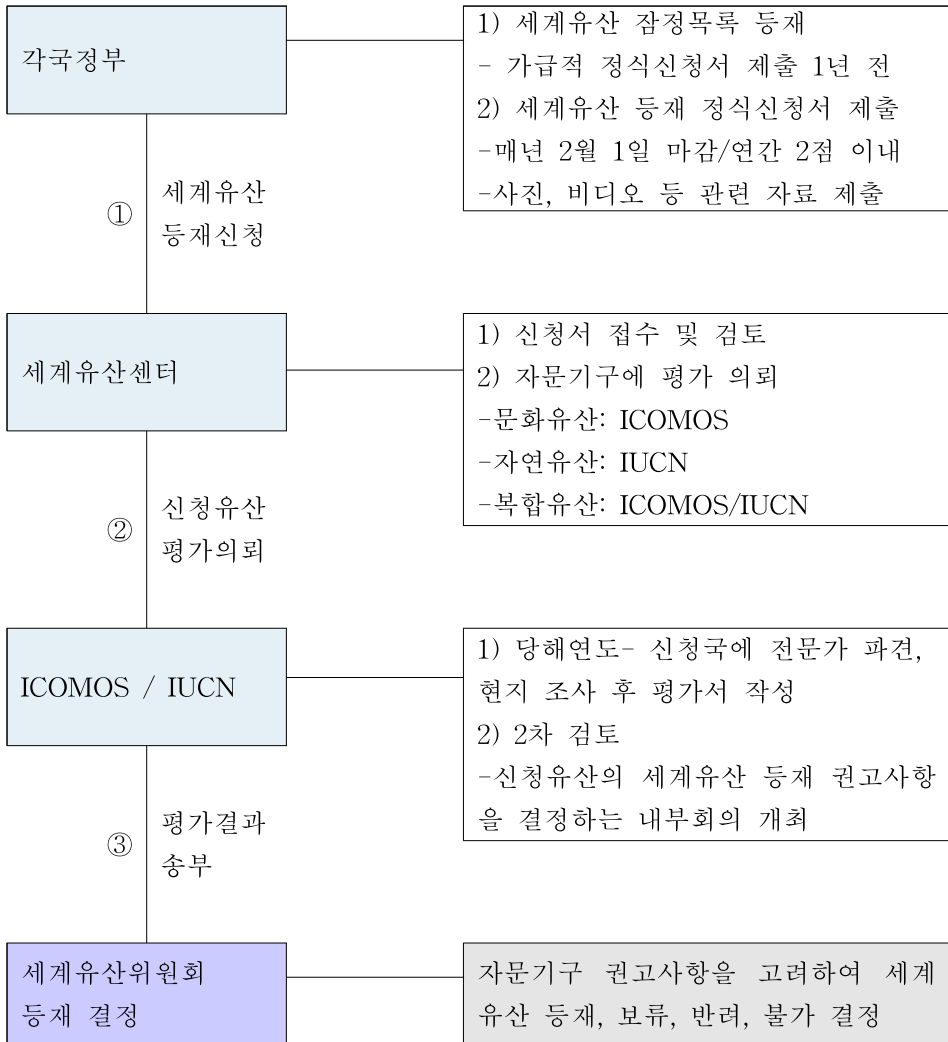
<표 4-15> 세계유산 등재기준

구분	기 준	사 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 완충구역(buffer zone) 설정 등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다. 등록절차

<표 4-16> 세계유산 등록절차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2. 세계유산 보호 및 관리의 기본방향

- 세계유산 등재신청 시,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등재 당시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서 유산 보호에 관한 법적, 행정적 제도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등재 이후에도 유산의 보호를 위해 등재 전 수립된 관리 계획의 이행과 더불어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관리 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유산에 대한 인적, 물리적 자원 등 유산 보호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계획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자국 내에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활용하고 미래세대로의 전승이 최우선의 의무(협약 제4조)”이며, “자국은 적절한 법적·과학적·기술적·행정적·재정적 조치와 서비스를 채택(협약 제5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운영지침」의 보호 및 관리 계획(Protection and Management Plan)에서는 ① 법률, 규제, 계약상의 보호 대책(Legislative, regulatory and contractual measures for protection) ②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리적 경계(Boundaries for effective protection) ③ 완충 구역(Buffer zones) ④ 관리 계획(Management systems) ⑤ 지속가능한 사용(Sustainable use)이라는 다섯 가지의 해당 기준을 마련함

### 3. 모니터링 방법

-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평가하는 방식의 모니터링은 신청서 상의 모니터링과 운영지침 상의 모니터링으로 나뉨

#### 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상의 모니터링

- 세계유산을 보유한 각국 정부는 등재 이전부터 등재신청서에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항목을 기술하며, 등재된 순간부터 보존과 관리의 의무를 갖게 됨
- 1977년 이래 「운영지침」이 정하고 있는 등재신청서 서식은 신청지역의 보존현황과 더불어 유산 보존에 필요한 법적·과학적·기술적·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등재신청서의 1장~3장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4장~6장은 보

호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4.a 현재의 보존상태'에 기재된 정보는 향후 신청 유산의 변화를 추적하고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및 비교자료로 활용됨

**<표 4-17>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의 4~6번 항목의 내용(별첨 1 참조)**

- 
4. 보존 상태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향후 모니터링 하는 데 기초자료 역할
- 
- a. 현재의 보존 상태,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 유산의 보호 및 관리
- a. 소유권, b. 보호를 위한 지정, c. 보호대책의 시행 수단, d. 신청 대상물이 소재한 시 및 지역과 관련된 기존 계획, e. 대상물의 관리 계획이나 기타관리 체계, f. 재원 및 재정 규모, g. 보존 및 관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훈련의 제공처, h. 방문객 시설 및 통계, i. 대상물의 소개 및 홍보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j. 전담인력의 수준(전문, 기술, 유지관리)
- 
6. 모니터링
- a. 보존 상태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b. 대상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 조치, c. 선행 보호 활동의 결과물
- 
- 등재신청서에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목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유산의 변화와 보존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를 마련함에 있음. 하위단계인 '6.a 보존 상태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에 제시하는 지표들에 따라 유산의 보존 상태를 평가해야 함. 신청서에서 제시한 우수한 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 자연유산인 경우 해당 종들의 수, 또는 주요 종의 개체군의 수
  - (2) 역사적 도시나 지구에 소재하며, 대대적 보수를 요하는 건축물의 비율
  - (3) 주요 보존 프로그램의 완료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연수(年數)
  - (4) 특정 건조물이나 건물의 구성요소에 있어 안정성 또는 이동의 정도
  - (5) 신청 대상물에 대한 침해행위의 증가 또는 감소 속도

- 본 항목의 내용은 등재신청서의 1장~3장에 해당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들 자료는 수치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지점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와 같이 쉽게 비교가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됨.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여기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은 단순히 측정 가능한 사항이 아닌, 1~3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들이어야 함

1)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지표 사례

가) 중국 홍허 하니 계단식 논 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 중국 윈난 성(雲南省) 남부에 있으며, 16,603ha에 달하는 계단식 논으로, 문화유산 등재기준인 (Ⅲ)과 (V)를 충족함에 따라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 세계유산위원회에 따르면, 본 유산은 숲, 수계, 계단식 논, 마을의 4가지 요소가 잘 융합되어 있으며 다량논의 전통 농업 시스템과 경관은 경관 요소의 전통적인 형태, 경관 기능의 연속성, 관례와 전통 지식, 관습과 민간신앙, 의례의 연속성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해왔음
- 현재 본 유산은 중국 국가위원회에서 지정한 ‘국가 우선 보호구역’의 하나이자, 위안양(元陽) 현 인민 정부에 의해 2008년 보호사적(史蹟)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世界文化遺產保護管理辦法)’ 내에서 보호를 받고 이 외에도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조치 및 지침 등을 공포하였음
- 홍허 하니 계단식 논 의 등재신청서 6번 항목인 모니터링의 대상은 크게 유산을 둘러싼 물리적 측면,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뉘며 이들은 다시 세부 대상으로 분류됨



[그림 4-7] 벼 생육상태 모니터링



[그림 4-8] 기상 상태 변화 모니터링

자료: People's Republic of China(2013), Nomination of 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표 4-18> 홍허 하니 계단식 논 등재신청서 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분류	소분류	세부 지표	정기성	기록물	기록보관장소	
유산의 물리적 측면	01	숲, 식생	면적, 범위, 변화과정	연1회	통계자료, 보고서, 이미지, 영상물	국가문물국 (SACH), 윈난성 문화재청, 홍허하니족 이족 자치주 지방행정국, 위안양현 지방행정국
	02	관개시설	자연 배수로 길이, 폭 인공 배수로 길이, 폭	연1회		
	03	계단식 논	면적, 범위, 변화 경작방법, 품종, 수확량	연1회		
	04	주태양식	전통양식의 수, 변화 내용	일1회		
	05	무형요소	전통 농업기술과 이론의 변화 내용	일1회		
영향 요인	06	도농개발	유산지역 및 완충구역 내 건설사업 주요내용 및 규모 유산지역 및 완충구역 내 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	일1회	통계자료, 보고서, 이미지, 영상물	
	07	관광개발	관광객 수, 유인요인, 유산개입정도	일1회		
	08	자연재해	유산지역 및 완충구역 내 재해 특성, 범위, 관련 기술	일1회		
	09	생태환경	기후 및 기상 변화 공해 특성 및 관련 기술 환경 위생	일1회		
사회·경제적 측면	10	경제개발	유산지역 및 완충구역 내 농 업경제자료 및 농업인구 소득	연1회	통계자료, 보고서	
	11	인구증가	유산지역 및 완충구역 내 인구 및 인종의 변화	연1회	통계자료, 보고서, 이미지	
	12	토지이용	유산지역 및 완충구역 내 토지이용상태	연1회	통계자료, 보고서, 이미지	
	13	환경보호	유산지역 및 완충구역 내 토질, 수질, 삼림의 상태	연1회	통계자료, 보고서, 이미지	

자료: People's Republic of China(2013), Nomination of 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나)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 란게-로에로와 몬페라토(Vineyard Land- scape of Piedmont: Langhe-Roero and Monferrato)

-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남부, 포(Po) 강과 리구리아 아펜니노 산(Ligurian Apennines) 사이에 위치한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은 서로 다른 특징의 와인 생산지 다섯 곳과 한 곳의 성으로 이루어진 유산으로서, 수세기에 걸친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의 기술적·경제적 전체 과정을 포괄함
-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동시에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선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 전통에 관한 특별한 증거가 되며,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로 간주되어 세계유산 등재기준(Ⅲ)과 (V)를 충족함에 따라 2014년에 등재됨
- 이 유산은 ‘문화유산 및 경관 규정(Cultural Heritage and Landscape Code, 2004년 1월 22일 명령 제 42호)’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으며, 문화유산부처와 지역 관리청이 관할함. 완충구역에 대한 보호는 2013년 9월, 지방법(Provincial Act)에 의거하여 확정되었음
- 관리협회(Management Association)는 보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유산과 완충구역의 관련 시 당국들을 주(Region) 정부와 통합시켰으며, 그 결과 정확하게 규정된 프로그램이 관리계획의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등재신청 시 제시된 모니터링 지표는 환경적, 역사·문화적, 경관적 측면에서의 보존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됨

다)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



&lt;표 4-19&gt;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등재신청서 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분류	세부 지표	정기성	기록보관장소
환경적 측면	01 자연적 가치	연1회	SiTI elaboration of IPLA data - Ground use
	02 포도밭으로 이용되는 토지 면적	연1회	피에몬테 주 농업 관계부처
역사- 문화적 측면	03 1884년과의 비교를 통한 포도밭 토지의 변화율	연1회	SiTI elaboration of Regione Piemonte data -IGM cartography
	04 역사적으로 검증된 포도품종의 수	연1회	피에몬테 주 농업 관계부처
	05 포도 재배 관련 이벤트의 수	연2회	피에몬테 주 문화 관계부처
	06 방문객의 평균 체류 기간	연1회	피에몬테 주 관광 관계부처
	07 전체 방문객의 수(내국인-외국인)	연1회	피에몬테 주 관광 관계부처
	08 박물관 입장권 판매량	연1회	문화 연구소 (피에몬테)
경관적 측면	09 파노라믹 뷰포인트의 수	연1회	피에몬테 주 경관 관계부처
	10 경관 보존 관련 사업의 수	연2회	피에몬테 주 도시계획 관계부처, 행정구역

자료: Republica Italiana(2014), Nomination of Vineyard Landscape of Piedmont: Langhe-Roero and Monferrato

-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씨족 마을로, 500년 이상 엄격한 유교의 이상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던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 (Ⅲ)과 (Ⅳ)에 의거하여 2010년에 등재됨
- 이 두 마을은 1984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 중심으로 보존되어왔으나, 세계유산 등재신청 시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 생산영역 및 무형유산 등의 요소들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본 유산의 모니터링은 마을의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로 보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가 마련되었으며, 보존관리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보존관리체계 역시 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됨

<표 4-20>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등재신청서 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분류	세부 지표	주기성	기록보관장소
물리적 환경	01 보존관리평가등급에서 '양호·보통·불량'으로 평가된 지정건물의 수	연1회	·하회마을: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양동마을: 경주시청
	02 보존관리평가등급에서 '양호·보통·불량'으로 평가된 비지정건물의 수	연1회	
	03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물의 수	연4회	
	04 문화유산 구역 경관 중에서 복원이 필요한 지점의 수	격년1회	
	05 완충구역 경관 중에서 복원이 필요한 지점의 수	격년1회	상동
	06 마을구조를 해치고 있는 지점의 수	연1회	
문화적 환경	07 전례행사 및 세시풍습의 수	연1회	
	08 마을 정주기능 유지 여부	연1회	
경제적 환경	09 마을 농업활동 보존	연1회	
	10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평가에서 불량으로 평가된 지표의 개수	연1회	
	11 관광편의시설의 양과 질	연1회	
보존관리체계		격년1회	

자료: 대한민국(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등재신청서

- 각 영역에서 구체적인 보존·관리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문별 대상을 요소별로 분류하고 상세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는데, 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있어 적용 가능한 항목은 마을의 정주기능, 농업활동,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편의시설, 보존·관리체계 등이며 이들의 세부 평가지표는 [표10]과 같음. 지표는 수치로 표현 가능하거나 YES 또는 NO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됨

&lt;표 4-21&gt;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의 부문별 상세 모니터링 지표

분류		지표 항목
마을의 정주기능		①공가의 수(공실률) ②가구 유출 수 ③세대 별 인구 비율 ④외지인 소유 토지면적 비율 및 필지 수 ⑤마을의 소득 증가 여부
마을의 농업활동		①농경지의 토지이용 변화 ②농경지의 유희경작지 비율 ③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 ④가구 별 농업 소득
지역기능 관광 프로그램	사회경제적 요소	①관광과 다른 경제부문간의 연계성 ②지역 상품과 서비스 의 활용 ③관광객 소비의 증가 여부 등
	문화관광적 요소	①관광과 관광효과에 대한 교육 ②적절한 방문객 행동양식 ③지역문화 생산수단의 보호 및 지원 ④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광객 수 제한 등
	커뮤니티 기반 요소	①관광계획과 실행에의 지역주민의 참여 ②비용·수익의 커뮤니티 내 공정한 배분 ③관광, 자연환경, 역사환경 보존의 공존 등
	기타	①마을주민의 선택의 자유 ②약자에 대한 배려
관광편의 시설의 양과 질	휴식시설	①휴식시설의 양 ②휴식시설의 위치 ③휴식시설의 관리상태
	매점	①매점의 관리상태 및 청결도 ②판매물품의 종류, 질, 가격
	안내판	①안내판 위치의 적절성 ②안내판의 관리상태 ③내용의 이 해도 ④내용의 정확도
보존관리체계		①조직의 인원 및 규약이행여부 ②관련 법규 및 계획 ③방 재, 환경 관리상태 ④예산 ⑤마을 관련 기록여부 ⑥홍보

자료: 대한민국(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등재신청서

#### 라)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5-7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  
이에 있었던 교류에 따른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  
주는 고고학 유적으로.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군, 건축물  
과 석탑을 통해 한국의 고대왕국 백제의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 (Ⅱ)와 (Ⅲ)에 의거하여  
2015년에 등재됨
- 본 유산의 경우, 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에 흩어져 있는 8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요구됨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모니터링 요원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에 기록하는 방식과 일반 관광객이 QR코드를 이용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함. 이는 일반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사항과 관람객 불편·건의 사항, 유산의 보존·관리 상태 등의 기록을 포함함
- 등재신청서 상 모니터링 대상 및 지표는 크게 물리적 환경, 관광, 보존관리체계로 나뉘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표는 지정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뉘 각 구역에 해당되는 지표를 제시함

<표 4-22>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신청서 상의 구역 구분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

분류		세부 지표	정기성	기록보관장소
지정유산구역	매물 유적	01 균열 및 침강 여부	월1회	백제세계유산센터
	석조 구조물	02 석재 표면의 부식 정도	5년1회	
		03 돌을 침식시키는 식재 분포	연1회	
		04 구조적 안전 진단	5년1회	
	토담	05 토담에서 자라는 식재 분포	연1회	
		06 토담의 소실 여부	월1회	
	왕릉	07 고분의 손실 정도	분기1회	
		08 벽화의 보존 정도	5년1회	
		09 내부 환경 변화 평가	5년1회	
		10 방문객 수	매일	
		11 유산구역 내 거주자 수	연1회	
완충구역	12 완충구역 내 거주자 수	3년1회		
	13 신축 건물/시설의 수, 유형, 면적, 높이	연1회		
	14 임야 면적	격년1회		

자료: Republic of Korea(2015), Nomination of Baekje Historic Areas.

- 등재신청서에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역사지구의 보존·관리 상태 및 경관의 보존·관리 상태 평가, 지속가능한 관광,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도 제시되었음. 이들은 모두 수치나 YES 또는 NO로 표현 가능하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 전후 비교가 용이한 항목으로 구성됨.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모니터링 대상 중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 측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있어 참고가 되는 항목은 경관, 관광, 보존관리 체계임

<표 4-23>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부문별 상세 모니터링 지표

분류		지표 항목	
경관	조망점	①야간조도 ②주변 경관과의 조화 ③지역특색 반영 여부 ④두드러지는 요소의 여부	
	경관	①문화유산경관을 해치는 구조물 여부 ②문화유산경관에 적합하지 않은 색채 여부	
	분위기	①소음에 의한 불편한 경험 여부 ②쓰레기처리 및 위생시설 여부	
	자연 환경	①문화유산경관을 해치는 식재 여부 ②주변 지형을 해치는 장소 ③자연재해 및 인공적 위협 여부 ④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나무 군락 여부	
관광	경제적 타당성	①관광과 연계된 지역산업 여부 ②관광상품 및 서비스 여부 ③관광상품 가격의 적정성 ④개별 관광객 소비의 증감도	
	주체	①관광서비스 주체의 지역 내 거주 여부 ②관광 관련 이해관계자의 교육 기회 여부 ③지역민의 교육기회 여부 ④지역민과 관광업체와의 소통 여부	
	접근성	①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②주차장의 적절한 면적	
	프로그램	①축제 및 행사 여부 ②새로운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여부 ③관광 진흥 프로그램 시행 여부 ④외국인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여부	
	관광객	①관광객 증가 여부 ②적정한 수준에서의 문화유산 유지 ③관광객 만족도	
	환경과의 관계	①관광객의 문화유산 훼손 여부 ②관광객의 자연환경 훼손 여부	
	관광 시설	조명/전기	①낙후 조명 여부 ②부가시설을 요하는 곳의 여부
		편의시설	①낙후 시설 여부 ②청결도 ③부가시설을 요하는 곳의 여부
		홍보시설	①관리상태 ②위험요소 여부
		안내시설	①위치의 적절성 ②관리상태 ③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여부 ④부설안내판 위치의 적절성

관 리 체 계	조직	①유산 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충분성 ②통합 위원회의 계약 준수 여부 ③시민단체와의 상호작용 여부
	관련 법·계획	①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또는 개정 법규 여부 ②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 여부
	재해방지대책 및 환경적 관리체계	①폐기물처리 및 환경오염 요인 물질에 대한 검사 여부 ②화장실/쓰레기통 위치의 적절성 ③재해에 대한 대책 여부 ④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 여부 ⑤재난 및 재해에 대한 준비활동 여부 ⑥CCTV 및 소화전이 필요한 장소 ⑦노후되거나 결함이 있는 소방시설 여부 ⑧홍수 및 화재경험
	재정	①지출계획을 감안한 예산의 적정성
	홍보	①웹사이트 관리 여부 및 관련 자료 제공의 편의성 ②홍보책자 내용의 적절성 ③외국인을 위한 홍보책자/웹사이트 여부

자료: Republic of Korea(2015), Nomination of Baekje Historic Areas.

## 나. 운영지침에서의 모니터링

- 세계유산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1983년 처음 제기된 이후, 1994~1996년에는 등재유산 보존 상태의 모니터와 유산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권고 및 유산의 보존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조항이 「운영지침」에 추가됨. 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방안의 중요한 수단인 모니터링은 현재 운영지침 (IV)세계유산의 보존상태 모니터링 과정과 (V)세계유산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에 근거하여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음

<표 4-24> 보호 및 관리체계 변화에서의 모니터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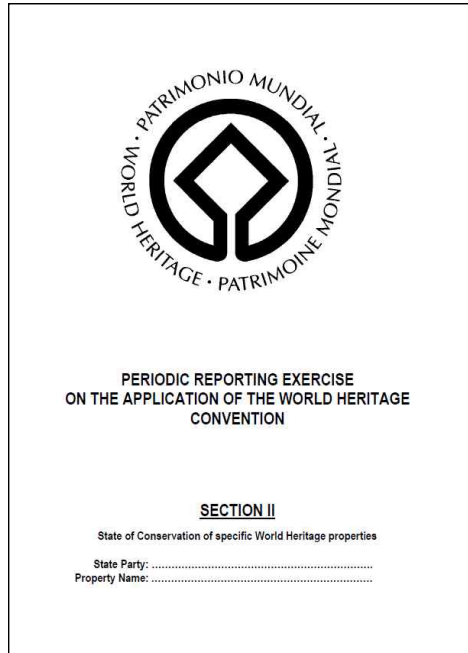
연도	모니터링 측면
1983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
1994	등재유산 보존 상태의 모니터와 유산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에 지역주민의 참여 권고
1994~1996	체계적 모니터링, 반응적 모니터링 조항 추가
1997	등재 후보 추천 형식, 내용 강화: 유산의 관리, 유산에 미칠 영향, 모니터링 추가
1998~2002	대응모니터링과 정기모니터링 조항의 보완
2005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 유적 관리자, 해당 지방 및 정부,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장을 협약국가들에게 권고

자료: 정주연(2014),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지리적인 관점에서 상시모니터링 일반지표의 분석과 적용

## 1) 정기보고 (Periodic Reporting)

## 가) 개요

- 세계유산협약에는 “협약국은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그 외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 및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한 정보를 보고(협약 제29조)”하도록 되어 있음
- 정기보고는 6년을 주기로 5개 지역<sup>47)</sup>을 돌아가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여부와 유산 및 주변 환경 피해 여부,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따른 문제점 등 협약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임
- 정기보고의 목적은 ① 각 협약국의 협약 이행 정도 평가 ②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세계유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 ③ 세계유산의 변화하는 환경과 보존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최신 정보 제공 여부 ④ 협약의 이행 및 세계유산보존과 관련하여 지역협력과 협약국 간의 정보 및 경험 교환체계 구축임
- 협약 이행의 신뢰성 강화 뿐 아니라 세계유산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기보고는 2000년부터 아랍지역을 시작으로 1차 정기보고를 개시, 2006년까지 1차 정기보고를 마쳤으며, 2차 정기보고는 2008년 아랍, 2009년 아프리카,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2년 중남미 지역, 2014·2015년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유산에 대해 진행됨



[그림 4-9] 정기보고서 Section 2

47) 5개 지역은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태평양, 유럽과 북미,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나뉜다.

- 정기보고서는 두 부분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Section 1은 국제협력과 자금조달, 교육과 정보·홍보 등과 같은 유산과 관련된 국가의 일반 정책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세계유산 협약 조항 이행에 관한 국가 단위의 평가이며
- Section 2는 해당국에 위치한 세계유산의 보존상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문화재의 세계유산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부가적으로, 협약국은 문화재와 모니터링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리에 관해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됨

<표 4-25> 정기보고서의 구성 및 포함 내용

SECTION I: APPLIC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BY THE STATE PARTY	SECTION II: STATE OF CONSERVATION OF SPECIFIC WORLD HERITAGE PROPERTIES
<b>I.1. Introduction</b> a. State Party b. Year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of the Convention c. Organization(s) or entity(ie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d. Date of the report e. Signature on behalf of State Party <b>I.2. Identific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roperties</b> a. National inventories b. Tentative List c. Nominations <b>I.3.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b> a. General policy development b. Status of services for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c. Scientific and technical studies and research d. Measures for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b>II.1 Introduction</b> a. State Party b. Name of World Heritage property c. Geographical coordinates to the nearest second d. Date of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e. Organization(s) or entity(ie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f. Date of report g. Signature on behalf of State Party <b>II.2. Statement of significance</b> <b>II.3. Statement of authenticity/integrity</b> <b>II.4. Management</b> <b>II.5. Factors affecting the property</b> <b>II.6. Monitoring</b> <b>II.7. Conclusions and recommended action</b> a. Main conclusions regarding the state of the World Heritage values of the property (see items II.2. and II.3. above)



e. Training <b>I.4.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und raising</b> <b>I.5. Education, information and awareness building</b> <b>I.6. Conclusions and recommended action</b> a. Main conclusions b. Proposed future action(s) c. Responsible implementing agency(ies) d. Timeframe for implementation e. Need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b. Main conclus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factors affecting the property (see Items II.4 and II.5. above) c. Proposed future action/actions d. Responsible implementing agency/agencies e. Timeframe for implementation f. Need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	---

#### 나) 정기보고에서의 모니터링 방법

- 정기보고의 ‘II.6 모니터링’ 항목에서는 각 협약국에 7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서술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다 자세한 유산의 보존 상태를 측정함
- 모니터링 항목의 세부 사항으로는
  - 유산에 대한 이전의 정기 혹은 대응 모니터링 경험(일시, 결과, 세부 지표를 포함)
  - 해당 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모니터링 체계 여부 및 관련 사항
  - 공식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계획 여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기능과 측정에 사용될 주요 지표
  - 유산의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수립 여부 및 현재까지 수립/사용된 지표에 대한 설명 혹은 추후 사용될 주요 지표에 대한 설명
  - 정기 모니터링에 포함된 혹은 포함될 협력체에 대한 설명 및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 조항
  - 당사국이 고려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개선점
  - 세계유산위원회 및 관련 사무국이 당사국에 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 2) 대응 모니터링 (Reactive Monitoring)

- 유네스코는 전쟁이나 무분별한 개발,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으로 파괴될 위험이 있는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하는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되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대응 모니터링이란 위험에 처한 개별 세계유산의 보존 실태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세계유산센터와 유네스코의 다른 부문 및 자문기구 등이 의장단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
- 정기보고와 별개로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유산의 OUV,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위협·훼손 여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대응모니터링 보고서는 크게 대응모니터링 임무(mission)에 대한 배경 설명, 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주요 쟁점 사항, 이전 대응모니터링에 대한 당사국의 평가, 결론 및 권고 등으로 나뉨
- 대응 모니터링의 결과에 의해 해당 유산의 보존상태가 개선되면 목록에서 해제하고, 반대로 세계유산 목록에서의 삭제로 이어질 수 있음. 삭제조치는 해당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되도록 한 특성을 잃을 정도까지 훼손된 경우, 그리고 세계유산 신청 시에 이미 인간 활동에 의해 유산의 고유한 특성이 위협 받았으나 제시된 시간 내에 필요한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 모니터링 과정에서 세계유산에 영향을 줄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수정된 경우도 있고, 관리체계가 크게 강화된 경우와 같이 대응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 상태가 크게 개선된 사례들이 있기에 대응 모니터링이 갖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는 크게 임무(mission)에 대한 배경설명, 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대응 모니터링에 의한 주요 쟁점 사항, 유산 보존과 관련된 당사국의 평가, 결론 및 권고 등으로 구성됨

가) 필리핀 코르디레라스 다랭이 논(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s Cordilleras)

-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코르디레라스의 이푸가오 주(州)는 원주민인 이푸가오족이 2천년 이상 계단식 벼농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으로, 해발 1,000~1,500m 고지에 형성된 대규모 계단식 논이며, 논둑을 모두 이으면 그 길이가 자그마치 지구 반 바퀴에 해당하는 22,400km에 달함
-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계단식 논은 독특한 경관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런 관심과 유명세가 논둑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2001년에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음
- 유네스코 필리핀위원회 위원이자 마닐라 피티대학 건축대학장인 조이슬린 메낭가야 교수에 의하면, 본 유산은 “더 나은 생활방식에 대한 열망과 필요”에 압박을 받아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경관이 훼손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에 전래하는 고유의 전통이나 무형유산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위험유산에 등재된 것임
- '계단식 논 구하기 운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직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농산품 판로를 개척하고, 각종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12년 위험유산 목록에서 해제됨

나) 바티르-남부 예루살렘 올리브와 포도밭 문화경관(Land of Olives and Vines - 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Jerusalem, Battir)

- 고원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바티르는 포도밭과 올리브밭으로 유명한 마을로, 이곳에는 2000여 년 전 고대 로마시대에 조성된 계단식 밭과 관개수로가 남아 있으며, 지역민들은 지금도 이 수로로 물을 끌어다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짓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역에 7.6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그 위에 철조망을 얹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분리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국제연합(UN)도 이런 분리장벽이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나, 이스라엘은 팔레스

타인의 테러를 막겠다며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경계를 따라 곳곳에 장벽을 짓고 있음

- 바티르에 장벽이 세워지면 오랜 역사를 지닌 관개시설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2014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는 팔레스타인의 긴급 등재 요청을 받아들여 바티르 마을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함
- 유네스코는 긴급 등재 요청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분리장벽 건설로 마을 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경작해 오던 주변 농경지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으며, “바티르 마을의 풍경은 사회문화적, 지정학적 변형의 충격으로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 건설되면 바티르 마을의 아름다운 계단식 밭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제6절 천연기념물 제도

### 1. 개요

#### 가. 천연기념물의 정의 및 지정기준

-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국가문화재로 동물·식물·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자연현상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일컬으며, 천연기념물에서 보호하는 동물은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식물에 대해서는 자생지까지 포함한 개념임
- 문화재청(2003)의 「천연기념물백서」에는 천연기념물을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지정됨. 지정 절차는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전문위원에게 해당 문화재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 지정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지정예고를 한 후 최종 결정됨
-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르며, 식물분야의 지정기준은 [표 7]과 같음

#### <표 4-26> 천연기념물 식물분야 지정기준

- 
-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 다. 문화·민속·관광·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

### 나. 천연기념물의 지정 현황

-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3,622건이며, 이중 천연기념물은 455건임.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에서 식물분야는 전체 455건 중 2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동물이 101건, 지질 82건, 천연보호구역 11건 순으로 지정됨
- 식물분야는 크게 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그리고 자생지·분포한계지로 나뉘며, 이 중 농업유산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수림지는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을 비롯하여 현재 총 24건이 지정되어 있음

<표 4-27> 천연기념물 식물분야 지정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소계
노거수	11	3		6	1	1	1	1	11	14	18	41	56	5	169
수림지	-	1					2				1	11	2	7	24
마을숲		1								2		8	12		23
희귀식물											6	5	3	5	19
자생·분포한계지			1	1					1	3	8	8	4	26	

자료: 문화재청(2016),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 다. 수림지 지정 현황

- 수림지의 경우, 총 24개소 중에서 전남지역이 9개소로 가장 많으며, 제주지역이 7개소, 울산, 전북, 경북이 각각 2개소, 부산과 충남이 각각 1개소가 지정되었음
- 천연기념물 수림지는 숲 형태로 지정되어 있으며, 희귀성, 유용성, 지역성, 학술성 등 학술적 가치에 의해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나 옛날부터 특별한 목적이나 특정 용도를 위해 일부러 조성한 것도 있으며(문화재청, 2003),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으로 간주됨

&lt;표 4-28&gt; 지역별 수림지 지정 목록

지역	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부산	176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2-1
울산	65	울주 목도 상록수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462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가지산 일원
충남	136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전북	184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
	463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
전남	28	완도 주도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107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33
	151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
	172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산191
	239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700
	241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27-1
	362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산1
	483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산151
	489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경북	189	울릉 성인봉 원시림
371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제주	374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375	제주 납읍리 난대림	제주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57-1
	376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377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946
	378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379	제주 천지연 난대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73
	517	제주 물장오리 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38 등

## 2. 천연기념물(식물) 수림지 관리의 기본방향

### 가. 천연기념물 관련 법규 내 관리 체계

- 천연기념물은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재의 한 종류이며 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에서 지정문화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해당됨(최송현, 2012)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관리자는 그에 대한 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이를 근거로 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에는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일반적인 정기조사의 주기는 3년이며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고,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여 문화재훈령 제392호인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이하 ‘정기조사 지침’)」이 제정·시행됨
- 「정기조사 지침」의 제3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중 식물의 경우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하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정기조사 대상 문화재
  - 조사내용 : 문화재 유형별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
  -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
  - 계절, 조사환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
  - 직전 정기조사 결과 보수 등 조치 현황
  -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제5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 지침」에서 주어진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함. 천연기념물 식물분야의 경우, 정기조사서가 크게 총괄사항, 보존사항, 관리사항, 현황사진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의 세부사항은 모니터링의 지표가 됨(별첨 2 참조)



&lt;표 4-29&gt;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의 정기조사 구성내용

구분	보존사항	관리사항
세부 사항	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생육실태(개체수, 증감량, 병충해, 수형 및 활력도 등), 훼손·변형, 오염, 불법행위 방지활동, 보수정비모니터링 등	소방 및 안전관리, 방문객 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주변 및 부대시설

#### 나.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지침의 관리 체계

- 천연기념물 중 식물은 문화재청 훈령 제377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이하 ‘상시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됨. 「상시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르면, 상시관리란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관리행위를 말하며,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됨. 제6조에는 상시관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처방안 제시
  - 모니터링 후 처방결과를 토대로 공중벌,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 처방 및 유지관리 수행
  - 전문 인력풀을 활용, 상시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평가 시행
- 문화재청(2011)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중 수림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림지 조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밀화, 수림지 이용에 따른 훼손, 침입종에 따른 생태교란 등으로, 특히 타 수종이 침입하고 경쟁력 강한 종들이 수림지 내외에 출현하면서 수림지의 특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함. 관리가 소홀할 경우 지정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식물의 사전예방적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방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4-30> 상시관리 기본 방향 및 수행 방안

구 분	내 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관리 범위 제시</li> <li>·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되며, 특성별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수행방안을 제시</li> <li>· 관리수행 방안에 따른 체계적 보존관리 원칙 제시</li> </ul>
수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및 처방: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수행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처방전 제시</li> <li>· 처치 및 유지관리: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 선정</li> <li>· 사후평가: 전문 인력풀 활용, 상시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 식물의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li> </ul>

### 3. 모니터링 방법

- 천연기념물 중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기조사 지침」의 제2장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됨.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에는 모니터링 횟수 및 관련 전문가 자격이 제시되어 있음
  -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를 기본으로 하고,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 문화재 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
  
- 모니터링의 유형은 「정기조사 지침」 제8조에 근거하여 정기조사와 간이조사로 구분되며, 각 조사유형에서 수립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정기조사: 수립지의 경우, 방형구를 선정하여 연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을 조사

- 방형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m×10m로 하며, 1ha 미만 1개소, 1~3ha 2개소, 3ha 이상은 3개소로 함. 다만 면적이 적은 곳은 전체를 하거나 적정 크기로 나눔
  - 방형구는 해당 수립지의 현황과 특성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하며 방형구 각 꼭지점과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파이프, 말뚝, 페인트, 비닐끈 등으로 경계를 표시함
  - 간이조사: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천연기념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을 유지함
- 「정기조사 지침」 제9조에 따라 수립지의 모니터링 시, 주요수종의 치수조사, 매목조사, 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 조사, 수목활력도 조사, 병충해 피해현황, 초본류 및 지장식물 조사, 토양조사,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함
- 이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처방전을 제시하고, 이를 처방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함
- 모니터링 기록은 지침에 주어진 대장에 기록하고, 사진 등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함(별첨 3 참조). 간이조사의 경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7호) 제6조에 제시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별첨 4 참조)

<표 4-31> 세계유산 신청서 중 4~6번 항목 세부 내용

신청 서식	설명문
4. 보존 상태 및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a 현재의 보존 상태	<p><b>본 항에 기재되는 정보는 향후 신청 대상물 보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b> 본 항에서는 대상물의 물리적 상태와 대상물에 대한 위협, 대상물의 보존 대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제132항 참조).</p> <p>예컨대 역사적인 읍락이나 지역인 경우, 크고 작은 보수작업이 필요한 건조물, 기념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기술하고, 아울러 최근에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주요 보수 공사의 규모 및 소요기간도 적시해야 한다.</p> <p>자연유산인 경우 종의 변화 추이나 생태계의 완전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 문건이 후일 해당 대상물의 상태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는 중요성을 띤다.</p> <p>대상물의 보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표 및 통계 수준 지표(基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제6항을 참조하도록 한다.</p>
4b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본 항에서는 대상물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을 가할 성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고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항에 제시된 요인 전부가 모든 대상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본 항에 제시된 요인은 암시적이며 해당 계약국이 각 특정한 대상물과 관련된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서술된다.</p>
(i) 개발 압력 (예: 침해, 개조, 농경, 채광)	<p>신청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압력의 유형에 관해 항목 별로 기술하라.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철거, 재건축 또는 신축 압력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훼손시킬 새로운 용도를 위한 현존 건축물의 개조 농경, 임업, 목축으로 인한 침해, 또는 무분별한 관광이나 다른 용도로 인한 서식지의 변형이나 파괴 부적절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남용 채광이 야기한 손상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 성 있는 외래종의 유입 대상물이나 주위 환경을 훼손할 목적으로 대상물 소재 현장 및 그 인근지대에 새로운 중심 주거지의 조성.</p>
(ii) 환경적 압력 (예: 오염, 기후 변화, 사막화 현상)	<p>건조물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을 기술, 요약한다.</p>
(iii) 자연 재해 및 재난 대비 (지진, 홍수, 화재 등)	<p>신청 대상물에 예측 가능한 피해를 가하는 재해 및 그 대책으로서 비상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항목별로 기술한다. 그 조치가 물리적 보호대책이든 인력 훈련이든 상관없다.</p>
(iv) 방문객/관광산업의 압력	<p>신청 대상물의 '수용능력'에 대해 기술한다. 해당 대상물은 부작용 없이 현재 규모 또는 예상 규모 수준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방문객 및 관광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해야</p>

	한다. 방문객 압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훼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암석, 목재, 풀이나 다른 지표면의 마모 열이나 습기의 증가 등 서식지의 교란 전통 문화나 생활방식의 교란.
(v) 신청 대상물과 완충지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 해당 지역의 거주 인구 수 (추정치): 신청 대상물의 면적: 완충지대 합계 연도	신청 대상물 소재 현장 및 완충지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관해 최대한 정확한 통계수치 또는 추정치를 기재하라. 본 추정치나 통계수치가 산출된 연도를 명시하라.
5. 대상물의 보호 및 관리	본 항은 법률, 규제, 계약, 계획, 제도 상의 대책 및/또는 전통적 대책(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32항 참조)과 「세계유산협약」의 규정 대로 대상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관리 계획이나 기타 관리 체계(세계유산가이드라인의 일부 항 참조)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정책적 측면, 법적 지위와 보호대책, 그리고 일상적 관리와 운영의 실용성을 다루도록 한다.
5.a 소유권	해당 부지 소유권의 주요 범주에 대해 기술한다.(소재 주, 도, 개인, 지역사회의 소유권, 전통적, 관습적 소유권, 비정부 주체의 소유권 등 포함).
5.b 보호 지정	신청 대상물의 관련 법률, 규제, 계약, 계획, 제도 상의 위상 및 또는 전통적 위상에 관해 기재한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립 공원이나 주립 공원 역사적 기념물,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에 의거한 보호지역 기타 지정 내역. 해당 위상이 부여되는 증거 법령 및 지정연도를 명시한다. 본 문건을 영어나 불어로 작성,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핵심 조항에 중점을 둔 개요를 영어나 불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c 보호대책의 시행 수단	제 5.b항에 기재한 법률, 규제, 계약, 계획, 제도 상의 위상 및 또는 전통적 위상이 실제로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5.d 신청 대상물이 소재한 시 및 지역과 관련된 현존 계획 (예: 광역 또는 구역 계획, 보존 계획, 관광 개발 계획)	합의를 통해 채택된 계획에 대해 기술하되 준비 일자 및 준비 담당 기관을 함께 명시하라. 관련 조항에 대한 요약도 본 항에 기술한다. 제 7.b항에 명시한 대로 첨부 문건으로서 해당 계획의 사본을 포함 시키도록 한다. 상기 계획이 영어나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핵심 조항에 중점을 둔 개요를 영어나 불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5.e 대상물 관리 계획 또는 기타 관리 체계	세계유산가이드라인 제132항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관리 계획이나 여타 관리체계는 중요하므로 신청 문건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관리 계획 또는 여타 관리 체계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보장 역시

	<p>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한다.</p> <p>관리 계획의 사본이나 관리 체계에 관한 기록은 제 7.b항에 명시된 대로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 신청 문건에 첨부하도록 한다.</p> <p>관리 계획이 영어나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내용에 관한 세부 설명을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 첨부하도록 한다. 본 신청 문건에 첨부하는 관리 계획의 경우 제목, 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명시한다.</p> <p>관리 계획에 관한 세부 분석이나 설명 또는 관리 체계에 관한 기록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p>												
<p>5.h 방문객용 시설 및 통계 수치</p>	<p>본 항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관광객 수나 패턴의 통계수치 또는 추정치뿐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현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탐방로, 안내원, 통지나 출판물에 의한 해설/설명 해당 유산 박물관, 방문객 센터나 해설 센터 야간 숙박시설 식당이나 휴게시설 상점, 주차시설 화장실, 수색 및 구조 등.</p>												
<p>5.i 대상물의 소개 및 홍보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p>	<p>본 항은 미래 세대에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소개 및 전승에 관해 명시한 「세계유산협약」의 제4조 및 5조와 연관된다. 체약국은 신청 대상물의 소개 및 홍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권고한다.</p>												
<p>5.j <u>전담인력의 수준</u> (전문, 기술, 유지관리)</p>	<p>신청 대상물 소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 및 훈련에 대해 기술한다.</p>												
<p>6. 모니터링</p>	<p>본 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추이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 대상물의 보존상태를 대변할 증거를 명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정기적인 평가, 보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p>												
<p>6.a 보존상태의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p>	<p>신청 대상물 전체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주요 지표에 관한 내용을 표 형식으로 기재한다(상기 제 4.a항 참조). 이러한 지표 평가의 정기성 및 해당 기록의 보관 장소에 대해 명시한다. 이들 자료는 대상물의 중요한 측면을 대변해 주는 한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제시' 항목과 가능한 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제 2.b항 참조). 가능하면 이들 자료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지점으로부터 사진을 찍는 행위처럼 반복 가능한 종류에 속할 수 있다. 우수한 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467 1387 1225 1570"> <thead> <tr> <th>지표</th> <th>정기성(定期性)</th> <th>기록 보관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i) 자연유산인 경우 해당 종들의 수, 또는 주요 종의 개체군의 수                  (ii) 역사적 도시나 지구에 소재하며, 대대적 보수를 요하는 건축물의 비율</p>	지표	정기성(定期性)	기록 보관 장소									
지표	정기성(定期性)	기록 보관 장소											

	(iii) 주요 보존 프로그램의 완료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연수(年數) (iv) 특정 건조물이나 건물의 구성요소에 있어 안정성 또는 이동의 정도 (v) 신청 대상물에 대한 침해행위의 증가 또는 감소 속도.
6.b 대상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 조치	제 6.a항에 언급된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를 기재한다.
6.c 선행 보고 활동의 결과물	간략한 개요와 함께 해당 대상물의 보존상태에 대한 선행 보고 내용을 기재하는 한편 출판물의 출처 및 초록을 기술하도록 한다(예: 랍사(Ramsar)나 MAB와 같이 국제협정 및 프로그램에 준거하여 제출되는 보고서).

<표 4-32>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 1 총괄사항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유형)	당해 문화재의 명칭 (문화재 종류 ~ 제1호) (노거수, 수림지, 자생지)		지정면적m <sup>2</sup> (보호구역 m <sup>2</sup> )	100,000m <sup>2</sup> (100,000m <sup>2</sup> )
지정연월일	년. ~ 월. ~ 일.		소유자	소유자명 ~ / ~ 소유자 주소 문화재청 ~ / ~ 대전광역시 ~ 서구 ~ 청사로
소재지	당해 문화재 지정 주소 대전광역시 ~ 서구 ~ 청사로		관리자/관 리단체	관리자명(관리단체명) ~ / ~ 주소 문화재청 ~ / ~ 대전광역시 ~ 서구 ~ 청사로
구분	시행연도	예산( 천원)	시행 처	정비 · 보수 · 관리 내용
정비 보수 관리 내역		국비, 지방비		최근 5년간 정비 · 보수 · 관리 내용을 기입
조사 결과	구분	조사 내용		
	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생육실태			
	훼손 · 변형			
	오염			
	불법행위 방지활동			
	특기사항	소방 및 안전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주변 및 부대시설 등 관리에 관련된 특기사항을 기입한다.		
조사자 종합의견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을 기입한다.			
조사일시	년. ~ 월. ~ 일.	조사 자	소속명 ~ 소속	성명 : ~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현황 사진(개체서식범위, 상세사진 포함) ·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 표 계속

## 2 보 존 사 항

자연환경	구분	조사내용					
	지질·지형						
	주위환경						
	접근성						
	수계환경 주요식생						
문화재 구역관리	구분	조사내용					
	통제구역						
	토지이용						
	방해요인						
	주변환경 (인위적요소)						
생육 실태	개체수	종명	수량 (그루, 포기)	내용		특기사항	
		팽나무	1	수령불명, 흉고둘레 : 3.14m, 수고 : 19m			
	증감	종명	수량 (그루, 포기)	내용		특기사항	
		팽나무	.	변화 없음			
				증감의 원인 등 증감과 관련된 내용을 기입한다.			
	병충해	구분	부위	정도	내용		특기사항
		식물탄저병	잎	심함	일부 잎에 분생포자가 발견		치료 중
	수형 및 활력 도	부위		정도	내용		특기사항
		해당 부위		심함	벗겨짐/하부 10cm가량/외력에 의한 결손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 대상 개체의 결손에 대해 기입한다.</li> <li>• 결손부위_①굵은 가지, ②잔가지, ③수관, ④줄기, ⑤뿌리</li> <li>• 내용은 개체의 상태에 대해서 기입한다. 상태_①부러짐, ②휘어짐, ③공동, ④벗겨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 위 내용 외 당해 문화재에 대해 기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한다. 예시) **위치에서 발견되어 현재 장소로 이동</li> </ul>						
훼손·변형	요인	내용			조사자 의견		
오염	구분	내용			조사자 의견		
	쓰레기	과도에 밀려온 쓰레기 다수 발견					
불법행위 방지활동	활동명	관리 단체	목적	조사자 의견			
보수정비 모니터링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에 따른 상시관리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관련 내용을 기입한다.						
특기사항							

표 계속

### 3 관 리 사 항

소방 및 안전관리	구분	점검사항 및 내용	
	소방시설	<input type="checkbox"/> 방재매뉴얼(소방시설도면 등) 배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특기 사항	소방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상태 및 사항들을 조사하여 기입한다.
그 밖의 시설	특기 사항		
방문객 관리	<input type="checkbox"/> 방문객 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구분	조사내용	
	방문객 관리실태		
안내 및 전시시설	구분	현황(종류 및 수량)	조사내용
	보호·관람		
	안내·경고		
	그 밖의 시설		
주변 및 부대시설	구분	조사내용	
	배수시설		
	보호책 및 보호시설		
	안내판		
	지주		
	줄당김		
	그 밖의 시설		

&lt;표 4-33&gt; 천연기념물 수립지 정기조사 대장

NO.	조사일	년 월 일(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요 수종	평균규격			생육상태								
교 목 . 아교목	수종	규격별 수량(흉고직경cm)										
		3~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이상	계
	계											
주요 수종 치수	수종	구역				피도	층위	우점종	피도			
		A	B	C	D				상	중	하	
							교목층 (>8m)					
							아교목층 (2~8m)					
							관목층 (0.8~2m)					
					초본층 (<0.8m)							
관목류	개체수			초본	상태			지장 식물	상태			
	다수 (>30개)	보통 (29~10)	희귀 (<9)		다수 (>100개)	보통 (99~30)	희귀 (<29)		다수 (>10개)	보통 (9~5)	희귀 (<5)	
주요수목 생육상태	수종	신초 길이	잎 수량	잎 길이	병해충	병해충명	상태					
							심	중	경			
토양 건습도	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비고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표 4-34> 천연기념물 수립지 간이조사 대장

NO.	조사일	년 월 일(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자
1.식물	잎의 색깔 (전체 조망에서)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흐릿함 <input type="checkbox"/> 색깔이 약간 변함			
	줄기.가지 부러짐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부러짐 -줄기( )그루, -가지 ( )개			
	병 해 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장식물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퀴 등 덩굴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			
2.지반	배수문제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물고임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반변형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침하 <input type="checkbox"/> 처리방안( )			
3.부대시설	보호책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문화재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시설물				
4.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공사			
	기타				
5.특기사항					
6.종합의견 및 대책					

&lt;표 4-35&gt; 문화재청 훈령 제347호 제6조의 천연기념물 점검표

NO.	조사일	년 월 일(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소재지				
1. 기본조사	크 기	<input type="checkbox"/> 수고(    m) <input type="checkbox"/> 흉고직경(    cm) <input type="checkbox"/> 근원직경(    cm)		
		<input type="checkbox"/> 수관 폭 : 동-서(    m) 남-북(    m)		
	신초 길이	<input type="checkbox"/> 동쪽(    cm) <input type="checkbox"/> 서쪽(    cm) <input type="checkbox"/> 남쪽(    cm) <input type="checkbox"/> 북쪽(    cm)		
	잎의 상태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변색 <input type="checkbox"/> 시들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간부 상처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수피탈락 <input type="checkbox"/> 갈라짐(틈) <input type="checkbox"/> 진액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지 부러짐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큰가지(    )개 <input type="checkbox"/> 작은가지(    )개		
	수세활력도	<input type="checkbox"/> (    kΩ)		
	병 충 태	의심 병해증명	발생정도	대 객
			심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경 <input type="checkbox"/>	
			심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경 <input type="checkbox"/>	
지지시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가지이탈 <input type="checkbox"/> 쓰러짐			
쇠조임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분해 및 이탈			
2. 지표조사	지표 상태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복토·담압 <input type="checkbox"/> 물고임 <input type="checkbox"/> 기타(    )		
	토양산성도	<input type="checkbox"/> PH(    )		
	토양건습도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약건 <input type="checkbox"/> 적윤 <input type="checkbox"/> 약습 <input type="checkbox"/> 습		
3. 주변환경	보호책(웬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문화계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변공사 사항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공사		
	기타			
4. 특기사항				
5. 종합의견 및 대책				
			입회자 :                    (인)	



## 제 5 장

# 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개발

제1절 모니터링 지표 개발방향

제2절 모니터링 예비지표 도출

제3절 예비모니터링 지표의 검증





## 제5장 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개발

### 제1절 모니터링 지표 개발방향

#### 1. 기본방향

-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나 사업, 정책 등에 대한 과정평가의 하나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사업이나 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사업추진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개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계획은 국비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써 국가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지표를 개발
-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 지정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보존되고, 활용되는가의 정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모니터링 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문화재 등의 보존(Preservation)위주의 제도와 달리, 활용, 지도, 합의를 통한 넓은 의미의 보전(Conservation), 그리고 능률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성, 정체성 확보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함
  -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통합적 관리단계(준비→지정 및 기본계획수립→실천단계)에 따른 모니터링 요소에 맞춰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1)운영체계 관련 지표, 2)보전(유산의 가치)관련 지표, 3)활용(효과) 관련 지표로 3가지 분야로 구축
  - 셋째, 농업유산 전체에 해당하는 공통 모니터링 지표와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별로 특수사항을 반영한 자율지표로 구성

## 2. 예비지표 개발과정

- 예비지표 개발과정은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됨
  - 1단계: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사업목표와 농업유산개념을 검토하여 운영체계, 보전, 활용 측면으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농업유산별로 특수사항을 반영
  - 2단계: 국내외 관련사례(일본과 중국의 농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연기념물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기준,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서를 검토하여 예비모니터링 지표를 도출
  - 3단계: 도출된 예비지표를 2차에 걸쳐 검증하여 최종지표를 선정. 1) 1차 검증시 목표달성 가능성(Attainable), 측정가능성(Measurable), 신뢰성(Reliable)을 기준으로 최종지표를 선정 하며, 2) 2차 검증시 준비→지정 및 기본계획수립→실천단계에 맞춰 최종 지표를 배분
  - 4단계: 최종 모니터링 지표 및 방법을 바탕으로 보전관리방안을 수립

### 가. 1단계: 지표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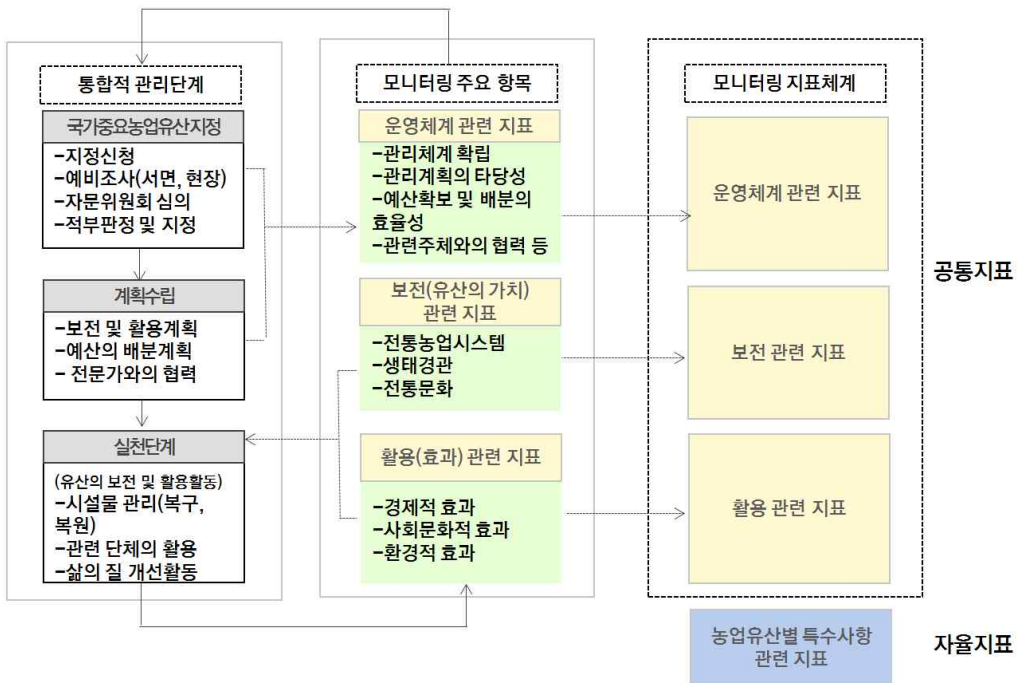
- 모니터링의 내용에는 ①운영체계(행정) 관련 내용, ②농업유산의 보전, ③농업유산의 활용에 관한 것 등으로 크게 3가지<sup>48)</sup>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구축
  - 농업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운영체계는 주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모든 유산지역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항목으로 구성
  -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련된 지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이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전통농업시스템, 생태경관 등이

---

48) 2장 참조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며, 나아가 복원, 복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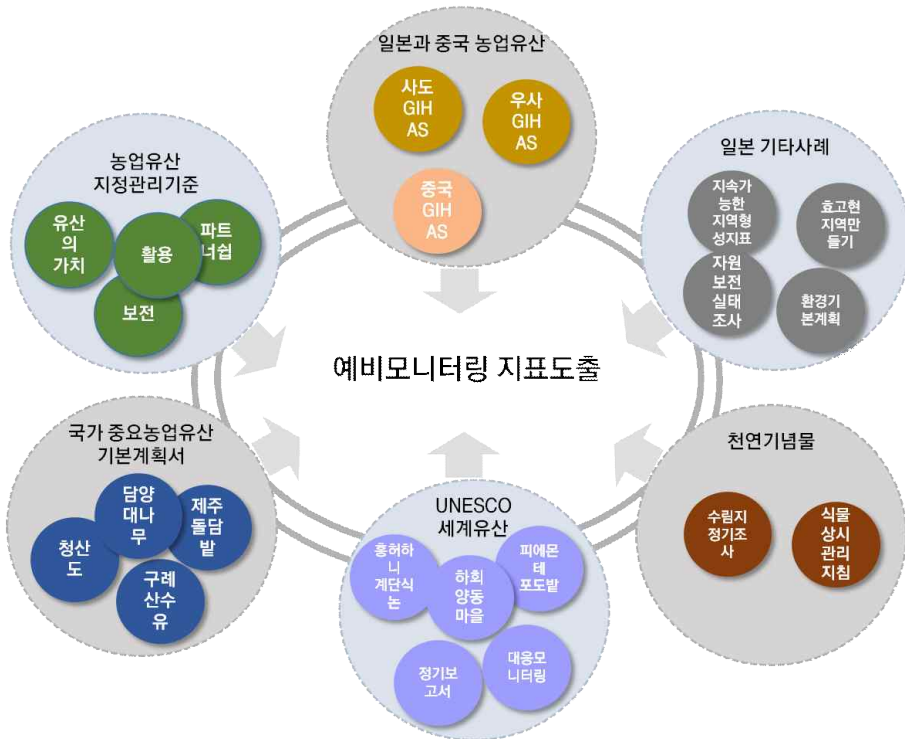
- 농업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지표는 크게 농업유산의 경제적 효과 (소득 및 고용창출, 관광활성화), 사회문화적 효과(공동체 활성화, 다원적 활용사업, 홍보), 환경적 효과(생활환경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특히 경제적 효과에서는 관광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인하여 고용 및 소득변화 등의 요소가, 사회·문화적 효과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다원적 활용사업, 홍보 등, 환경적 효과에서는 생활환경개선 등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별로 그 특수성을 반영하고 각각의 기본 계획서상에 수록된 모니터링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율지표를 따로 구성



[그림 5-1] 모니터링 지표개발의 지표체계 구축과정

### 나. 2단계: 예비모니터링 지표 도출

-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예비모니터링 지표 도출
  -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
  -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서
  - 일본의 농업유산 모니터링 사례
  - 중국의 농업유산 모니터링 사례
  - 일본의 기타 관련 사례
  -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례
  - 천연기념물 사례



[그림 5-2] 예비모니터링지표 도출과정

### 다. 3단계: 예비모니터링 지표 검증

- 도출된 예비 모니터링 지표는 지표검증과 관련된 선행연구,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검증방법을 개발하여 2차에 걸쳐 진행함

- 1차 검증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최종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함
  - 목표달성 가능성(Attainable): 해당 농업유산별로 그 특성에 맞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
  - 측정가능성(Measurable): 적은 비용으로 측정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모니터링 수행자 또는 피수행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쉬운지를 먼저 평가하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문,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수집생산가능한지를 판단
  - 신뢰성(Reliable): 모니터링지표의 데이터가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가를 판단하며, 특히 설문 등을 통해 수집생산할 때에는 신뢰도를 고려함
- 2차 검증시에는 최종 선정된 모니터링 지표를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농업유산 지정 단계별로 배분
  - 준비(주민협의체 구성, 신청서 작성)-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서 작성,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검토)-실천(관리 및 활용, 지자체 장, 주민협의체 등이 주체) 단계별로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여, 향후 관리기법 개발에 반영

#### 라. 4단계: 보전관리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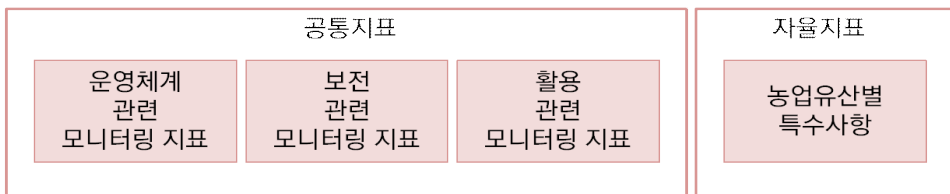
-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와 방법을 바탕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정립
- 농업유산 3가지 유형별(전통농업, 생태경관, 전통문화)로 지표구성안 등을 제안



[그림 5-3] 모니터링 지표개발 과정

## 제2절 모니터링 예비지표 도출

-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국내외 관련사례, 농업유산 선정지역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등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예비지표를 선정
  - 국내외 관련사례의 경우 일본과 중국의 농업유산 모니터링 사례, 일본의 기타사례(지속가능한 지역형성지표, 효고현 지역만들기 지표, 자원보전실태조사 지표, 환경기본계획관련 환경지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등에 관한 모니터링지표 등을 분석함
- 모니터링 지표체계에 따라 운영체계, 보전, 활용측면의 공통지표와 농업유산별 특수사항을 반영한 자율지표로 구성
  - 운영체계, 보전, 활용 측면의 공통지표는 각각의 예비지표를 도출
  - 농업유산별 특수사항은 농업유산별 기본계획서상의 모니터링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후 자율지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예시
- 최종 모니터링 지표는 ① 공통지표(운영체계, 보전, 활용) ② 자율지표(농업유산별 특수사항을 반영)로 구성
- 농업유산 유형별 지표구성은 보전관리방안 수립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안
  - 보전지표 내에 농업유산유형별 항목들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농업유산 유형별로 지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많은 농업유산들이 복합형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임



[그림 5-4] 모니터링 지표 체계

<표 5-1> 사례검토와 예비모니터링 지표 도출

구분	사례대상지	모니터링에 적용가능한 항목	비고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		유산의 가치	보전
		주민참여 및 지자체와 협력관계	운영 체계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여부	보전
		농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변화상태	보전
		보호 및 홍보시설물의 상태	보전
		기타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운영 체계
		유산의 활용사업에 대한 원칙	활용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도 구들장논</li> <li>- 제주돌담밭</li> <li>- 담양 대나무밭</li> <li>- 구례 산수유농업</li> </ul>	보전지역 또는 지구 지정	자율 지표
		보존 및 관리 주체	
		모니터링 활동 내용	
		모니터링 관련 사업	
일본 GIAHS 모니터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도지역</li> <li>- 우사지역</li> </ul>	농림수산업과 생물	보전
		자연환경	보전
		지식 및 새로운 기술	보전
		자연자원의 관리	보전
		생활, 생계, 건강	활용
중국 GIAHS 모니터링제도		농업유산시스템(생태학적 보호),	보전
		경제적 개발, 사회적 유지, 문화적 유산	활용
		관리측정(역량강화, 홍보/확산)	운영 체계
일본 기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야기현 쓰노쵸(지속가능한 지역형성지표)</li> <li>- 효고현(지역만들기 지표)</li> <li>- 농림수산성 자원보전 실태조사사업</li> <li>- 환경기본계획 환경지표</li> </ul>	농업농촌구조조사	보전
		유지보전활동	보전
		자연환경 보전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매력 유지	보전
		자연재해 대응	보전
		도농교류	활용
		농림수산물 및 지역자원 활용	활용
지속가능한 이용	활용		



## 표계속

구분	사례대상지	모니터링에 적용가능한 항목	비고
UNESCO 세계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흥어 하니 계 단신 논 문화경관</li> <li>-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li> <li>- 한국의 하회와 양동 마을</li> <li>- 필리핀 코르디레라스 다랭이 논</li> <li>- 바티르 남부 예루살렘 올리브와 포도밭 문화경관</li> </ul>	유산의 물리적 측면	보전
		환경적 측면	보전
		경관적 측면	보전
		역사문화적 측면	보전
		사회·경제적 측면	활용
		보존관리체계	운영 체계
		영향요인	활용
		지속가능한 관광	활용
천연기념물	- 수립지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구역 관리	보전
		생육실태	보전
		훼손 및 변형	보전
		보수정비	보전
	관광편의시설의 양과 질	활용	

<표 5-2> 모니터링 지표 체계

구분	대항목	중항목	세부지표
공통 지표	운영 체계	관련주체 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주민협의체 구성, 관리주체 상존여부, 지역주민 참여도, 지역단체, 소유권 변화,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 보전을 위한 인재육성
		관리체계	보전관리체계, DB구축, 모니터링 결과 환류
		관리계획수립여부	유지관리계획 수립, 보존관련 사업
		예산확보	예산확보, 보존기금 마련
	보전	도시계획	완충지역의 설정, 토지이용의 변화, 신규로 수립된 각종 계획, 주변 건축물 관리, 개발행위
		전통농업	지속적인 농업활동, 신규 농업인의 수, 농업유산 복원, 농업유산 대상지의 훼손정도, 경작포기지, 전통농법 전승교육, 전통농법 장인양성, 병충해, 직불금 대상면적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토질, 수질, 기상, 자연재해, 지형 및 지반, 생태환경 조사회수, 생태환경 조사 참가자 수, 기존의 경관보존, 내부에서의 조망, 지역적 특성 반영, 경관저해 요소, 경관보전을 위한 주민교육, 경관보전을 위한 주민활동
	활용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특성, 전통문화 전승자, 전승교육, 보전을 위한 연구, 보전관련 행사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 현상이나 내용의 왜곡, 국가 및 지역의 공동이익, 주민협의체 동의
		경제적 효과	브랜드개발, 농업관련 상품생산, 농업관련 상품 판매, 문화상품개발, 농업의 소득향상, 사회적 경제조직, 고용창출 인원, 비용/수익배분 관광객 수용능력,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체류기간, 관광객 소비증가, 농업유산과 관련된 관광기반시설 구축, 교류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의 주민참여, 축제 등 부대행사를 위한 공간확보, 관광서비스 향상에 대한 주민교육, 농가민박수, 농업유산 해설사
		사회문화적 효과	인구증감률, 순이동 인구수, 주민만족도 활용사업의 총수, 활용사업의 달성도 언론매체 홍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자율 지표	환경적 효과	생활환경개선, 안내판,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청산도 구들장논	휴경논, 통수로와 보의 유지
		제주 돌담밭	특별관리권역의 증가, 석공기술의 전승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대나무밭	전통농업 시범구역 임도개설

&lt;표 5-3&gt; 공통지표-운영체계와 관련된 모니터링 예비지표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관리주체형성	전담 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농업유산을 지정, 관리 및 활용을 전담할 행정조직 또는 인력 유무	정량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협의체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판단	정성
	관리주체 상존 여부	주민협의체, 마을조직 등 관리주체의 상존여부	정성
	지역주민 참여도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포함)의 자발적 활동내역	정성
	지역단체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단체의 수	정량
	소유권 변화	농업유산 대상지역의 법적 소유자 변화에 대해 기술	정성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행정 및 현장 관리 인력의 농업유산에 대한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회수	정량
	보전을 위한 인재육성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정성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관련 법규(조례 등) 제정	정량
		주민협의체와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 체결 여부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지도제작, 모니터링결과 등을 포함한 DB구축 여부	정성
	모니터링결과 환류	모니터링결과 피드백 반영 정도	정성
관리계획수립	유지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정성
	보존관련 사업	농업유산 보존 관련 사업수	정량
예산확보	예산확보	농업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총액	정량
	보존기금 마련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기금마련 액수	정량
도시계획	완충지역의 설정	농업유산지역 주변의 관리를 위하여 완충지역 설정 유무	정량
	토지이용의 변화	주변 토지이용의 변화	정성
	신규로 수립된 각종 계획	농업유산대상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새롭게 수립된 각종 계획(관광계획, 도시계획 등)	정성
	주변 건축물 관리	주변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용도, 색채(간판 포함) 등에 대해 기술	정성
	개발행위	농업유산 지역 반경 2km이내에서 일어난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증가추세	정량

<표 5-4> 공통지표-보전과 관련된 모니터링 예비지표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전통농업	지속적인 농업활동	전통적인 농업기술(복원가능한 것 포함)	정성
		농업유산 분포 현황(면적, 해당 마을 등)	정성
		관련 농업산출물의 양	정량
		관련 농업종사자 수	정량
	농업유산 복원	농업유산 대상지역내 복원된 면적 또는 길이의 비율	정량
	농업유산 대상지의 훼손정도	일정높이에서 정기적(1년에 1회)으로 찍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훼손된 면적 또는 길이의 비율 추산	정량
	경작포기지	농업유산 관련 농산물 경작포기지(휴경지) 면적	정량
	신규 농업인 수	귀농인 수	정량
	전통농법 전승교육	전통농법에 대한 전승교육 실시회수	정량
	전통농법 장인양성	전통농법을 전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농업인 또는 장인의 수	정량
병충해	농업유산의 특성에 따라 병충해 피해여부	정성	
직불금 대상면적	해당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직불금제도 대상면적	정량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면적에 비례하여 방형구(10m×10m)의 개수를 정하고 그 내부의 생물개체 수 및 특성을 조사	정량 정성
	토질	농업유산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 토질의 변화	정성
	수질	농업유산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수질의 변화	정성
	기상	월별 최저/최고 기온, 자연재해 등을 기록하여 그 변화를 관찰	정성
	자연재해	인접지역의 수문현황이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기술	정성
	지형 및 지반	지형이나 지반의 변형으로 배수문제 등이 없는 지 기술	정성
	생태환경 조사회수	5년간 생태환경 조사회수	정량
	생태환경 조사 참가자	생태환경 조사 참가자 수	정량

## 표계속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생태경관	기존의 경관보존	주요 경관조망점을 선정하고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경관의 변화를 정기적(1년에 1회)으로 촬영하여 경관의 변화를 관찰	정성
	내부에서의 조망	농업유산대상지역 내부에서 주요 경관조망점을 선정하고 주위 경관을 바라볼 때 경관의 변화를 정기적(1년에 1회)으로 촬영하여 관찰	정성
	지역적 특성반영	주변경관에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 지 기술	정성
	경관저해요소	농업유산대상지역 주변에 경관저해요소(건축물, 색채, 시설물 등)가 있는지 에 대해 기술	정성
	경관보전을 위한 주민교육	농업유산과 관련된 마을경관, 산림경관 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주민교육 실시 회수	정량
	경관보전을 위한 주민활동	경관보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에 대한 기록과 회수(농로, 수로 등의 경관식물식재,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 등)	정량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특성	남아있는 전통농경생활문화의 특성	정성
	전통문화 전승자	전통농경생활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농업인 또는 장인의 수	정량
	전승교육	전통농경생활문화에 대한 전승교육 실시회수	정량
	보전을 위한 연구	전통농경생활문화 관련 연구업적의 수	정량
	보전 관련 행사	전통농경생활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의 수	정량

<표 5-5> 공통지표-활용과 관련된 모니터링 예비지표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	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활용 계획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는 지 점검	정성
	현상이나 내용의 왜곡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농업유산의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형, 멸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기술	정성
	국가 및 지역의 공동이익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농업유산의 활용이 국가 및 지역의 공동이익이 되는지 점검	정성
	주민협의체 등의	농업유산 분포지역의 주민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	정량
경제적 효과	브랜드 개발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브랜드개발 여부	정성
	농업관련 상품 생산	농업유산과 관련된 2차 가공상품 생산여부	정성
	농업관련 상품 판매	농업유산과 관련된 2차 가공상품 판매점수	정량
	문화상품개발	농업유산과 관련된 문화상품 개발여부	정성
	농업외 소득향상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외 소득증가율	정량
	사회적 경제조직	농업유산 대상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개수	정량
	고용창출 인원	관련 사업을 통해 해당 마을주민들에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정량
	비용/수익배분	농업유산대상지역 인근의 참여 마을주민간의 비용 및 수익의 공정한 배분	정성
	관광객 수용능력	농업유산대상지역에 부작용 없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예상규모 수준에 대해 기술	정량
	관광객 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	정량
	관광객 체류기간	농업유산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	정량
	관광객 소비증가	농업유산지역에서 관광객이 평균 소비하는 비용	정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관광기반시설 구축	농업유산 대상지를 활용하기 위해 신규로 만들어진 안내 및 전시시설, 주변 부대시설 등의 종류와 규모	정성

## 표계속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경제적효과	농업유산관련 교류프로그램	농업유산 관련 직접적인 교류프로그램 참여자수	정량
	관광프로그램의 주민참여	관광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여부	정성
	축제 등 부대행사를 위한 공간확보	농업유산대상지역을 활용한 축제 등 부대행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 여부	정량
	관광서비스 향상에 대한 주민교육	관광서비스 향상 및 관광효과에 대한 주민교육 회수	정량
	농가민박수	체험교류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묵고 가는 농가민박의 참여농가 수 또는 숙박자수	정량
	농업유산 해설사	농업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	정량
사회문화적효과	인구증감률	전년도 대비 농업유산지역 주민등록 인구수의 증감율	정량
	순이동 인구수	농업유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순이동(총전입-총전출) 인구 수	정량
	주민만족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 주민만족도(농업유산 인지도 포함) 설문조사	정량
	기본계획서상의 활용사업의 총수	각 농업유산별 수립된 기본계획서상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총수	정량
	기본계획서상의 활용사업 달성도	각 농업유산별 수립된 기본계획서상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별 추진실적	정성
	언론매체 홍보	농업유산 대상지역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회수	정량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무 및 관리상태	정성
	정간물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농업유산 관련 정보지 갯수	정량
	홍보물	홍보물 유무, 내용, 잘못된 표기, 외국어 병기 등	정성

표계속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환경적효과	생활환경 개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로, 오수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의 정비량	정량
	안내판	안내판의 위치, 관리상태, 외국어 표기 등에 대한 점검	정성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 확충	정성
		주차장 확충(자가승용차 및 대형버스)	
		이정표 설치	
편의시설	농업유산대상지역 인근의 매점, 자판기, 화장실, 쓰레기 등의 위치와 관리상태	정성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여부	정성	

<표 5-6> 자율지표-농업유산별 특수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예비지표 예시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청산도 구들장논	휴경논	휴경논의 면적	정량
	통수로와 보의 유지	통수로와 보의 유지상태 기술	정성
제주 돌담밭	특별관리권역의 증가	제주 돌담밭 집중도와 경관이 우수한 군락지를 공모절차를 통해 신규로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면적	정성
	석공기술의 전승	제주 발담 쌓기 장인의 기술복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여부	정성
		신규로 등록된 석공장인의 수	정량
구례 산수유농업	전통농업 시범구역	전통농업 시범구역 지정 및 활동내역	정성
담양 대나무밭	임도개설	대나무밭 정비를 위해 개설된 임도의 길이	정량



### 제3절 예비모니터링 지표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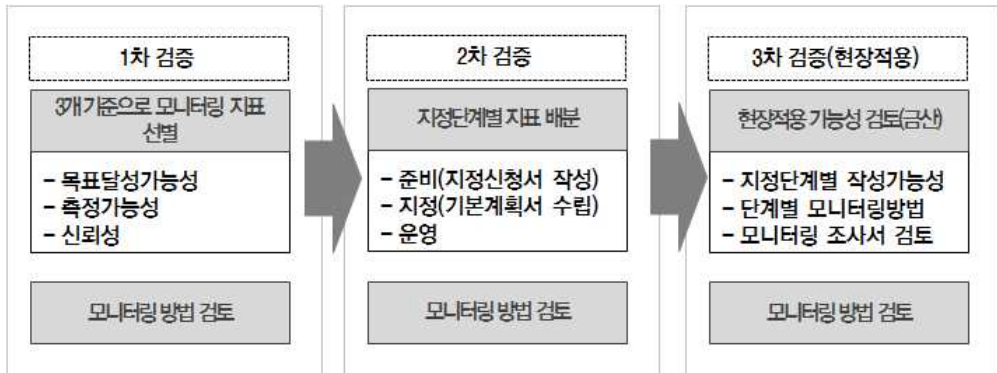
- 도출된 예비 모니터링 지표는 지표검증과 관련된 선행연구<sup>49)</sup>,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검증방법을 개발하여 두번에 걸쳐 진행함
- 1차 검증시에는 농업유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행연구 중 기재부 매뉴얼을 참고하되, 본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개 검증항목(목표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신뢰성)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검증함
  - 목표달성 가능성(Attainable): 해당 농업유산별로 그 특성에 맞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
  - 측정가능성(Measurable): 적은 비용으로 측정가능하지를 먼저 파악하고, 모니터링 수행자 또는 피수행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쉬운지를 먼저 평가하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문,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수집생산가능한지를 판단
  - 신뢰성(Reliable): 모니터링지표의 데이터가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가를 판단하며, 특히 설문 등을 통해 수집생산할 때에는 신뢰도를 고려함
- 2차 검증시에는 최종 선정된 모니터링 지표를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에 따라 농업유산 지정 단계별로 배분
  - 현재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에 따르면 농업유산 신청을 위하여 준비단계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함<sup>50)</sup>
  -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천단계에서 농업유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관리주체는 지자체의 장이나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sup>51)</sup>
  - 따라서 준비(주민협의체 구성, 신청서 작성)-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서 작성,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검토)-실천(관리 및 활용,

49)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5, 산림사업 평가지표개발  
임성일·서정섭, 2004, 지방재정분석 및 평가지표 실용성 검증

50)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4조~5조 참조

51)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15조~19조 참조

- 지자체 장, 주민협의체 등이 주체) 단계별로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여, 향후 관리기법 개발에 반영
- 3차 검증은 실제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현장적용가능성을 검토함
    - 실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대상지(금산 인삼농업)의 담당 공무원,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등과 함께 모니터링 지표에 대하여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실시함



[그림 5-5] 모니터링 지표 검증방법

## 1. 1차 검증

### 가. 개요

- 예비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1차 검증회의를 개최
  - 일시: 2016년 10월 11일 오전 10:00~12:00
  - 장소: 광명 역사 내 소회의실
  - 참석자: 오충현 교수(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황길식 대표(명소52), 백승석 박사(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이정환 주임 연구원(한국농어촌연구원), 전영옥 박사(도시환경연구센터), 유학열 박사(충남연구원)

52) 서면검토

- 도출된 예비모니터링 지표에 대하여 목표달성 가능성(Attainable), 측정가능성(Measurable), 신뢰성(Reliable)의 기준으로 검토

## 나. 검증결과

### 1) 운영체계

#### ○ 관리주체 형성

- ‘주민협의체 구성’, ‘관리주체 상존여부’, ‘지역주민 참여도’, ‘지역단체에 관한 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 여부’로 통합
- ‘소유권 변화’ 지표는 현재 신청서 작성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제주 발달과 같이 농업유산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통지표보다는 자율지표로 이동
-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보전을 위한 인재육성’ 지표는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기 힘든 지표로서 목표달성가능성과 측정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제외

#### ○ 관리체계

- ‘제도적 장치 확충’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중 주민협의체와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 체결은 협의체 유무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규(조례 등) 운영여부<sup>53)</sup>로 측정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법을 변경
- ‘DB 구축’지표는 DB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데이터의 축적(갱신)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법 변경

#### ○ 관리계획 수립

- ‘유지관리계획 수립’, ‘보존 관련 사업’ 지표들은 현재 3개년간의 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3년 이후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로 통합·변경

53) 신규제정 및 기제정된 관련 법규(경관조례 등)의 개수를 파악

- 예산확보
  - ‘예산확보’ 지표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확보여부로 모니터링 방법 변경
  - ‘보존기금 마련’지표는 해당 농업유산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지표로 이동
  
- 도시계획
  - ‘완충지역 설정’, ‘주변건축물 관리’ 지표는 해당 농업유산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지표로 이동
  - ‘토지이용의 변화’, ‘신규로 수립된 각종 계획’지표는 목표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제외
  - ‘개발행위’ 지표는 농업유산지역이 포함된 읍면지역에서 일어난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기입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법 변경

## 2) 보전

- 전통농업
  - ‘지속적인 농업활동’의 모니터링 방법은 관련 작목의 농가수와 산출물량으로 변경
  - ‘농업유산 복원’지표는 운영체계 공통지표인 ‘모니터링 환류’로 통합
  - ‘농업유산 대상지의 훼손정도’, ‘경작포기지’ 지표는 운영체계 공통지표인 ‘DB구축’의 세부항목으로 통합
  - ‘신규농업인수’, ‘전통농법 전승교육’, ‘전통농법 장인양성’, ‘병충해’ 지표는 목표달성가능성과 측정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
  - ‘직불금 대상면적’은 해당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곳이 있으므로 자율지표로 이동
  
- 생태경관
  - ‘생물다양성’ 지표의 모니터링 방법 중 방형구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농업유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법을 변경

- ‘토질’, ‘수질’, ‘기상’, ‘자연재해’ 지표는 운영체계 공통지표인 ‘DB 구축’의 세부항목으로 통합
  - ‘생태환경 조사 참가자’ 지표는 ‘생태환경 조사회수’와 통합
  - ‘기존 경관보존’, ‘내부에서의 조망’, ‘경관저해요소’ 지표는 통합하여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통합
  - ‘지역적 특성반영’ 지표는 측정가능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
  - ‘경관보전을 위한 주민교육’, ‘경관보전을 위한 주민활동’은 운영체계 공통지표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 여부’로 통합
- 전통문화
- 전통문화보전과 관련된 지표들은 목표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제외
  - 향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무형의 농업유산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포함될 때, 모니터링지표 추가를 검토

### 3) 활용

-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 ‘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 ‘현상이나 내용의 왜곡’, ‘국가 및 지역의 공동이익’, ‘주민협의체 동의’ 지표는 정성적으로 전문가들이 기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는 모니터링시 포함하는 것으로 함
- 경제적 효과
  - ‘브랜드 개발’, ‘농업관련 상품 생산’, ‘농업관련 상품 판매’는 ‘브랜드개발 및 관련 상품판매’로 통합하여 자율지표로 이동
  - ‘문화상품 개발’은 문화상품에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매출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법 변경
  - ‘농업외 소득향상’ 지표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을 모두 포함하

는 ‘농가소득 향상’으로 변경

- ‘사회적 경제조직’, ‘고용창출 인원’, ‘비용/수익 배분’, ‘관광객 수용 능력’은 목표달성가능성과 측정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제외
  - ‘관광객 체류기간’, ‘관광객 소비증가’ 지표는 측정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제외
  - ‘농업유산 관련 교류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의 주민참여’ 지표는 ‘문화상품개발’에 통합
  - ‘축제 등 부대행사를 위한 공간확보’, ‘관광서비스 향상에 대한 주민교육’ 지표는 목표달성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어 제외
  - ‘농가 민박수’는 펜션 등이 농가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제외
- 사회문화적 효과
- ‘인구 증감률’, ‘순이동 인구수’ 지표는 ‘관련 작물의 농가수 및 산출량’ 지표에 통합
  - ‘주민만족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율지표로 이동
  - ‘기본계획서상의 활용사업의 총수’, ‘기본계획서상의 활용사업 달성도’는 운영체계 관련 지표인 ‘중장기 계획수립 여부’로 통합
  - ‘언론매체 홍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지표는 ‘홍보활동’으로 통합
- 환경적 효과
- ‘생활환경 개선’ 지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정비량에서 사업수로 모니터링 방법 변경
  - ‘안내판’ 지표는 경제적 효과의 ‘관광기반 시설 구축’ 지표로 통합
  - ‘접근성 개선’ 지표는 농업유산의 경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 등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목표달성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제외

&lt;표 5-7&gt; 1차 검증된 모니터링 공통 지표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운영체계	관리주체형성	전담 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농업유산을 지정, 관리 및 활용을 전담할 행정조직 또는 인력 유무	정량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조직된 주민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회수 및 주요내용	정량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된 농업유산 관련 법규(조례 등) 개수	정량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훼손정도(일정 높이에서 사진 촬영),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토질, 수질, 기상, 자연재해), 모니터링결과 등을 포함한 DB구축 여부 및 데이터 축적여부	정성	
		모니터링 결과 환류	모니터링결과 피드백 반영 실적	정성	
	관리계획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 수립 여부	정성	
	예산확보	예산확보	농업유산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총액	정량	
	도시계획	개발행위	농업유산 지역을 포함한 읍면지역에서 일어난 개발행위 허가면적	정량	
	보전	전통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및 산출량의 변화	정량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정량 정성
생태환경 조사회수			5년간 생태환경 조사회수	정량	
경관의 변화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사진촬영	정성	

(표 계속)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활용	경제적 효과	브랜드 개발 및 관련상품 판매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브랜드개발 여부 및 이에 따른 생산품(1,2차 상품) 판매여부	정성
		문화상품개발	농업유산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문화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	정량
		농가 소득향상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득증가율	정량
		관광객 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	정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관광기반시설 구축	농업유산 대상지를 활용하기 위해 신규로 만들어진 안내 및 전시시설, 주변 부대시설 등의 종류와 규모	정성
		농업유산 해설사	농업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	정량
	사회문화적 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언론매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여부	정성
	환경적 효과	생활환경개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로, 오수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의 사업수	정량
		편의시설	농업유산대상지역 인근의 매점, 자판기, 화장실, 쓰레기 등의 위치와 관리상태	정성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여부	정성



&lt;표 5-8&gt; 1차 검증된 모니터링 자율 지표(예시)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청산 도 구들 장논	휴경논	휴경논의 면적	정량
	통수로와 보의 유지	통수로와 보의 유지상태 기술	정성
	보존기금 마련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기금마련 액수	정량
제주 돌담 밭	특별관리권 역의 증가	제주 돌담밭 집중도와 경관이 우수한 군락지를 공모절차를 통해 신규로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면적	정성
	완충지역 설정	농업유산지역 주변의 관리를 위하여 완충지역 설정 유무	정량
	석공기술의 전승	제주 밭담 쌓기 장인의 기술복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여부	정성
		신규로 등록된 석공장인의 수	정량
구례 산수 유농 업	전통농업 시범구역	전통농업 시범구역 지정 및 활동내역	정성
담양 대나 무밭	임도개설	대나무밭 정비를 위해 개설된 임도의 길이	정량
하동	직불금 대상면적	해당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직불금제도 대상면적	정량
기타	주변건축물 관리	주변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용도, 색채(간판 포함) 등에 대해 기술	정성
	주민만족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 주민만족도(농업유산 인지도 포함) 설문조사	정량

## 2. 2차 검증

### 가. 개요

- 예비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2차 검증회의를 개최
  - 일시: 2016년 10월 14일 오후 1:30~3:30
  - 장소: 서울 역사 내 소회의실
  - 참석자: 이유직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윤원근 교수(협성대학교), 최석인 교수(협성대학교), 이정환 주임연구원(한국농어촌연구원), 전영옥 박사(도시환경연구센터)
- 1차 검증회의를 통해 선별된 지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단계별로 필요한 지표들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준비단계(지정신청서 농업자원 설명서 작성)→지정단계(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운영단계
  - 운영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관하여 논의

### 나. 검증결과

#### 1) 운영체계

- 관리주체 형성
  -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유무’의 모니터링방법을 실제 업무계획이나 업무분장표(조직도), 회의록, 농림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방법으로 변경하고 준비단계의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함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은 모니터링 방법 변경 없이 준비단계의 지정신청서에서부터 첨부하는 것으로 함
- 관리체계
  - ‘제도적 장치 확충’은 모니터링 방법을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상황(인센티브 유무 등)으로 변경하고 운영단계부터 모니터링
  - ‘DB구축’은 지정단계인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시작하고 데이터 축적상황을 연 1회 이상으로 정량적

### 점검

- ‘모니터링 결과 환류’는 운영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시작
  - 관리계획수립
  - 관리계획수립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지표와 ‘예산확보’ 지표의 통합
- 예산확보
    - 관리계획수립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지표와 통합
  - 도시계획
    - ‘개발행위’ 지표명을 ‘농업유산의 정체성 유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
    - 체크리스트에 농업유산지구 또는 보존지구 설정여부, 완충지역 설정여부, 행위규제 유무, 인센티브 유무, 마을규약 유무 등을 포함

## 2) 보전

- 전통농업
  -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은 준비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
- 생태
  - ‘생물다양성’지표와 ‘생태환경 조사회수’를 통합하고 모니터링 방법을 농어양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2년에 1회 실시하며, 전문가에게 위탁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방법을 변경
- 경관
  - 지표체계에서 중항목인 생태경관을 생태보전과 경관보전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 전통문화
  - 전통문화 항목은 1차 검증에서 제외되었으나 2차 검증에서 향후 발굴 육성을 위하여 체크리스트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됨

### 3) 활용

- 경제적 효과
  - ‘브랜드 개발 및 관련 상품 판매’와 ‘문화상품개발’ 지표를 통합하고 모니터링 방법을 정량적인 방법인 매출로 변경
  - ‘농업유산과 관련된 관광기반시설 구축’ 지표는 환경적 효과로 이동
  - ‘농업유산 해설사’ 지표는 사회문화적 효과로 이동
- 사회문화적 효과
  - ‘농업유산 해설사’ 지표를 경제적 효과에서 이동
  - ‘농업유산정책과 타사업(일반농산어촌사업)과 연계’ 지표를 추가
  - 기술형식의 정성적 모니터링은 체크리스트 형식의 모니터링 방법으로 변경
- 환경적 효과
  - ‘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지표와 경제적 효과지표인 ‘농업유산과 관련된 관광기반시설 구축’ 지표를 통합하여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로 지표명을 변경

&lt;표 5-9&gt; 2차 검증된 모니터링 공통 지표

구분	지표	모니터링 방법	비고
관리 주체 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와 농업유산에 관한 전문성을 점검하고 실제 업무 계획이나 업무분장표(조직도), 회의록, 농림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증빙서류 등을 제시	체크 리스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조직된 주민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회수 및 주요내용을 담은 회의록, 사진 등을 제시	체크 리스트
운영 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상황(인센티브 유무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및 운영실적을 제시	체크 리스트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훼손정도(일정 높이에서 사진 촬영),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토질, 수질, 기상, 자연재해), 모니터링결과 등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 DB구축 여부 및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정량
	모니터링 결과 환류	모니터링결과 피드백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반영된 실적을 제시	체크 리스트
관리 계획 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 수립 및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총액	정량
도시 계획	농업유산의 정체성 유지	농업유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노력을 점검하고, 실제 농업유산지구 또는 보존지구 설정여부, 완충지역 설정여부, 행위규제 유무, 인센티브 유무, 마을규약 등을 제시	체크 리스트

표계속

구분	지표	모니터링 방법	비고	
보전	전통 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및 산출량의 변화	정량
	생태	생물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정량 정성
	경관	경관의 변화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제시	정성
	전통 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남아있는 전통농경생활문화의 특성, 이를 전수할 수 있는 농업인의 유무, 전승을 위한 노력, 관련 행사 등에 대해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경제적 효과	브랜드개발 및 관련 상품 판매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브랜드개발과 이에 따른 생산품(1,2차 상품) 판매량과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판매량	정량
		농가소득향상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득증가율	정량
		관광객 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	정량
	사회 문화적 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언론매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 내용 제시	체크리스트
		농업유산 해설사 양성	농업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수	정량
		농업유산 정책과 타사업과 연계	농업유산을 대상으로 농축산부 타사업(일반농산어촌사업), 타부처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제시	체크리스트
	환경적 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관광기반시설, 주민 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체크리스트

&lt;표 5-10&gt; 2차 검증된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

구분	대항목	중항목	지표	단계		
				준비	지정	운영
공통지표	운영체계	관리주체 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	○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	○	○	○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
			DB구축		○	○
			모니터링 결과 환류			○
		관리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
	도시계획	농업유산의 정체성 유지		○	○	
	보전	전통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	○
		생태	생물다양성	○	○	○
		경관	경관의 변화	○	○	○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	○	○
	활용	경제적 효과	브랜드개발 및 관련 상품 판매			○
			농가소득향상			○
			관광객 증가율			○
		사회문화적 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
			농업유산 해설사 양성			○
			농업유산 정책과 타사업과 연계			○
	환경적 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	
	자율지표		청산도 구들장논		○	○
			제주 돌담밭		○	○
		구례 산수유 농업		○	○	
		담양대나무밭		○	○	
		금산 인삼농업		○	○	
		하동 전통차농업		○	○	

### 3.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

#### 가. 개요

- 예비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2차 검증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
  - 일시: 2016년 10월 28일 오후 2:00~4:00
  - 장소: 충남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이유직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이인배 박사(충남연구원, 금산 인산농업 기본계획서 작성 책임 연구원), 강희천 팀장(금산군), 이정환 주임연구원(한국농어촌연구원), 전영옥 박사(도시환경연구센터), 유학열 박사(충남연구원), 이제이 연구원(충남연구원)
- 2차 검증회의를 통해 정리된 지표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실무자들과 논의
- 준비단계(지정신청서 농업자원 설명서)→지정단계(보전관리 기본계획서)→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실무자 검토의견 수렴
- 지자체에서 작성하게 될 모니터링 보고서(안)에 대한 검토

#### 나.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 1) 운영체계

- 관리주체형성
  -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는 준비단계에서는 전담 공무원 조직이 없이 농정 또는 농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업무를 함께 맡게 되는 것이 현실
  - 따라서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의 유무’는 지정 후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시부터 모니터링하는 것이 타당함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은 준비 및 지정 단계에서보다 운영단계부터 자세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관리주체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주민협의체가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확



보가 시급하나 지자체가 민간보조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sup>54)</sup>

- 관리주체형성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보다 농업유산 운영위원회(행정, 주민, 전문가로 구성) 등이 조직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주민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은 사회문화적 효과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항목을 변경
- 관리체계
  - ‘제도적 장치확충’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 난 뒤,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므로 지정단계부터 모니터링 하는 것이 타당함
  - 지자체의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DB구축’은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공통DB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는 기술DB로 항목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관리계획 수립
  -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는 정량적 모니터링(예산액 등) 보다 체크리스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구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른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한 내용 등을 모니터링지표에 포함
- 도시계획
  -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규제와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확충으로 모니터링 항목을 이동
  - 농업유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유무, 마을 규약 등으로 첨부서류 한정

54) 다원적 활용사업으로 3년차까지는 주민협의체 운영기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어려운 상황임. 금산군과 같은 경우, 보전관리 기본계획 속에 주민협의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과 함께 유통 및 체험사업 운영을 포함시킴

## 2) 보전

- 전통농업
  -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농가수(호), 산출량(톤) 외에 재배면적(ha)을 추가
  - 전통농업시스템(전통농업기술)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실시
- 경관
  - ‘경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관포인트를 2개 이상 결정하여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제주도나 금산군과 같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면적이 넓은 경우 위성사진이나 드론을 활용한 사진촬영이 필요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전문촬영은 2년에 1회 실시되는 기술모니터링에 포함
  - 특이한 경관변화가 있을 경우 경관변화요소를 찾아가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3) 활용

- 경제적 효과
  - ‘브랜드개발 및 관련 상품판매’의 모니터링 내용 중 ‘브랜드개발’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매출보다는 체크리스트로 하여 관련 1,2차 상품 및 문화상품의 리스트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
- 사회문화적 효과
  - ‘농업유산 해설사 양성’ 모니터링 지표는 농업유산해설사가 문화해설사와 같이 정식 직제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협의체, 농업유산 관련 축제조직위원회 등 관련조직들의 활동내역으로 지표 변경
  - ‘농업유산 정책과 타사업과 연계’ 지표는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표와 통합

- 환경적 효과
  -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항목에서 마을환경 및 유산주변 정비는 물론 편의시설까지 포함

&lt;표 5-11&gt; 3차 검증(현장적용)된 모니터링 공통 지표(최종)

구분	지표	모니터링 방법	비고	
운영체계	관리주체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와 농업유산에 관한 전문성을 점검하고 실제 업무계획이나 업무분장표(조직도), 회의록, 농림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증빙서류 등을 제시	체크리스트
		농업유산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지속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조직도, 관련 활동내용(사진 및 회의록)을 첨부서류로 제시	체크리스트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 및 운영상황(인센티브 유무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및 운영실적을 제시	체크리스트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체크리스트	
	관리체계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훼손정도(일정 높이에서 사진 촬영),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할 DB 구축여부 및 2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정량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 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DB구축 여부 및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정량
		모니터링 결과 환류	모니터링결과 피드백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반영된 실적을 제시	체크리스트
	관리계획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 수립 및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 등을 검토	체크리스트

표계속

구분	지표	모니터링 방법	비고	
보전	전통 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및 산출량, 재배면적의 변화	정량
		전통농업 시스템(기술) 유지	농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전통농업기술 또는 시스템을 보전하고 있는지 기술	체크리스트
	생태	생물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정량 정성
	경관	경관의 변화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제시	정성
	전통 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남아있는 전통농경생활문화의 특성, 이를 전수할 수 있는 농업인의 유무, 전승을 위한 노력, 관련 행사 등에 대해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경제적 효과	관련 상품개발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1, 2차 상품 및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개발	체크리스트
		농가소득향상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득증가율	정량
		관광객 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	정량
	사회 문화적 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언론매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 내용 제시	체크리스트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주민협의체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활동내용 제시	체크리스트
	환경적 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관광기반시설, 주민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체크리스트

&lt;표 5-12&gt; 3차 검증된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

구분	대항목	중항목	지표	단계		
				준비	지정	운영
공통지표	운영체계	관리주체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	○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	○	○	○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	○
			DB구축		○	○
			모니터링 결과 환류			○
		관리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
	보전	전통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	○
			전통농업시스템(기술) 유지	○	○	○
		생태	생물다양성	○	○	○
		경관	경관의 변화	○	○	○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	○	○
	활용	경제적 효과	관련 상품개발			○
			농가소득향상			○
			관광객 증가율			○
		사회문화적 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
	환경적 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	
	자율지표		청산도 구들장논		○	○
			제주 돌담밭		○	○
			구례 산수유 농업		○	○
		담양대나무밭		○	○	
		금산 인삼농업		○	○	
		하동 전통차농업		○	○	

<표 5-13> 모니터링 보고서(안) 검토

□ 총괄사항

농업유산명 (지정번호)		지정면적(m <sup>2</sup> )	면적
지정연월일		소재지	행정구역
농업유산 관련 마을	마을명(마을수)		
정기모니터링 일시(기간)		관리담당자	담당부서, 인원, 대표 담당자명, 연락처
총괄요약	<운영체계>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현재 운영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술		
	<보전>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현재 보전활동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훼손된 지역, 원인 등에 대한 기술		
	<활용>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현재 활용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술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예산확보, 농업유산운영위원회, 주민협의체 활동, 유산보전, 활용사업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총괄하여 기술		

## □ 운영체계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관리주체 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농업유산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업무계획 업무분장표 등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심포지엄,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교육증빙서류, 회의록, 관련 사진 등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도, 회의록, 관련 사진 등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관련 조례명, 인센티브, 정책연계사례 등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마을규약 내용, 운영사례 등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항공사진분석,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기술모니터링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는 지 여부	데이터갱신 회수(회)	기술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갱신내용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DB구축 여부 및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데이터갱신 회수(회)	담당 공무원 데이터 갱신내용
모니터링 결과 환류	이전 모니터링결과를 피드백하여 농업유산 관리에 반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실제 반영한 사례 등	

표계속

관리 계획 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에 따라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산서, 다른 정책사업 내용
----------	--------------------	--	--------	-----------------

□ 보전사항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전통 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의 변화	농가수(호) 산출량(톤) 재배면적(ha)	통계자료
	농업시스템(기술)의 유지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통 농업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유산 지역 면적, 기술전수내용 등
생태	생물 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	해당년도에 전문가 위탁 기술모니터링 보고서(2년 1회)
경관	경관의 변화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제시	사진촬영 후 DB 축적(회)	촬영 위치, 촬영사진
		관련 사진		※ 항공사진 분석 등은 기술모니터링에서 실시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 (권장)	전통농경생활문화 발굴 및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예, 아니오	전통농경생활문화 관련 행사, 심포지엄 등
자율지표		각각 농업유산별 특이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구성(2개)	정량/정성	통계자료 등

### □ 활용사항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경제적효과	관련상품개발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1, 2차 상품 및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개발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상품리스트
	농가소득향상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득증가율	소득증가율(%)	통계자료
	관광객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증가율	관광객증가율(%)	통계자료
사회문화적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향상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농업유산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언론매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
	농업유산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조직구성원명단, 활동내용(회의록, 사진)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 등이 활동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주민 자체 수익사업, 지자체 예산 등
환경적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농업유산 주변 편의시설과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관광기반시설, 주민 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 정비내용

<표 5-14> 모니터링 보고서(안) 금산 인삼농업에 적용55)

□ 총괄사항


농업유산명 (지정번호)	금산인삼농업 (5호)	지정면적(m <sup>2</sup> )	293.3km <sup>2</sup>
지정연월일	2015.3.1	소재지	충남 금산군
농업유산 관련 마을	5개면 (진산면, 금성면, 남일면, 제원면, 부리면)		
정기모니터링 일시(기간)	-	관리담당자	금산인삼엑스포지원단 김동기 단장 강희천 팀장 041-750-2754
총괄요약	<운영체계>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운영체계의 주요내용		
	<보전>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보전계획의 주요내용		
	<활용>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활용사업 리스트		

55) 금산인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은 2016.10월 현재 금산군에서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중으로, 제시한 모니터링 보고서 항목 중 현 단계에서 작성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증빙자료는 생략함

## □ 운영체계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관리주체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농업유산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업무계획 업무분장표 등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심포지엄,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 증빙 서류, 회의록, 관련 사진 등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조직되어 있으나 실적은 미미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도, 회의록, 관련 사진 등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관련 조례명, 인센티브, 정책연계 사례 등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오	마을규약 내용, 운영사례 등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항공사진분석,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기술모니터링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아니오 *준비중	기술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갱신내용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DB구축 여부 및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없음 *준비중	담당 공무원 데이터 갱신내용
모니터링 결과 환류	이전 모니터링결과를 피드백하여 농업유산 관리에 반영하였습니까?		실제 반영한 사례 등	
관리계획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에 따라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까?	예	예산서, 다른 정책사업 내용

□ 보전사항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전통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의 변화	2,809호 1,319ha	통계자료
생태	생물 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	해당년도에 전문가 위탁 기술모니터링 보고서(2년 1회)
경관	경관의 변화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제시	준비중	촬영 위치, 촬영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금산 농촌마을의 농업경관</p>		※ 항공사진 분석 등은 기술모니터링에서 실시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 (권장)	전통농경생활문화 발굴 및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준비중	전통농경생활문화 관련 행사, 심포지엄 등

□ 자율 지표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전통 농업 시스템	논삼윤작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삼윤작 재배면적 변화</li> <li>- 논삼윤작 방법의 변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논삼윤작시스템</b></p>	통계자료 현장인터뷰자료
	인삼밭 예정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밭 예정지 관리 기술(기법)의 변화</li> <li>- 인삼밭 토양 양분 확보 기술의 변화</li> </ul>	현장인터뷰자료
	전통 재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방식의 재현포 면적 변화</li> </ul>	현장인터뷰자료 사진



## 제 6 장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정립

제1절 보전관리 체계

제2절 모니터링 방법

제3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제4절 제도적 연계방안





## 제6장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정립

### 제1절 보전관리 체계

#### 1. 기본방향

-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은 기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해 시행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에 따라 농업자원의 가치성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함
  -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유지하고, 그 기술이 체계화 되어 전승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특별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
-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 농업유산의 가치와 차별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주체별 역할

-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관련 민간단체, 주민 등이 해당함

- 현재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제 13조에 의하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sup>56)</sup>
  -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군수는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의 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하고 보전하는 주체가 되기에는 전문적 지식 부족,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주민협의체가 참여하는 지자체 단위의 ‘농업유산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지정신청당시 임의로 농업유산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임
  -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제5조, 1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
-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체와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을 참조하여 각각의 주체별로 보전관리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음

#### 가.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총괄관리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농업유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업무를 수행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의 가이드라인이나 지표를 제시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에 대한 중대한 현상변경 사안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시행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함

56)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제 13조

### 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안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안내판, 보호책 등 시설물관리를 시행함
-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민원의 처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사무를 수행함

### 다. 농업유산운영위원회(지자체 단위)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시 구성된 소유자와 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한 보전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주민협의체와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운영위원회가 보전관리를 수행함
  -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율관리협약체결을 통해 주민협의체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sup>57)</sup>, 활동예산확보 등이 어려우므로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농업유산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예산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함
  - 농업유산운영위원회는 주민협의체는 물론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이 포함되므로 모니터링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음

### 라. 일반주민 및 주민협의체

-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과 유산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도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에서 농업활동을 지속하는 농업인들은

57) 농업유산지정 관리기준 제 13조

전통농업기술, 대상지의 전통구조나 양식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관광 등의 농업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멸실시키지 말 것
  -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
  -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있을 것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시 구성된 소유자와 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또한 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자체장의 위탁이나 필요시 실제 모니터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

### 3. 유지관리

#### 가. 모니터링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고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정준비단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서 및 농업자원 설명서 작성
  - 지정단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운영단계: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하는 단계
- 지정신청서 작성단계에 농업자원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준비단계에 필요한 모니터링 지표를 농업자원설명서 작성지침 속에 포함시켜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지표(공통지표와 자율지표)를 포함시키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여 향후 진행되는 모니터링의 기준치(Baseline Data)로 활용해야 함
- 지정 후 운영단계에서는 현행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현상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6조), 관할 시장·군수는 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제17조)
- 그러나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의 차이점이 없으며,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각 주체별 모니터링 시기와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관할 시장·군수가 년 1회 이상 정기모니터링(Periodic Monitoring)을 실시하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모니터링(Integrating Monitoring)은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모니터링 지표 중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년에 1회 기술모니터링(Technical Monitoring)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아 ‘생물다양성’과 ‘농업유산 실측’, ‘농업유산 경관변화(항공사진 관독 등)’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각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중대한 현상변경이 계획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을 실시할 수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농업유산지정 관리기준 제 16조, 17조, 18조, 19조가 해당되며, 향후 개정이 필요한 조항임

<표 6-1> 유사사례의 모니터링 시기

유사사례	모니터링 유형	시기
일본 농업유산	보전계획에 따른 활동상황	5년 1회 농림수산성에 보고
UNESCO 세계유산	지정신청서상 모니터링	모니터링지표에 따라 월 1회~5년 1회
	정기보고	6년 1회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
	대응모니터링	세계유산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한국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	3년 또는 5년 1회 문화재청에 보고
	상시관리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관리

#### 나. 보수정비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자원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수 및 복원 등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 시행함

## 제2절 모니터링 방법

### 1. 모니터링 기본원칙

- 모니터링대상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구역내 식물, 동물, 각종 시설물, 토양, 배수체계, 경관 등 구성요소 일체와 유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지역으로 하며,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상에 제시된 각종 사업도 포함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구역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활동(관광 등 경제활동 포함)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지역
  -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상에 제시된 각종 사업
- 모니터링은 정기 모니터링(년 1회), 통합 모니터링(2년 1회), 기술모니터링(2년 1회), 정책 모니터링(해당시)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모니터링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함
- 정량적 분석작업과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변화양상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장래의 평가 및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 등 모니터링 주체는 자체수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음
  - 기술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의 경우, 농업유산이 속한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연구원, 광역지자체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유산학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

<표 6-2> 단계별 모니터링의 종류

단계	모니터링 종류	시기	주체	주요 내용
준비 단계	지정신청서상 모니터링	지정신청서 제출시	시장·군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점검해야할 부분을 중심으로 농업자원 설명서 속에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
지정 단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의 모니터링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시장·군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수립하게 되는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향후 지속적으로 측정가능한 모니터링 지표(공통지표, 자율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여 기준치로 활용
운영 단계	정기 모니터링 (Periodic Monitoring)	년 1회 이상	시장·군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채택된 지표(공통지표, 자율지표)와 각각의 지표에 적합한 모니터링 시기를 적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기술 모니터링 (Technical Monitoring)	2년 1회	시장·군수	모니터링 지표 중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년에 1회 전문가들이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모니터링(생물다양성, 농업유산 실측, 항공사진 판독 등)
	통합 모니터링 (Integrating Monitoring)	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통합모니터링으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유산별로 진행되어 오던 정기모니터링과 기술모니터링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는 작업으로 2년간 이루어진 농업유산의 변화와 보전관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함
	정책 모니터링 (Reactive Monitoring)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각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중대한 현상변경이 예측되는 경우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을 경우 긴급하게 실시하는 모니터링



## 2. 지정신청서상의 모니터링 지표

### 가. 정의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점검해야할 부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지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 나. 모니터링 주체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의 시장·군수

### 다. 모니터링 시기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서 작성시

### 라. 모니터링 지표

-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여부
  -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서 작성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도, 명단 등을 첨부서류로 제시하도록 함
  - 이는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후, 보전·관리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작성때부터 모니터링항목으로 관리
-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호) 및 산출량(t), 재배면적(ha) 등을 지정신청서 작성당시를 기준으로 제시
  - 이는 향후 전통농업의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량적 지표로 운영하여 변화되는 양상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생물다양성
  -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물상 및 특성에 대한 개략적

#### 인 기술

##### ○ 경관의 변화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지를 잘 나타내는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함

##### ○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은 권장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표는 아니며, 향후 무형의 농업유산이거나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유산이 있을 경우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3.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의 모니터링 지표

#### 가. 정의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수립하게 되는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향후 지속적으로 측정가능한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함
-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통 모니터링 지표와 각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특성에 맞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율지표로 구성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함
- 향후 이루어지는 정기 모니터링 및 통합 모니터링의 기준점이 되어 변화를 측정해 나감

#### 나. 모니터링 주체

-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시장·군수

#### 다. 모니터링 시기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직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 라. 모니터링 지표

### 1) 운영체계

-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뒤에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게 될 담당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계획이나 업무분장표(조직도), 업무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전담 지자체 공무원들의 농업유산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함
-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여부
  - 지정신청서 당시 제안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가 실제 조직되었는 지를 점검하고 향후 보전·관리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기간 동안의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활동 내역을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 제도적 장치 확충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를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수록
  - 기제정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면 조례개정, 인센티브 유무 등에 대해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수록하도록 함
  -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을규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함
- DB구축
  -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훼손 정도(일정 높이에서 사진 촬영),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고 DB를 구축

- 이때 DB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날로그식 보고서 형태로 보관
-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시에는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3년(계획 1년+사업 2년)까지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이후 중장기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 수립 및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 등을 검토

## 2) 보전

-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호) 및 산출량(t), 재배면적(ha) 등을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당시를 기준으로 제시
  - 이는 향후 전통농업의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량적 지표로 운영하여 변화되는 양상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생물다양성
  -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상에 수록
- 경관의 변화
  -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상에 수록
-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은 권장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표는 아니며, 향후 무형의 농업유산이거나 전통문화를 중

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유산이 있을 경우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3) 자율지표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각 지자체는 각각의 농업유산의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를 개발하여 보전관리기본계획서 상에 수록하고 향후 정기모니터링 등을 통해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 및 관리의 기준으로 삼음

<표 6-3> 자율지표-농업유산별 특수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예비지표 예시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청산 도 구들 장논	휴경논	휴경논의 면적	정량
	통수로와 보의 유지	통수로와 보의 유지상태 기술	정성
제주 돌담 밭	특별관리권 역의 증가	제주 돌담밭 집중도와 경관이 우수한 군락지를 공모절차를 통해 신규로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면적	정성
	석공기술의 진승	제주 밭담 쌓기 장인의 기술복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여부	정성
		신규로 등록된 석공장인의 수	정량
구례 산수 유농 업	전통농업 시범구역	전통농업 시범구역 지정 및 활동내역	정성
담양 대나 무밭	임도개설	대나무밭 정비를 위해 개설된 임도의 길이	정량

## 4. 정기 모니터링(Periodic Monitoring)

### 가. 정의

-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채택된 지표와 각각의 지표에 적합한 모니터링 시기를 적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이미 보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경우에는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통 모니터링 지표와 자율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정보를 차년도부터 기록해 나감

### 나. 모니터링 주체

- 관할 시장·군수

### 다. 모니터링 시기

- 모니터링 지표의 특성에 맞춰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라. 모니터링 지표

#### 1) 운영체계

-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와 농업유산에 관한 전문성을 점검하고 실제 업무계획이나 업무분장표(조직도), 회의록, 농림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증빙서류 등을 제시함
-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여부
  -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지속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조직도, 관련 활동내용(사진 및 회의록)을 첨부서류로 제시함
- 제도적 장치 확충
  -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 및 운영상황(인센티브 유무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및 운영실적을 제시

-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을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
  - DB구축
    -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자료를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를 축적
    - 이때 DB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날로그식 보고서 형태로 보관
  -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 모니터링결과 피드백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반영된 실적을 제시
  -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 수립 및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한 실적을 제시
- 2) 보전
- 농업시스템(기술)의 유지
    -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기록
    -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전통농업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유산지역의 면적 변화를 기록
    -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전통농업기술 등을 전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심포지엄, 주민교육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
  -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호) 및 산출량(t), 재배면적(ha)의 변화를 기록

- 경관의 변화
  -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기록
  
-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은 권장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표는 아니며, 향후 무형의 농업유산이거나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유산이 있을 경우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3) 활용
  - 관련 상품개발
    -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1, 2차 상품 및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개발여부
  
  - 농가소득 향상
    -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득증가율을 매년 기록하여 그 변화상을 검토함
  
  - 관광객 증가율
    -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을 매년 기록하여 그 변화상을 검토함
  
  -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 언론매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내용을 제시
  
  -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 주민협의체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비(일반농산어촌 사업 등 타사업) 확보 및 활동내용을 제시
  
  -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 정비



-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관광기반시설, 주민 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 4) 자율지표

- 보전관리기본계획서 상에 수록한 농업유산별 자율지표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함

### 5. 기술모니터링(Technical Monitoring)

#### 가. 정의

-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모니터링으로서 2년에 1회 실시함
- 전문가들이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 지표 중 ‘DB구축’ 중 농업유산 실측, 항공사진 판독 등, ‘생물다양성’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함

#### 나. 모니터링 주체

- 관할 시장·군수

#### 다. 모니터링 시기

- 2년에 1회

#### 라. 모니터링 지표

- DB구축
  -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훼손정도(일정 높이에서 사진 촬영),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할 항목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
- 생물다양성
  -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상에 수록

## 6. 통합 모니터링(Integrating Monitoring)

### 가. 정의

- 국가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통합 모니터링(Integrating Monitoring)으로 각 유산별로 진행되어 오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합하여 2년간 이루어진 농업유산의 변화와 보전관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함
-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작성되어온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함
  -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성된 모니터링 지표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면, 각각의 국가중요농업유산별 모니터링 결과를 통합·분석할 수 있음

### 나. 모니터링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다. 모니터링 시기

- 2년에 1회

### 라. 모니터링 지표

- 정기모니터링 지표와 동일함

## 7. 정책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

### 가. 정의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각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중대한 현상변경이 예측되는 경우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을 경우 긴급하게 실시하는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다. 모니터링 시기**

-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실시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각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중대한 현상변경이 예측되는 계획 수립시
  -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시

**라. 모니터링 지표**

-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각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

## 제3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 1. 기본방향

-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는 관계로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유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지정신청서 작성단계부터 운영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후 ‘농업유산운영위원회(지자체 단위)’ 등과 같은 체계적 조직을 운영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어도 지속적인 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정기모니터링-통합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운영체계, 보전, 활용에 대한 지표를 수록하여 관리한다면, 향후 농업유산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긴급하게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효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통합모니터링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복원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활용부분에서 나타나는 농가소득향상, 관광객증가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유산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 등이 필요함

## 2. 인센티브 정책

- 통합모니터링 결과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해당 농업유산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함
- 공익직불금
  - 현재 품목별로 구분하여 농지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공역형 직불금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
  - 현행 직불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쌀에 집중되어 있음
  -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농업유산 보전을 통한 전통문화계승, 아름다운 경관보전 등에도 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농지면적단위로 지불되던 직불금을 조직단위(농업유산운영위원회, 주민협의체 등)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검토
- 일반농산어촌 사업에 농업유산 유형 추가
  - 농업유산 유형을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새롭게 추가하여 향후 보전 및 활용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일반농산어촌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농업유산’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일반농산어촌 사업 ‘시·군역량’사업 유형에 농업유산 주민활동 지원을 추가
  - ‘시·군역량’사업 지침을 수정하여 ‘시·군창의’, ‘시·군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농업유산지구의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3. 보수정비

- 모니터링 결과 농업유산의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지도하에 보수정비를 실시해야 함
  - 지자체가 주관하는 정기모니터링 결과 지자체장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체 예산사업으로 보수정비를 시행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주관하는 통합모니터링 또는 정책모니터링 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해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수정비를 시행함
  
- 이때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함
  - 문화재청의 보수정비사업 예산확보 사례를 보면 국고보조금(총액계상)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는 70%(국가):30%(지자체)비율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함
  - 또한 문화재청은 자연재해 등 긴급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확보하고 있음

### 문화재청 보수정비사업 예산 사례

-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총액계상)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중
- 사업내용: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비 지원
- 사업의 특징: 총액계상사업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70%내외), 등록문화재 보수정비(50%), 전시관 유지보수 및 수장시설 등(30%)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보존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 국가(50%), 지자체(50%)의 비율로 지원

#### <표 6-4>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출액	211,026	210,000	187,976	200,200	243,000	233,800	280,000	305,000
보수건수	935	1,190	962	1,052	1,235	1,081	1,345	1,379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은 문화재보수기금에서 5,000백만 원(2015)예산을 확보하여 자연적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50건) 긴급지원을 실시

## 제4절 제도적 연계방안

- 농업유산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제5조, 13조, 16조, 17조, 18조, 19조가 해당되며, 향후 개정이 필요한 조항임
  - 제5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제 13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에서는 각 지자체별 농업유산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제16조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제17조 실태조사, 제 18조 조사결과 조치, 제19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단계별 모니터링방안과 지표로의 개정이 필요함

<표 6-5>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신규 조문 비교

현행	개정
-	<p>&lt;신설&gt;</p> <p><b>제6조(농업유산운영위원회 구성)</b></p> <p>①시장·군수는 지역여건에 맞게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협의체 대표로 구성된 농업유산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농업유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여건에 맞게 시장·군수가 정한다.</p>



표계속

현행	개정
<p><b>제13조(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b>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u>주민협의체</u>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군수는 주민협의체와 <u>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u>을 체결하여야 한다.</p>	<p><b>제14조(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b>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u>주민 또는 주민협의체</u>, 농업유산운영위원회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u>주민협의체 또는 농업유산운영위원회</u>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u>주민협의체 또는 농업유산운영위원회</u>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군수는 <u>예산지원 및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u>을 체결하여야 한다.</p>
<p><b>제16조(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b></p> <p>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현상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u> <u>년 1회 이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u> <u>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b>제17조(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b></p> <p>① <u>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u> <u>시장·군수는 지정신청서상에</u> <u>모니터링지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u>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u> <u>시장·군수는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시</u> <u>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p> <p>③ <u>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속해 있는</u> <u>시장·군수는</u> <u>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u>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속해 있는</u> <u>지자체장은</u> <u>2년 1회 기술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상태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u> <u>2년 1회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⑥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u>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에 중대한 현상변경이 예측되는 경우나,</u> <u>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등이 심각하게 일어났을 경우</u> <u>긴급하게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⑦ <u>제4항, 제5항,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은</u> <u>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⑧ <u>단계별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는</u> <u>별표 2, 3과 같다.</u></p>

표계속

현행	개정
<p><b>제17조(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실태조사)</b></p>	<p>&lt;삭제&gt;</p>
<p><b>제18조(조사결과 조치)</b></p> <p>① 시장·군수는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p> <p>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p> <p>3.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p> <p>②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8조(모니터링결과 환류)</b></p> <p>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통합모니터링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p>3. 삭제</p> <p>② 시장·군수는 정기모니터링 후 -----</p>
<p><b>제19조(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b> 시장·군수는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b>제19조(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를 위한 DB 구축)</b> 시장·군수는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축적하여 향후 다양한 정책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제7장

# 결론 및 제언



## 제7장 결론 및 제언

### 가. 연구의 요약

#### 1) 필요성 및 연구의 의의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6건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 중 2건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에 따라 3년간 15억의 예산을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었고, 2016년 10월 현재 6개 유산지역 중 5지역이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
- 그렇지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이후의 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농업유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과는 달리 ‘보전을 통한 활용’에 가치를 두는 정책임. 즉, 해당 유산지역의 유산가치를 지역의 주체들이 인식함으로써,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임. 다시 말해, 농업유산제도는 유산의 지정과 사업비 지원보다도 사후 관리 단계가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임
-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농업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현재 FAO, 일본, 중국 등 관련 주요국들은 아직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 또는 기초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개발은 농업유산의 가치에 바탕을 둔 합목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성과가 현재 제도도입을 검토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주변국 및 FAO에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상기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모니터링 개념 정의

2)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방향 및 GIAHS의 다이나믹한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설문내용 분석

3) 농업유산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농업유산 제도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분석
- 일본 및 중국 GIAHS지역 모니터링 사례
- 농업유산과 관련성 있는 모니터링 지표 사례(일본)
- UNESCO 세계유산제도 운영 사례(국내, 해외)
- 천연기념물 제도 보전 사례(국내)

4)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지표개발의 기본방향 설정 및 예비지표 도출
- 지표의 검증 및 현장 적용성 검토
- 검증결과를 종합한 최종 모니터링 지표 도출

5)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 정립

-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체계 도출
-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에 따른 환류
- 제도적 연계방안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개정안 등)
-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나. 기존사례와 본 연구의 비교

구분	일본	중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연기념물	본 연구
모니터링 기본 틀	농림수산성이 설치한 ‘농업유산 전문가회의’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일본농업유산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보전 관리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크게 기록(문헌) 검사, 현장 검사, 종합 평가로 구성	-(등재신청 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에 모니터링 지표 기재 -(등재 후) 운영지침 상 모니터링: 정기모니터링, 대응모니터링	-3년마다 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생육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조사 실시	- 농업유산 지정 및 운영 단계별로 모니터링
관리 체계	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기록검사: 중앙정부 현장검사: 해당 지역 지방농업부 종합평가: 해당 지역 담당부서	-정기모니터링: 세계유산등재신청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정기모니터링 실시. 6년 주기의 정기보고에서 각 협약국의 유산별 모니터링 결과를 유네스코에 보고 -대응모니터링: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산의 위협·훼손 여부를 모니터링함	-정기조사: 연1회 실시,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조사 -간이조사: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천연기념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	-지정신청서상 모니터링→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 모니터링→운영단계 (정기모니터링, 기술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정책모니터링)

구분	일본	중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연기념물	본 연구
관리 주체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며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 분담	-각 협약국의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등이 유산을 관리	-관련 전문가가 모니터링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수리(식물) 기술자 등해당	-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이 현장을 관리
지원 예산	별도의 예산 없음	확인되지 않음	- 각 협약국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활용 - 한국의 경우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사업' 예산(국비5, 지방비5) 활용	-상시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전국사업)로 일괄 지원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에 위임, 자체 처리함	-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제안
주요 모니터링 지표	-친환경농업의 추이 -신규귀농자수 -농업유산 인증제품 판매점수 -지역해설자수	-유산면적 보호 -전통품종 보호 -생태기능 보호 -농지환경 보호 -농지경관 보호	-유산의 물리적 측면: 자연환경, 관개시설, 무형요소 등 -영향요인: 유산구역 주변 건설사업 규모, 자연재해 범위 등 -사회·경제·문화적 측면: 농가소득, 관광객 수 등	-보존사항: 자연환경, 문화재구역관리, 생육실태, 훼손 및 변형, 오염 여부 등 -관리사항: 소방 및 안전관리, 방문객 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등	-공통지표: 보전(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생물다양성, 경관변화 등), 활용(농가소득 증가율, 관광객증가율 등) - 자유표



## 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모니터링 및 관리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합목적적 운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3년간 15억을 지원해주는 정부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우리 농촌지역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통하여 보전하며 농촌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즉 ‘보전을 통한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다시말해, 농업유산은 ‘사업’적 측면보다는 ‘가치’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지표와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은, 농업유산 선정지역의 평가개념이 아닌,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농업유산관리활동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라. 제도적 개선방안

- 1)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모니터링 제도 도입 시 개선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검토
    - 현재 품목별로 구분하여 농지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공역형 직불금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사업 유형에 농업유산 주민활동 지원 추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등 보완을 통하여 농업유산지구의 보전과 활용과 관련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업유산 관련 유형 추가
  - 농업유산 유형을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새롭게 추가하여 향후 보전 및 활용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일반농산어촌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농업유산’등 보전의 개념을 가지는 신유형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기간 연장
  - 최초 3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 진행, 차후 2년은 모니터링 및 주민활동 예산확보를 중점으로 하되, 사업 종료 후 예산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전관리계획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농업유산의 복구와 관련된 예산 확보
  - 농업유산의 복구 등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농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개정
  - 제시한 농업유산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농업유산 관리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
  
- 농업유산의 전문적 관리기구(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
  - 농업유산을 ‘사업’개념이 아닌 ‘가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농업유산을 바람직하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유산의 총괄적 관리를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음

## &lt;참고문헌&gt;

- 구례군, 2015, 국가중요농업유산 구례산수유농업 보전관리 종합계획.
- 국립농업과학원, 2014,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농업·농촌유산 유지·보전 평가지표 개발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연구원, 2012,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연구원, 2014,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 개발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연구원, 2015, 농촌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평가 지표 및 현장적용기법 개발연구
- 담양군, 2015, 국가중요농업유산 담양대나무밭 보전관리 종합계획
- 대한민국, 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등재신청서
- 문화재청, 2003, 천연기념물백서.
- 문화재청, 2011, 천연기념물 수림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 문화재청, 2012, 세계유산 상시모니터링 지표개발
- 문화재청, 2015,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 문화재청, 2016,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 박진재, 2013,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민식, 201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 완도군, 2014, 국가중요농업유산 제 1호 종합계획 및 지표자원 조사 분야 수립
- 윤원근 외(한국농어촌 유산학회, 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서울:청목출판사
- 정주연, 2014,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지리적인 관점에서 상시모니터링 일반지표의 분석과 적용,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도, 2014,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 하동군, 2016, 국가중요농업유산 하동 전통차농업 보전관리종합계획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 유네스코 본부 웹사이트 [www.unesco.org](http://www.unesco.org)
- 김정구, 1969, 관리회계의 기본적 전제, 건국낙원지(제4집)

- 이정환, 2016, 한일 농업유산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Evonne Yiu, 2016, 'Monitoring and Evaluation Metho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Through Multi-Stakeholders Governance' 제3회 ERHAS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 JIAO Wenjun, 2016,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GIAHS in China', 제3회 ERAHS 발표자료
- Paola Gullino, Gabriele Loris Beccaro and Federica Larcher, 2015, Assessing and Monitoring the Sustainability in Rural World Heritage Sites, Sustainability Vol. 7(10).
-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Nomination of 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 Republica Italiana, 2014, Nomination of Vineyard Landscape of Piedmont: Langhe-Roero and Monferrato
- Republic of Korea, 2015, Nomination of Baekje Historic Areas.
- RESULTS-BASED MANAGEMENT HANDBOOK, 2001,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자료
- RESULTS-BASED MANAGEMENT HANDBOOK, 2001,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자료

별표 1]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농업유산지역 관리체계

단계	모니터링 종류	시기	주체	주요 내용
준비 단계	지정신청서 상 모니터링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점검해야할 부분을 중심으로 농업자원 설명서 속에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
지정 단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상의 모니터링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수립하게 되는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향후 지속적으로 측정가능한 모니터링 지표(공통지표, 자율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여 기준치로 활용
운영 단계	정기 모니터링 (Periodic Monitoring)	년 1회 이상	시장·군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채택된 지표(공통지표, 자율지표)와 각각의 지표에 적합한 모니터링 시기를 적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기술 모니터링 (Technical Monitoring)	2년 1회	시장·군수	모니터링 지표 중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년에 1회 전문가들이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모니터링(생물다양성, 농업유산 실측, 항공사진 판독 등)
	통합 모니터링 (Integrating Monitoring)	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통합 모니터링으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유산별로 진행되어 오던 정기 모니터링과 기술모니터링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는 작업으로 2년간 이루어진 농업유산의 변화와 보전관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함
	정책 모니터링 (Reactive Monitoring)	필요 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주변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여 각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중대한 현상변경이 예측되는 경우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을 경우 긴급하게 실시하는 모니터링

별표 2] 단계별 모니터링에 관한 지표

구분	대항목	중항목	지표	단계		
				준비	지정	운영
공통지표	운영체계	관리주체 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	○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및 활동	○	○	○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	○
			DB구축		○	○
			모니터링 결과 환류			○
		관리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
	보전	전통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	○
			전통농업시스템(기술) 유지	○	○	○
		생태	생물다양성	○	○	○
		경관	경관의 변화	○	○	○
		전통문화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	○	○	○
	활용	경제적 효과	관련 상품개발			○
			농가소득향상			○
			관광객 증가율			○
		사회문화적 효과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
		환경적 효과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정비			○
	자율지표		청산도 구들장논		○	○
			제주 돌담밭		○	○
			구례 산수유 농업		○	○
		담양대나무밭		○	○	
		금산 인삼농업		○	○	
		하동 전통차농업		○	○	

## 부록 1. 정기모니터링 작성 가이드라인

- 정기모니터링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시장·군수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기술된 운영체계 및 보전과 관련된 각각의 모니터링항목을 업데이트하고 활용부분의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야 함
- 정기모니터링은 전문가들이 작성하게 되는 기술모니터링(2년에 1회)과 달리 담당공무원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둠

### □ 모니터링 주체: 시장·군수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다음 표의 ‘정기모니터링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정기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정기모니터링 보고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
- 정기모니터링 보고서(4P)와 첨부서류로 구성

#### <표> 정기모니터링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구분	정기모니터링 항목
운영 체계	①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조직) 유무, ② 제도적 장치 확충, ③ DB 구축, ④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⑤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보전	①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② 전통농업시스템 유지, ③ 경관의 변화
활용	① 관련 상품개발, ② 농가소득향상, ③ 관광객 증가율, ④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④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⑤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 정비
자율 지표	각각 농업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구성(2개)

## 1. 농업유산 운영체계에 관한 지표

### 1-①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조직) 유무

- 농업유산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공무원이 있다며, 업무분장표, 해당년도 업무계획 등을 첨부함
- 전담공무원이 있다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유산 관련 심포지엄,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증빙서류, 심포지엄 자료,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함
-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농업유산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 예 → 당해년도 업무계획, 업무분장표 등 첨부  
✓ 아니오 → 첨부서류 불필요

▪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심포지엄,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예 → 교육증빙서류, 심포지엄 포스터(참여사진 첨부), 활동사진 등 첨부  
✓ 아니오 → 첨부서류 불필요

▪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도, 회의록, 관련 사진 등 첨부  
✓ 아니오 → 첨부서류 불필요

### 1-② 제도적 장치 확충

- 농업유산 관련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계획이 있거나 기제정되었다면 조례명 및 내용을 첨부함
-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일반농산어촌사업 등과 연계한 사례를 첨부함
-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규약을 제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과 실제 운영된 사례를 첨부함

- 관련 조례 및 마을규약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신규제정 및 기제정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 예→ 관련 조례명과 조문, 조례와 연동하여 농업유산지역에 인센티브를 준 사례 또는 타정책 연계사례 등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예→ 마을규약 내용, 마을규약에 따라 운영된 사례가 있다면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1-③ DB구축

- 보전 및 활용부문의 정량적 지표인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 수 등에 대한 DB 갱신여부
- 정기모니터링 첫해에는 DB구축에 중점을 둠
- 관련 자료를 연도별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 예) 엑셀파일에 연도별로 기입+관련자료 폴더별로 구분
  - 예) DB시스템 구축

▪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 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DB구축 자료 등을 정기모니터링에 보고서에 기록

※ 농업유산 실측, 항공사진분석, 생태환경(생물다양성) 조사 등 전문적 자료측정은 기술모니터링으로 실시(2년 1회)하며, 세부 측정지표는 제시된 지표를 기반으로 사전에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등과 협의

### 1-④ 모니터링 결과 환류

- 두 번째 정기모니터링부터 전년도 총괄내용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모니터링결과를 현장에서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반영된 실적을 제시함

- 이전 모니터링결과를 피드백하여 농업유산 관리에 반영하였습니까?  
✓ 예 → 모니터링 결과와 그에 따른 반영내용을 기술하고 가능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1-⑤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 수립 및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한 실적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에 따라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까?  
✓ 예 → 당해연도 농업유산 관련 예산내역, 연계한 타부처 등 정책사업의 당해연도 예산내역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2.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련된 지표

### 2-①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호) 및 산출량(t), 재배면적(ha)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기록

▪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의 변화

연도	관련 농가수(호)	산출량(t)	재배면적(ha)
2017			
2018			
2019			

※ '연도'의 경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시점이 2020년일 경우, 직전 3개년의 자료를 조사하여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② 전통농업시스템 유지

-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기록할 수 있음
- 관련 작목의 전체 재배면적 또는 농가수가 아니라 전통농업시스템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유산지역의 면적 또는 농가수를 기록할 수 있는 경우, 매년 그 변화를 기록
-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전통농업기술 등을 전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심포지엄, 주민교육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

▪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전통농업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적 또는 농가수나, 전통농업기술을 전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료(심포지엄, 주민교육 등)를 첨부

✓ 아니오 → 첨부서류 불필요

### 2-③ 생물다양성

- 전문가가 기술모니터링(2년 1회) 시 측정한 결과를 첨부

### 2-④ 경관의 변화

-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기록
- 경관조망점은 눈높이에서 대상 농업유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 또는 개발압력이 높은 장소로 정하여 정기적인 촬영을 실시
- 이때 주민협의체, 농업유산운영위원회 등의 자발적 참여 등을 유도하여 협조를 받는 부분을 검토<sup>58)</sup>

-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첨부
  - 경관조망점은 눈높이에서 대상 농업유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 또는 개발압력이 높은 장소로 정하여 정기적인 촬영을 실시

### 2-⑤ 전통문화의 발굴 및 육성(권장지표)

- 전통농경생활문화 발굴 및 전승을 위한 노력도를 기록

- 전통농경생활문화 발굴 및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 ✓ 예 → 전통농경생활문화 관련 행사, 심포지엄 등 자료 첨부
  - ✓ 아니오 → 첨부서류 불필요
- ※ 2-②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기술 가능

### 2-⑥ 자율지표

- 신규로 지정된 농업유산의 경우, 보전관리 기본계획서상에 각각의 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2개를 정하고 정기모니터링에서 이

58) 세부적인 항공도면 분석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모니터링에서 별도로 시행할 예정임. 본 항목은 사람 눈높이에서 바라본 경관 등을 개략적으로 가늠해보고, 관련 주민들의 활동 등을 장려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표임

에 대한 변화상을 기록

- 보전관리 기본계획서 작성이 끝난 6개 농업유산은 정기모니터링 1회 모니터링 시 자율지표 2개를 선정하여 반영하여야 함(농업유산별 자율지표 예시 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표 구성)

<표> 농업유산별 자율지표(예시)<sup>59)</sup>

구분	지표	모니터링방법	비고
청산도 구들장논	휴경논	휴경논의 면적	정량
	통수로와 보의 유지	통수로와 보의 유지상태 기술	정성
	보존기금 마련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기금마련 액수	정량
제주 돌담밭	특별관리권역 의 증가	제주 돌담밭 집중도와 경관이 우수한 군락지를 공모절차를 통해 신규로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면적	정성
	완충지역 설정	농업유산지역 주변의 관리를 위하여 완충지역 설정 유무	정량
	석공기술의 전승	제주 발담 쌓기 장인의 기술복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여부	정성
		신규로 등록된 석공장인의 수	정량
구례 산수유 농업	전통농업 시범구역	전통농업 시범구역 지정 및 활동내역	정성
담양 대나무밭	임도개설	대나무밭 정비를 위해 개설된 임도의 길이	정량
하동 차농업	직불금 대상면적	해당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직불금제도 대상면적	정량
기타	주변건축물 관리	주변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용도, 색채(간판 포함) 등에 대해 기술	정성
	주민만족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 주민만족도(농업유산 인지도 포함) 설문조사	정량

59) 제시된 지표들은 예를 들어 제시한 것임. 실제 지표의 결정은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이 농업유산 지정 목적을 감안하여 자체 협의 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농업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지표

#### 3-① 관련 상품개발

-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1, 2차 상품 및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개발여부를 확인함
- 관련 상품은 농업유산 브랜드를 붙이고 있는 것 뿐 만아니라 관련 문화상품까지 폭넓게 확인함

▪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1, 2차 상품 및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개발이 이루어졌습니까?  
 ✓ 예→ 관련 상품 리스트와 사진 등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3-② 농가소득향상

-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득증가율(%)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기록함

▪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외 소득증가율(%)  
 ✓ 농가소득 증가율(%)=(당해년도 농가소득/전년도 농가소득-1)\*100

연도	전년도 농가소득	당해년도 농가소득	농가소득 증가율(%)
2017			
2018			
2019			

※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을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자료를 조사하여 기록

#### 3-③ 관광객 증가율

-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 전체의 관광객 증가율(%)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록함

▪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  
 √ 관광객수 증가율(%)=(당해년도 관광객수/전년도 관광객수-1)\*100

연도	전년도 관광객수	당해년도 관광객수	관광객수 증가율(%)
2017			
2018			
2019			

※ 당해년도 관광객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을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자료를 조사하여 기록

**3-④ 홍보활동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 언론매체, 홈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내용을 제시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농업유산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언론매체 보도내용,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여부, 발행된 정간물이 있을 경우 첨부, 발행된 홍보물이 있을 경우 이미지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3-⑤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의 활동**

- 주민협의체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비(일반농산어촌 사업 등 타사업) 확보 및 활동내용을 제시

▪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 → 조직구성원의 명단, 활동내용(회의록, 사진 첨부)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 등이 활동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 → 주민 자체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확보금액, 지자체 자체예산 등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3-⑥ 농업유산과 관련된 시설 정비

-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관광기반시설, 주민 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

▪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농업유산 주변 편의시설과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관광기반시설, 주민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 정비규모, 비용 등 내역 등 첨부

✓ 아니오→ 첨부서류 불필요



## 별지 1호] 보전관리기본계획서 상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

## □ 총괄사항

농업유산명 (지정번호)		지정면적(m <sup>2</sup> )	면적
지정연월일		소재지	행정구역
농업유산 관련 마을	마을명(마을수)		
관리담당자	담당부서, 인원, 대표 담당자명, 연락처		
총괄요약	<운영체계>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운영체계의 주요내용		
	<보전>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보전계획의 주요내용		
	<활용> -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활용사업 리스트		

□ 운영체계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관리주체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농업유산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업무계획 업무분장표 등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심포지엄,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교육증빙서류, 회의록, 관련 사진 등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	주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농업유산 운영위원회 조직도, 회의록, 관련 사진 등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관련 조례명, 인센티브, 정책연계사례 등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마을규약 내용, 운영사례 등
	DB구축	농업유산에 대한 실측, 작물현황, 항공사진분석, 경작포기지, 지도제작, 생태환경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기술모니터링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는 지 여부	데이터갱신 회수(회)	기술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갱신내용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DB구축 여부 및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데이터갱신 회수(회)	담당 공무원 데이터 갱신내용	
관리계획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에 따라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산서, 다른 정책사업내용

## 별지 2호] 정기모니터링 보고서 서식

## □ 총괄사항

농업유산명 (지정번호)		지정면적(m <sup>2</sup> )	면적
지정연월일		소재지	행정구역
농업유산 관련 마을	마을명(마을수)		
정기모니터링 일시(기간)		관리담당자	담당부서, 인원, 대표 담당자명, 연락처
총괄요약	<p>&lt;보전&gt;</p> <p>-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현재 보전활동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훼손된 지역, 원인 등에 대한 기술</p>		
	<p>&lt;활용&gt;</p> <p>-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현재 활용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술</p>		
	<p>&lt;운영체계&gt;</p> <p>-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별 현재 운영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술</p>		
	<p>&lt;문제점 및 개선사항&gt;</p> <p>- 예산확보, 농업유산운영위원회, 주민협의체 활동, 유산보전, 활용사업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총괄하여 기술</p>		

□ 보전사항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전통농업	관련 작목의 농가수 및 산출량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의 변화	농가수(호) 산출량(톤) 재배면적(ha)	통계자료
	농업시스템(기술)의 유지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통 농업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유산 지역 면적, 기술 전수 내용 등
생태	생물 다양성	농업유산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상 조사, 개체군 조사, 군집조사, 변화 및 피해상황 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	-	해당년도에 전문가 위탁 기술모니터링 보고서(2년 1회)
경관	경관의 변화	농업유산 내외에 위치한 고정된 경관조망점(2개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촬영한 사진을 제시	사진촬영 후 DB 축적(회)	촬영 위치, 촬영사진
		관련 사진		※ 항공사진 분석 등은 기술모니터링에서 실시
자율지표		각각 농업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구성(2개)	정량/정성	통계자료 등

## □ 활용사항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경제적효과	관련 상품 개발	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련 1, 2차 상품 및 농업유산 관련 문화상품(체험프로그램, 기념품 등) 개발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상품리스트
	농가소득 향상	농업유산지역 주민들의 농업 및 농업 외 소득증가율	소득증가 율(%)	통계자료
	관광객 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증가율 (%)	통계자료
사회문화적효과	홍보활동 으로 인한 지역이미 지 향상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농업유산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언론매체, 홍페이지, 정간물, 홍보물 등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 의 활동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조직구성원 명단, 활동 내용(회의 록, 사진)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 등이 활동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주민 자체 수익사업, 지자체 예산 등
환경적효과	농업유산 과 관련된 시설정비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농업유산 주변 편의시설과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관광기반시설, 주민 생활환경개선, 편의시설 등 정비내용

□ 운영체계

항목	구분	모니터링 내용		첨부서류
관리주체형성	전담지자체 공무원 인력 유무	농업유산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업무계획 업무분장표 등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심포지엄,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교육 증빙서류, 회의록, 관련 사진 등
관리체계	제도적 장치 확충	신규제정 및 기제정 된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관련 조례명, 인센티브, 정책연계사례 등
		농업유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규약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마을규약 내용, 운영사례 등
	DB구축	관련 작목의 농가수, 산출량, 재배면적, 사람눈높이에서 촬영한 경관사진, 농업유산지역의 농가소득, 해당지자체의 관광객수 등에 대한 DB구축 여부 및 1년에 1회 이상 데이터 축적여부	데이터 갱신 회수(회)	담당 공무원 데이터 갱신 내용
	모니터링 결과 환류	이전 모니터링결과를 피드백하여 농업유산 관리에 반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실제 반영한 사례 등
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분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지정 받은 뒤 3년 이후)에 따라 다른 정책사업(일반농산어촌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산서, 다른 정책사업 내용

## 부록 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서의 모니터링 관련 조항(IV~V)

### IV PROCESS FOR MONITOR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 IV.A Reactive Monitoring

##### Definition of Reactive Monitoring

- 169.** Reactive Monitoring is the reporting by the Secretariat, other sectors of UNESCO and the Advisory Bodies to the Committee on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specific World Heritage properties that are under threat. To this end,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specific reports and impact studies each time exceptional circumstances occur or work is undertaken which may have an impact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or its state of conservation. Reactive Monitoring is also foreseen in reference to properties inscribed, or to be inscrib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s set out in paragraphs 177-191. Reactive Monitoring is also foreseen in the procedures for the eventual deletion of properties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as set out in paragraphs 192-198.

Decision 39 COM 11

Thes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iat, using the standard format in Annex 13, in English or French:

- a) by 1 December of the year preceding the examination of the property by the Committee, for the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 b) by 1 February of the year of examination of the property by the Committee, for the properties inscrib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d for specific cases of utmost urgency.

##### Objective of Reactive Monitoring

- 170.** When adopting the process of Reactive Monitoring, the Committee wa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all possibl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deletion of any property from the List and was ready to offer technical co-operation as far as possible to States Parties in this connection.
- 17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States Parties co-operate with the Advisory Bodies which have been asked by the Committee to carry out monitoring and reporting on its behalf on the progress of work undertaken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rticle 4 of the Convention: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recognizes that the duty of ensuring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Articles 1 and 2 and situated on its territory, belongs primarily to that State..."*

##### Information received from States Parties and/or other sources

**172.**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vites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inform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iat, of their intention to undertake or to authorize in an area protected under the *Convention* major restorations or new constructions which may affec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Notice should be given as soon as possible (for instance, before drafting basic documents for specific projects) and before making any decisions that would be difficult to reverse, so that the Committee may assist in seeking appropriate solutions to ensure tha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is fully preserved.

**173.**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quests that reports of missions to review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include:

Decision 27 COM 7B.106

- a) an indication of threats or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since the last report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 b) any follow-up to previous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n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 c) information on any threat or damage to or los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tegrity and/or authenticity for which the property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174.** When the Secretariat receives information that a property inscribed has seriously deteriorated, or that the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within the time proposed, from a source other than the State Party concerned, it will, as far as possible, verify the source and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request its comments.

Decision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175.** The Secretariat will request the relevant Advisory Bodies to forward comments on the information received.

**176.** The information received, together with the comments of the State Party and the Advisory Bodies, wi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in the form of a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for each property, which may tak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teps:

Decision 39 COM 11

- a) it may decide that the property has not seriously deteriorated and that no further action should be taken;
- b) when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property has seriously deteriorated, but not to the extent that its restoration is impossible, it may decide that the property be maintained on the List, provided that the State Party takes the necessary measures to restore the proper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ommittee may also decide that technical co-operation be provided under the World Heritage Fund for work connected with the restoration of the property, proposing to the State Party to request such assistance, if it has not already been done; in some circumstances States Parties may wish to invite an Advisory mission by the relevant Advisory Body(ies) or other organizations to seek advice on necessary measures to reverse deterioration and address threats.



- c) when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s 177-182 are met, the Committee may decide to inscribe the property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s 183-189;
- d) when there is evidence that the property has deteriorated to the point where it has irretrievably lost those characteristics which determined its inscription on the List, the Committee may decide to delete the property from the List. Before any such action is taken, the Secretariat will inform the State Party concerned. Any comments which the State Party may make wi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 e) when the information availabl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Committee to take one of the measures described in a), b), c) or d) above, the Committee may decide that the Secretariat be authorized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ascertain,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operty, the dangers to the property and the feasibility of adequately restoring the property. Such measures may include the sending of a Reactive Monitoring mission or the consultation of specialists, or through an Advisory mission. The Secretariat shall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esults of its action. In case an emergency action is required, the Committee may authorize its financing from the World Heritage Fund through an emergency assistance request.

#### **IV.B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 Guidelines for the inscription of properties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 177.**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paragraph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may inscribe a property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when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 a) the property under consideration is on the World Heritage List;
  - b) the property is threatened by serious and specific danger;
  - c) major operations ar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property;
  - d) assistance under the *Convention* has been requested for the property;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its assistance in certain cases may most effectively be limited to messages of its concern, including the message sent by inscription of a property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d that such assistance may be requested by any Committee member or the Secretariat.

Criteria for the inscription of properties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178.** A World Heritage property - as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e *Convention* - can be inscrib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by the Committee when it finds that the condition of the property corresponds to at least one of the criteria in either of the two cases described below.

**179.** In the case of **cultural properties**:

- a) **ASCERTAINED DANGER** - The property is faced with specific and proven imminent danger, such as:
  - i) serious deterioration of materials;
  - ii) serious deterioration of structure and/or ornamental features;
  - iii) serious deterioration of architectural or town-planning coherence;
  - iv) serious deterioration of urban or rural space, or the natural environment;
  - v) significant loss of historical authenticity;
  - vi) important loss of cultural significance.
- b) **POTENTIAL DANGER** - The property is faced with threats which could have deleterious effects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Such threats are, for example:
  - i) modification of juridical status of the property diminishing the degree of its protection;
  - ii) lack of conservation policy;
  - iii) threatening effects of regional planning projects;
  - iv) threatening effects of town planning;
  - v) outbreak or threat of armed conflict;
  - vi) threatening impacts of climatic, geological or other environmental factors.

**180.** In the case of **natural properties**:

Decision 39 COM 11

- c) **ASCERTAINED DANGER** The property is faced with specific and proven imminent danger, such as:
  - i) A serious decline in the popul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or the other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r which the property was legally established to protect, either by natural factors such as disease or by human-made factors such as poaching.

- ii) Severe deterioration of the natural beauty or scientific value of the property, as by human settlement, construction of reservoirs which flood important parts of the property, industri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cluding use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major public works, mining, pollution, logging, firewood collection, etc.
  - iii) Human encroachment on boundaries or in upstream areas which threaten the integrity of the property.
  - d) POTENTIAL DANGER The property is faced with major threats which could have deleterious effects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Such threats are, for example:
    - i) a modification of the legal protective status of the area;
    - ii) planned resettlement or development projects within the property or so situated that the impacts threaten the property;
    - iii) outbreak or threat of armed conflict;
    - iv) the management plan or management system is lacking or inadequate, or not fully implemented.
    - v) threatening impacts of climatic, geological or other environmental factors.
- 181.** In addition, the threats and/or their detrimental impacts on the integrity of the property must be those which are amenable to correction by human action. In the case of cultural properties, both natural factors and human-made factors may be threatening, while in the case of natural properties, most threats will be human-made and only very rarely a natural factor (such as an epidemic disease) will threaten the integrity of the property. In some cases, the threats and/or their detrimental impacts on the integrity of the property may be corrected b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ction, such as the cancelling of a major public works project or the improvement of legal status.
- 182.** The Committee may wish to bear in mind the following supplementary factors when considering the inclusion of a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i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 a) Decisions which affect World Heritage properties are taken by Governments after balancing all factors. The advice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can often be decisive if it can be given before the property becomes threatened.
  - b)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scertained danger, the physical or cultural deteriorations to which a property has been subjected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its effects and analyzed case by case.

Decision 39 COM 11



- c) Above all in the case of potential danger to a property, one should consider that:
  - i) the threat should be appraised according to the normal evolu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framework in which the property is situated;
  - ii) it is often impossible to assess certain threats such as the threat of armed conflict as to their effect on cultural or natural properties;
  - iii) some threats are not imminent in nature, but can only be anticipated, such as demographic growth.
- d) Finally, in its appraisal the Committee should take into account any cause of unknown or unexpected origin which endangers a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Procedure for the inscription of properties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 183.** When considering the inscription of a property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the Committee shall develop, and adopt, as far as possible,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a Desired state of conservation for the removal of the property from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d a programme for corrective measures.
- 184.**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me of corrective measures referred to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Committee shall request the Secretariat to ascertain, as far as possible in co-oper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operty, the dangers to the property and the feasibility of undertaking corrective measures. The Committee may further decide to send a Reactive Monitoring mission from the relevant Advisory Bodies or other organizations to visit the property, evaluate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threats and propose the measures to be taken. In some circumstances, the State Party may wish to invite an Advisory mission to provide advice and guidance.
- 185.** The information received, together with the comments as appropriate of the State Party and the relevant Advisory Bodies or other organizations, wi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by the Secretariat.
- 186.** The Committee shall examine the information available and take a decision concerning the inscription of the property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y such decis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Committee members present and voting. The Committee will then define the programme of corrective action to be taken. This programme will be proposed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for immediate implementation.
- 187.** The State Party concerned shall be informed of the Committee's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the decision shall immediately be issued by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4 of the *Convention*.
- 188.** The Secretariat publishes the updated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in printed form and is also available at the following Web address:  
<http://whc.unesco.org/en/danger>

Decision 39 COM 11

189. The Committee shall allocate a specific, significant portion of the World Heritage Fund to financing of possible assistance to World Heritage properties inscrib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Regular review of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properties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190. The Committee shall review annually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properties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This review shall include such monitoring procedures and expert missions as might be determined necessary by the Committee.
191. On the basis of these regular reviews, the Committee shall decide,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whether:
- a) addi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conserve the property;
  - b) to delete the property from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if the property is no longer under threat;
  - c) to consider the deletion of the property from both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d the World Heritage List if the property has deteriorated to the extent that it has lost those characteristics which determined its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s 192-198.

**IV.C Procedure for the eventual deletion of properties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192. The Committee adopted the following procedure for the deletion of properties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in cases:
- a) where the property has deteriorated to the extent that it has lost those characteristics which determined its inclusion i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 b) where the intrinsic qualities of a World Heritage site were already threatened at the time of its nomination by human action and where the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as outlined by the State Party at the time, have not been taken within the time proposed (see paragraph 116).
193. When a propert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has seriously deteriorated, or when the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within the time proposed, the State Party on whose territory the property is situated should so inform the Secretariat.
194. When the Secretariat receives such information from a source other than the State Party concerned, it will, as far as possible, verify the source and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request its comments.
195. The Secretariat will request the relevant Advisory Bodies to forward comments on the information received.

Decision 39 COM 11

196. The Committee will examine all the information available and will take a decision. Any such decision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8) of the *Convention*, be taken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its members present and voting. The Committee shall not decide to delete any property unless the State Party has been consulted on the question.
197. The State Party shall be informed of the Committee's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this decision shall be immediately given by the Committee.
198. If the Committee's decision entails any modificat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this modification will be reflected in the next updated List that is published.

## V PERIODIC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V.A Objectives

199. States Parties are requested to submit reports to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through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s which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located on their territories.
200. States Parties may request expert advice from the Advisory Bodies and the Secretariat, which may also (with agreement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commission further expert advice.
201. Periodic Reporting serves four main purposes:
-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by the State Party;
  - to provide an assessment as to whether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s being maintained over time;
  - to provide up-date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to record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state of conservation of the properties;
  - to provide a mechanism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between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World Heritage conservation.
202. Periodic Reporting is important for more effective long term conservation of the properties inscribed,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29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Resolutions of the 11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1997) and the 29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V.B Procedure and Format

203. World Heritage Committee:
- adopted the Format and Explanatory Notes set out in Annex 7;

Decision 22 COM VI.7



- b) invited States Parties to submit periodic reports every six years;
- c) decided to examine the States Parties' periodic reports region by reg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table:

Region	Examination of properties inscribed up to and including	Year of Examination by Committee
Arab States	1992	December 2000
Africa	1993	December 2001/July 2002
Asia and the Pacific	1994	June-July 2003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95	June-July 2004
Europe and North America	1996/1997	June-July 2005/2006

- d) requested the Secretariat, jointly with the Advisory Bodies, and making use of States Parties, competent institutions and expertise available within the region, to develop regional strategies for the periodic reporting process as per the timetable established under c) above.

**204.** The above-mentioned regional strategies should respond t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and should promote co-ordination and synchronization between States Partie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ransboundary properties. The Secretariat will consult States Partie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ose regional strategies.

**205.** After the first six-year cycle of periodic reports, each region will be assessed again in the same order as indicated in the table above. Following the first six-year cycle, there may be a pause for evaluation to assess and revise the periodic reporting mechanism before a new cycle is initiated.

**206.** The Format for the periodic reports by the States Parties consists of two sections:

- a) **Section I** refers to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ich the State Party has adopted and other actions which it has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is field. This particularly concerns the general obligations defined in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 b) **Section II** refers to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specific World Heritage properties located o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This Section should be completed for each World Heritage property.

This Format was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22nd session (Kyoto 1998) and may be revised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first cycle of Periodic Reporting in 2006. For this reason, the Format has not been revised.

Explanatory Notes are provided with the Format in Annex 7.

207. In order to facilitate management of information, States Parties are requested to submit reports, in English or French, in electronic as well as in printed form to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Tel: +33 (0)1 45 68 12 76

Email: wh-info@unesco.org

**V.C Evaluation and Follow Up**

208. The Secretariat consolidates national reports into Regional State of the World Heritage reports, which are available in electronic format at the following Web address <http://whc.unesco.org/en/publications> and in paper version (series World Heritage Papers).
209.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carefully reviews issues raised in Periodic Reports and advises the States Parties of the regions concerned on matters arising from them.
210. The Committee requested the Secretariat with the Advisory Bodies,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States Parties, to develop long-term follow-up Regional Programmes structured according to its Strategic Objectives and to submit them for its examination. These Programmes are adopted as follow up to Periodic Reports and regularly reviewed by the Committee based on the needs of States Parties identified in Periodic Reports. They should accurately reflect the needs of World Heritage in the Region and facilitate the granting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he Committee also expressed its support to ensure direct links between the Strategic Objectives and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Decision 36 COM 13.I



### 부록 3.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전문

제정 2016. 03. 28. 문화재청 훈령 제392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문화재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 문화재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건축물류 문화재를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문화재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의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조사주기 및 대상)** ①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 대상문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2. 건물 안에 있는 건축물류 문화재(국보, 보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4. 천연기념물(동·식물종은 제외) 및 명승
  5.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문화재
  6.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문화재
- ② 제1항의 문화재 외에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건축물류) 및 사적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 ③ 모니터링·정밀조사·안전진단·보수정비가 진행중인 문화재 및 비공개 문화재(지역)는 동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재 유형별·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대상문화재 목록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장 정기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4조(정기조사 계획수립)** 정기조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대상 문화재
2. 조사내용 : 문화재 유형별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
3.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
4. 계절, 조사환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
5. 직전 정기조사 결과 보수 등 조치 현황
6.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제5조(조사방법 및 절차)** ① 문화재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변위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문화재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

③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분석)** 정기조사를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1차)
2. 재조사 결과
3.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제7조(조사결과 보고)**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예산
2. 조사결과 분석 : 제6조에 따른 결과 분석, 제9조에 따른 등급분류 등
3. 조사결과 조치계획 : 제10조에 따른 후속조치 등
4. 향후 정기조사 계획

**제8조(조사결과 통보)** 정기조사를 주관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소유자, 관리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사결과 분류 및 후속조치

**제9조(조사결과 등급분류)**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A(양호) :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재
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제10조(후속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결과를 법 제44조 제7항에 따라 수리 및 복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수·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2. 정밀진단·정밀실측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3.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
  4. 종합정비계획 수립
  5. 현황조사 또는 지표·발굴조사
- ② 정기조사 결과를 문화재 보존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별 보존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정기조사 자문위원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정기조사를 주관하거나 실시한 부서는 정기조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문화유산·자연유산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전문가는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정기조사 자문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임무)**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기조사 재조사에 관한 사항
2.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3.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조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검토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검토 대상 안전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정기조사 업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검토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검토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기 타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92호, 2016.03.28.>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문

[시행 2015.10.06.]

(제정) 2013-07-26 조례 제 1079호

(일부개정) 2015-10-06 조례 제 14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 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농어업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유산의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 농어업유산 관리업무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의 된다. <개정 2015.10.6.>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농어업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및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12.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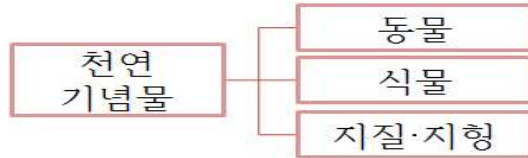
부칙 <제1417호, 2015.10.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부록 5. 천연기념물 정기조사 서식 매뉴얼

-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지형으로 구성된다.



▲ 천연기념물 유형별 세부사항

### 1. 총괄사항 작성 요령

총괄사항은 일반사항, 조사결과로 구성된다. 각각의 조사사항에 대해 기입한다.

- 일반사항**

문화재의 일반사항은 정기조사 시행 전에 당해 문화재의 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으로 문화재명, 지정번호, 면적, 보호구역, 지정연월일, 소유자, 소재지, 관리자/관리단체, 정비·보수 내역을 포함한다. 각 항목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항목	작성 요령
문화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명은 문화재청의 지정명칭을 기준으로 기입한다.</li> </ul> 예시)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지정번호 (지정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의 지정번호 및 지정유형을 기입한 후 한 칸 띄어쓰기 한다.</li> <li>지정번호의 앞은 붙여쓰기 한다.</li> </ul> 예시) 천연기념물 제1호 (노거수, 수림지, 자생지)
지정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의 지정면적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li> <li>기본 단위는 m<sup>2</sup>로 한다.</li> </ul> 예시) 100,000m <sup>2</sup>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의 보호구역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li> <li>기본 단위는 m<sup>2</sup>로 한다. 예시) 200,000m<sup>2</sup></li> </ul>								
지정 연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 연, 월, 일은 전체를 기입한 후 숫자 뒤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어쓰기 한다.</li> <li>월, 일이 한 자리 숫자일 경우 앞에 0을 기입한다. 예시) 2015.01.01.</li> </ul>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명 / 주소지 순으로 기입한다.</li> <li>도로명 주소(신 주소)를 사용한다.</li> <li>주소는 길까지 기입한다.</li> <li>주소 체계의 사이에는 한 칸 띄어쓰기 한다. 예시) 문화재청~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li> </ul>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는 소유자의 주소 양식과 동일하다.</li> <li>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시)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li> </ul>								
관리자/관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자 작성 요령과 동일하다. 예시) 문화재청~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li> </ul>								
정비·보수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5년간의 정비·보수 내역을 기입한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시행연도</td> <td>시행된 연도를 기입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산</td> <td>정비·보수 내역에 사용된 예산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행처</td> <td>해당 정비·보수의 시행처(업체)를 기입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비·보수 내용</td> <td>정비·보수에 관한 주요 사업내용을 기입한다.</td> </tr> </table> <p>예시) 2015.01. // ○○건설 // 폭설로 유실된 탐방로 정비</p>	시행연도	시행된 연도를 기입한다.	예산	정비·보수 내역에 사용된 예산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시행처	해당 정비·보수의 시행처(업체)를 기입한다.	정비·보수 내용	정비·보수에 관한 주요 사업내용을 기입한다.
시행연도	시행된 연도를 기입한다.								
예산	정비·보수 내역에 사용된 예산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시행처	해당 정비·보수의 시행처(업체)를 기입한다.								
정비·보수 내용	정비·보수에 관한 주요 사업내용을 기입한다.								

▲ 천연기념물 총괄사항\_일반사항

▪ 조사결과(육안에 의한 조사)

당해 문화재의 보존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각 조사항목(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개체관리, 훼손·변형, 오염, 불법행위 방지활동, 특기사항)의 결과를 기입한다.

- 당해 문화재에 5년 이내(다음 정기조사 전)로 심각한 훼손우려가 높은 요인을 상세히 기입한다.

항목	작성 요령
자연환경	• 당해 문화재의 지질·지형, 주위환경, 접근성, 수계환경, 자연 식생, 생물상 등의 상태를 종합한 결과를 기입한다.
문화재 구역관리	• 당해 문화재의 통제구역(공개제한지역), 토지이용 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해요인, 주변환경(인위적 요소)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기입한다.
생육실태	• 동물, 식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당해 문화재의 개체 수, 증감, 병충해, 결손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기입한다.
훼손·변형	• 당해 문화재 내 훼손·변형이 일어난 요인 및 내용을 종합하여 기입한다.
오염	• 당해 문화재 내 오염이 일어난 요인 및 내용을 종합하여 기입 한다.
불법행위 방지활동	• 당해 문화재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방지활동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입한다.
특기사항	• 소방 및 안전관리, 안내 및 전시시설, 주변 및 부대시설 등 관리 사항의 특기사항을 종합하여 기입한다.
조사자 종합의견	•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을 작성한다.
조사일시	• 지정연월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입한다. 예시) 2015.01.01.
조사자	• 조사자의 소속을 기입한 후 한 칸 띄어쓰기 한다. • 조사자의 이름을 한 칸 띄운 후 기입한다. 예시) 문화재청~소속 // 성명~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천연기념물 총괄사항\_조사결과(육안에 의한 조사)

### 3) 보존사항

동물, 식물, 지질·지형으로 구성된다.

동·식물의 경우 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개체관리(생육실태), 훼손·변형, 오염, 불법행위 방지활동 등 6개 조사항목으로 나누어지며, 지질·지형은 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훼손·변형, 오염, 불법행위 방지활동 등 5개 항목으로 나눈다.

#### ▪ 식물

식물은 자연환경, 문화재 구역관리, 생육실태, 훼손·변형, 오염, 불법행위 방지활동 6개 조사항목으로 나눈다.

① 자연환경 : 주위환경, 접근성, 수계환경, 주요식생

② 문화재 구역관리 : 통제구역(공개제한지역), 토지이용, 방해요인, 주변환경(인위적 요소)

③ 개체관리 : 개체수, 증감, 병충해, 수형 및 활력도, 기타

④ 훼손·변형      ⑤ 오염      ⑥ 불법행위 방지활동

항목		작성 요령
자연환경	지질·지형	• 당해 문화재의 지질·지형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주위환경	• 당해 문화재의 주위 자연환경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접근성	• 자연환경의 접근성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수계환경	• 당해 문화재 인근의 계곡 등 수계환경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주요식생	• 당해 문화재 인근의 자연식생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문화재구역관리	통제구역	• 문화재구역 내 통제구역(공개제한지역)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토지이용	•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방해요인	• 문화재구역 내 방해요인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주변환경(인위적요소)	• 문화재구역 내 인위적 주변환경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한다.
생육실태	개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명과 수량을 각 항목에 기입한다.</li> <li>• 내용에는 해당 수종의 수령, 흉고둘레, 수고 등의 순으로 기본사항을 기입한다. 예시) 팽나무 // 1 // 수령불명, 흉고둘레 : 3.14m, 수고 : 19m]</li> <li>• 노거수를 제외한 천연기념물(식물)의 경우 방형구조사를 통한 식생 조사를 실시하고, 방형구 위치에 대하여 GPS 좌표 및 도면을 첨부한다. (방형구의 면적은 100㎡를 기본으로 하되 조사대상지 면적 및 수목·초본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li> </ul>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명과 수량을 각 항목에 기입한다.</li> <li>• 내용에는 해당 수종의 현황을 기입하며 증감하였을 경우 증감의 원인 등 증감과 관련된 내용을 기입한다. 예시) 팽나무 // 1 // 변화없음</li> <li>• 노거수를 제외한 천연기념물(식물)의 증감 정도는 조사 방형구내 수립지 증감 변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li> </ul>

생 육 실 태	병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충해 명과 부위를 각 항목에 기입하고 발생한 수목의 수량또는 발생정도(심함, 중간, 경함)을 기입한다.</li> <li>• 내용에는 보이는 형태 및 현황을 서술한다.</li> <li>• 특기사항에는 현재 치료 유무를 파악하여 기입한다.</li> </ul> <p>예시) 식물단저병 // 잎 // 1(심함) // 일부 잎에 분생포자 발견 // 치료중</p>
	수형 및 활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부위와 결손이 발생한 개체수 또는 발생정도(심함,중간,경함) 를 각 항목에 기입한다.</li> <li>• 결손부위_①굵은 가지, ②잔가지, ③수관, ④줄기, ⑤뿌리</li> <li>• 관리 대상 개체의 결손에 대해 기입한다.</li> <li>• 내용은 개체의 상태, 위치, 원인 순으로 기입한다.</li> <li>• 내용은 개체의 상태에 대해서 기입한다.</li> </ul> <p>상태_①부러짐, ②휘어짐, ③공동, ④벗겨짐</p> <p>예시) 수관 // 1 // 벗겨짐/하부 10cm가량/외력에 의한 결손으로 보임</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내용 외 당해 문화재에 대해 기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한다.</li> </ul> <p>예시) **위치에서 발견되어 현재 장소로 이동</p>
훼손·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내 훼손·변형이 일어난 이유와 내용을 기입한다.</li> </ul>	
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문화재의 오염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며, 오염이 일어 났을 경우 오염원 혹은 오염이유를 기입한다.</li> </ul> <p>예시) 쓰레기 //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 다수 발견 // -</p>	
불법행위 방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문화재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방지활동에 대한 활동명, 관리 단체, 목적 등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작성한다.</li> </ul>	
보수정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에 따른 상시관리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관련 내용을 기입한다.</li> </ul> <p>예시) 총6회(정기 1회, 간이 5회, 기간 : 3~11월)</p>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입한다.</li> </ul>	

▲ 천연기념물 보존사항\_식물



## 부록 6.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전문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7 October to 21 November 1972, at its seventeenth session, 1972년 10월17일부터 11월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7차 유네스코 총회는,

*Noting* that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ural heritage are increasingly threatened with destruction not only by the traditional causes of decay, but also b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aggravate the situation with even more formidable phenomena of damage or destruction,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전통적인 쇠퇴 원인뿐만 아니라 한층 심한 손상 또는 파괴를 수반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유의하고,

*Considering* that deterioration or disappearance of any item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constitutes a harmful impoverishment of the heritage of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어떠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퇴락 또는 소실도 세계 모든 국가 유산의 유해한 빈곤화를 초래함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protection of this heritage at the national level often remains incomplete because of the scale of the resources which it requires and of the insufficient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ource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perty to be protected is situated,

이 유산의 국내적 차원의 보호가 이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보호될 재산이 위치하는 국가의 불충분한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원으로

로 인하여 종종 불완전하게 됨을 고려하고,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provides that it will maintain, increase, and diffuse knowledge, by assuring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world's heritage, and recommending to the nations concerned the necessary international conventions,

동 기구가 세계의 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확보하고, 관계 제 국가에 대하여 필요 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지식을 유지, 증진 및 보급 할 것을 동 기구의 헌장이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Considering*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concerning cultural and natural property demonstrate the importance, for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f safeguarding this unique and irreplaceable property, to whatever people it may belong,

문화재 및 자연재에 관한 현행 국제협약, 권고 및 결의가 이러한 진 기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재산을, 그것이 어느 인민에 속하는지를 막론 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명 백히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parts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are of outstanding interest and therefore need to be preserved as part of the world heritage of mankind as a whole,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in view of the magnitude and gravity of the new dangers threatening them, it is incumben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y the granting of collective assistance which, although not taking the

place of action by the State concerned, will serve as an efficient complement thereto,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의 거대 함과 중대함에 비추어, 관계국에 의한 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유효한 보충적 수단이 될 공동원조를 부여함으로써 동 유산의 보호에 참여하는 일이 국제사회 전체에 의무로서 지워져 있음을 고려하고,

*Considering* that it is essential for this purpose to adopt new provisions in the form of a convention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collectiv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rganized on a permanent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modern scientific methods,

이를 위하여 항구적 기초 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조직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함을 고려하고,

*Having decided*, at its six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제 16차 총회에 이 문제가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될 것을 결정한 바,

*Adopts* this sixteenth day of November 1972 this Convention.

1972년 11월 16일 본 협약을 채택한다.

## I. Defini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 Article 1 / 제 1 조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ultural heritage":

본 협약의 목적상 '문화유산'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monuments:** architectural works, works of monumental sculpture and painting, elements or structures of an archaeological nature, inscriptions, cave dwellings and combinations of featur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있는 유산;

**groups of buildings:** groups of separate or connected buildings which, because of their architecture, their homogeneity or their place in the landscape,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건축물군: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sites:** works of man or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man, and areas including archaeological sit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historical, aesthetic, ethnological or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 Article 2 / 제 2 조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natural heritage":

본 협약의 목적상 '자연유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natural features** consisting of physical and biological formations or groups of such formation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aesthetic or scientific point of view;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geological and physiographical formations** and precisely delineated areas which constitute the habitat of threaten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natural sites** or precisely delineated natural area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conservation or natural beauty.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 Article 3 / 제 3 조

It is for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to identify and delineate the different properties situated on its territory mentioned in Articles 1 and 2 above.

각 협약가입국은 위의 제 1조 및 제 2조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 위치한 여러 유산을 조사 및 파악한다.

## II. Nation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I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 Article 4 / 제 4 조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recognizes that the duty of ensuring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Articles 1 and 2 and situated on its territory, belongs primarily to that State. It will do all it can to this end, to the utmost of its own resources and, where appropriate, with any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particular, financial, artistic, scientific and technical, which it may be able to obtain.

각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의 정의에 따라 자국내에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활용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자국에 과하여진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협약가입국은 자국이 갖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또 적당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한도의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 예술, 과학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Article 5 / 제 5 조**

To ensure that effective and active measures are taken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ituated on its territory,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endeavor, in so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각 협약가입국은 자국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효과적 또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국에 적합한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to adopt a general policy which aims to give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 function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and to integrate the protection of that heritage into comprehensive planning programmes;

(1)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지역개발계획에 유산 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한다;

(2) to set up within its territories, where such services do not exist, one or more services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ith an appropriate staff and possessing the means to discharge their functions;

(2)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직원체제를 갖추어 특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1 또는 2 이상 자국 내에 설치한다;

(3) to develop scientific and technical studies and research and to work out such operating methods as will make the State capable of counteracting the dangers that threaten its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3) 학문적,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작성한다;

(4) to take the appropriate legal, scientific,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is heritage; and

(4)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5) to foster the establishment or development of national or regional centres for training in the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to encourage scientific research in this field.

(5)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훈련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한다.

## Article 6 / 제 6 조

1. Whilst fully resp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on whose territory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mentioned in Articles 1 and 2 is situated, and without prejudice to property right provided by national legislation,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such heritage constitutes a world heritage for whose protection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co-operate.

1.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 따라서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유산이 영토 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은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고 또 국내법이 정한 재산권은 해치지 아니한다.

2.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give their help in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if the States on whose territory it is situated so request.

2. 협약가입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제 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해당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요청에 응해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한다.

3.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not to take any deliberate measures which might damage directly or indirectly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ferred to in Articles 1 and 2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3. 각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 다른 협약가입국의 영토내에 위치하는 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조치를 고의로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Article 7 / 제 7 조**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designed to support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their efforts to conserve and identify that heritage.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협약가입국이 행하는 유산의 보존 및 지정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보내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체제의 확립을 말한다.

**III.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II.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Article 8 / 제 8 조**

1.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alle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t shall be composed of 15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lected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in general assembly during the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number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increased to 21 as from the date of the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at least 40 States.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정부 간 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를 유네스코에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유네스코 정기총회중에 개최되는 협약가입국 회의에서 선출되는 15개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위원국 수는 협약 가입국수가 적어도 40개국을

넘어설 경우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부터 21개국으로 증가한다.

2. Election of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ensure an equitabl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regions and cultures of the world.

2. 위원국 선출은 전 세계의 상이한 지역 및 문화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한다.

3.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CROM),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ICOMOS) and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to whom may be added, at the request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in general assembly during the ordinary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of other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similar objectives, may attend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in an advisory capacity.

3. 이 위원회의 회의에는 국제문화재보존 및 보수연구센터 (로마센터)의 대표 1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대표 1인 및 국제자연보호연합의 대표 1인이 협약 협약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협약가입국 정기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 혹은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도 자문역으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 **Article 9 / 제 9 조**

1. The term of office of States 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extend from the end of the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during which they are elected until the end of its third subsequent ordinary session.

1.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에 선출된 정기총회 종료

일로부터 3번째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6년간).

2. The term of office of one-third of the members designated at the time of the first election shall, however, cease at the end of the first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at at which they were elected; and the term of office of a further third of the members designated at the same time shall cease at the end of the second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following that at which they were elected. The names of thes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fter the first election.

2.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의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후에 개최되는 최초의 정기총회 회기의 종료일에 끝나고, 또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의 다른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행해진 정기총회의 통상회기의 말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의 선거후에 유네스코 총회의장이 행하는 추천에 의해서 결정한다.

3.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hoose as their representatives persons qualified in the field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3. 이 위원회의 위원국은 자국의 대표로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 **Article 10 / 제 10 조**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1.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The Committee may at any time invite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its meetings for consultation on particular problems.

2. 동 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 혹은 개인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가 있다.

3. The Committee may create such consultative bodies as it deem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3. 동 위원회는 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협의 기구를 창설할 수 있다.

### **Article 11 / 제 11 조**

1. Ever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in so far as possible, submit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 inventory of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ituated in its territory and suitable for inclusion in the list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is inventory, which shall not be considered exhaustive, shall include documentation about the location of the property in question and its significance.

1. 협약가입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 영토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중 동 조항 제2항에 의거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목록제출에는 해당 유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On the basis of the inventories submitt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under the title of "World Heritage List," a list of properties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as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is Convention, which it considers a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erms of such criteria as it shall have established. An updated list shall be distributed at least every two years.

2. 동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협약가입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유물로, 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목록(세계유산목록이라고 칭함)를 작성하여 매년 갱신하여 공포한다. 최신 목록은 적어도 1년에 1회 배포된다.

3. The inclusion of a property in the World Heritage Lis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State concerned. The inclusion of a property situated in a territory,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ver which is claimed by more than one State shall in no way prejudice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3.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해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 내에 존재하는 유산의 등록은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whenever circumstances shall so require, under the title of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 list of the property appearing in the World Heritage List for the conservation of which major operations are necessary and for which assistance has been requested under this Convention. This list shall contain an estimate of the cost of such operations. The list may include only such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s is threatened by serious and specific dangers, such as the threat of disappearance caused by accelerated deterioration, large-scale public or private projects or rapid urban or tourist development projects; destruction caused by changes in the use or ownership of the land; major alterations due to unknown causes; abandonment for any reason whatsoever; the outbreak or the threat of an armed conflict; calamities and cataclysms; serious fires, earthquakes, landslides; volcanic eruptions; changes in water level, floods and tidal waves. The Committee may at any time, in case of urgent need, make a

new entry i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nd publicize such entry immediately.

4.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된 유산중 주요 보존작업이 요하고 이 협약에 의거 지원을 요청한 유산을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갱신하고 공포한다. 이 목록에는 보호작업에 요청되는 경비의 견적을 포함시킨다. 이 목록에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유산만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 위험으로 손괴가 진행됨에 따른 멸실의 위험, 대규모 공적 또는 사적 공사, 급격한 도시 개발 또는 관광 개발을 위한 공사,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동에 기인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 무력 분쟁의 발생 또는 위협, 재난 및 대변동, 대화재, 지진, 산사태, 화산 분출, 수위의 변화, 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라도 긴급시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에 새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대해 즉시 공포한다.

5. The Committee shall define the criteria on the basis of which a property belonging to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may be included in either of the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5. 동 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될 유산의 등재 기준을 정한다.

6. Before refusing a request for inclusion in one of the two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the Committee shall consult the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6. 동 위원회는 제 2항 및 제 4항에 언급된 목록 중 어떤 것이든 그 등재를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자연 및 문화유산이 위치한 협약 가입국의 의견을 구한다.

7.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greement of the States

concerned, co-ordinate and encourage the studies and research needed for the drawing up of the list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7. 동 위원회는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 Article 12 / 제 12 조

The fact that a property belonging to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has not been included in either of the two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shall in no way be construed to mean that it does not have a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resulting from inclusion in these lists.

제 11조의 제 2항 또는 4항에 따라 어느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타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유산보다 덜 뛰어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Article 13 / 제 13 조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receive and study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ormulated by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situated in their territories, and included or potentially suitable for inclusion in the lists mentioned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The purpose of such requests may be to secure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or rehabilitation of such property.

1.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제 11조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또 기재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때, 협약가입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 검토한다. 이 요청은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또는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2.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lso be concerned with identification of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defined in Articles 1 and 2, when preliminary investigations have shown that further inquiries would be justified.

2. 또 예비조사의 결과로 좀 더 조사할 가치가 인정될 경우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의 지정을 위해 제 항의 국제적 원조의 요청이 받아들일 수 있다.

3. The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action to be taken with regard to these requests, determine where appropriate, the nature and extent of its assistance, and authorize the conclusion, on its behalf, of the necessary arrangements with the government concerned.

3. 동 위원회는 그 요청에 대해 취할 행동, 나아가서 적당한 경우에는 지원의 성격 및 정도를 결정하며, 스스로 관련 정부와 필요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위임을 부여받는다.

4.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an order of priorities for its operations. It shall in so doing bear in mind the respective importance for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the property requiring protection, the need to give international assistance to the property most representative of a natural environment or of the genius and the history of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urgency of the work to be done,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 States on whose territory the threatened property is situated and in particular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able to safeguard such property by their own means.

4. 동 위원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순위의 결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각 유산의 중요성과 자연 환경 또는 세계 모든 국민의 창조성과 역사를 무엇보다도 잘 대표하는 유산에 대해서 국제적 원조를 줄 필요성, 보존작업의 긴급성 및 위협에 처해 있는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능력, 특히 그 국가가 해당 유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한다.



5. The Committee shall draw up, keep up to date and publicize a list of property for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has been granted.

5. 동 위원회는 국제지원이 이루어진 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늘 갱신 공포한다.

6. The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use of the resources of the Fund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of this Convention. It shall seek ways of increasing these resources and shall take all useful steps to this end.

6. 동 위원회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금의 자금 용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자금을 증액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한다.

7. The Committee shall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ing objectives similar to those of this Conven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grammes and projects, the Committee may call on such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Rome Centre),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ICOMOS)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as well as on public and private bodies and individuals.

7.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있는 국제기관, 국내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동 위원회는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국제문화재보존 및 보수연구센터 (로마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국제자연보호연합 및 많은 공사 단체 혹은 개인의 지원을 구한다.

8.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its members present and voting.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onstitute a quorum.

8.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투표 위원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행해진다. 동 위원회의 모든 회합에는 과반수의 위원국이 출석하여야 한다.

#### **Article 14 / 제 14 조**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be assisted by a Secretariat appoin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tilizing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the serv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the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Rome Centre),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ICOMOS)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competence and capability, shall prepare the Committee's documentation and the agenda of its meetings and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decisions.

2.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국제문화재보존 및 복원연구센터 (로마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며 동 위원회의 서류 및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그 결의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 **IV. 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IV.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 **Article 15 / 제 15 조**

1. A 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alled "the World Heritage Fund", is hereby established.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한 기금, 즉 '세계유산기금' 을 설립한다.

2. The Fund shall constitute a trust fun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의한 신탁 기금으로 한다.

3. The resources of the Fund shall consist of:

3. 기금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compulsory and voluntary contributions made by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 협약가입국의 의무 분담금 및 자발적 기부금;

(b) Contributions, gifts or bequests which may be made by:

(b) 다음과 같은 기관의 기증, 증여, 유증:

(1) other States;

(1) 협약가입국 이외의 국가;

(2)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ther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particularl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r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2) 유네스코, 유엔의 여타 기구 특히 유엔개발계획, 그 외의 정부간 기구;

(3) public or private bodies or individuals;

(3) 공적 또는 사적 기관 및 개인;

(c) any interest due on the resources of the Fund;

(c) 기금의 자금으로부터의 이자;

(d) funds raised by collections and receipts from events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fund; and

(d) 모금 및 기금을 위해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e) all other resources authorized by the Fund's regulations, as drawn up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그 외의 모든 자금.

4. Contributions to the Fund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made available to the Committee may be used only for such purposes as the Committee shall define. The Committee may accept contributions to be used only for a certain programme or project, provided that the Committee shall have decided on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gramme or project. No political conditions may be attached to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에 대한 그 외의 형식에 위한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한다. 동 위원회는 특정의 사업 용도에 한해서 기부 받을 수가 있다. 단, 그 사업은 동 위원회가 이미 실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기금에 대한 기부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일 수가 없다.

#### **Article 16 / 제 16 조**

1. Without prejudice to any supplementary voluntary contribution,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pay regularly, every two years, to the World Heritage Fund, contributions, the amount of which, in the form of a uniform percentage applicable to all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ing during the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is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quires the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which have not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 no case shall the compulsory contribu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exceed 1% of the contribution to the regular budget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 협약가입국은 추가된 자발적 후원금에 관계없이 매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세계유산 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분담금의 액수는 유네스코의 정기총회 중에 개최되는 협약가입국 회의에서 모든 협약가입국에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로 결정한다. 협약가입국 회의에서의 이 결정에는 과반수 이상의 협약가입국의 출석 및 투표를 요한다. 협약가입국의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의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However, each State referred to in Article 31 or in Article 32 of this Convention may declare, at the tim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hat it shall not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2. 제 31조 및 제 32조에 규정된 각국은 자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기탁함에 있어 제 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3.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has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e said declaration by notifying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owever, the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shall not take effect in regard to the compulsory contribution due by the State until the date of the subsequent 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3. 본 조의 2항의 선언을 행한 협약가입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는 것으로 언제나 그 선언을 철회할 수가 있다. 단, 선언의 철회는 그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분담금이 있을 경우 차기 협약가입국 회

의의 기일까지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4. In order that the Committee may be able to plan its operations effectively, the contributions of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have made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paid on a regular basis, at least every two years, and should not be less than the contributions which they should have paid if they had been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본 조의 2항의 선언을 행한 협약가입국의 분담금은 동 위원회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또 그 금액은 제 8항의 규정에 구속될 경우에 지불해야 할 분담금액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5. Any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is in arrears with the payment of its compulsory or voluntary contribution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preceding it shall not be eligible as a Member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lthough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the first election.

5. 해당 년도분 및 전년도(역년에 의함)분의 분담금 또는 자발적 후원금의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협약가입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The terms of office of any such State which is already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terminate at the time of the elec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8,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단, 이 규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협약가입국으로서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국가의 임기는 제 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 때에 종료한다.

#### **Article 17 / 제 17 조**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consider or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ublic and private foundations or associations whose purpose is to invite don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s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is Convention.

협약가입국은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부를 구할 것을 목적으로 공사 재단 또는 단체의 설치를 고려하고 장려한다.

#### **Article 18 / 제 18 조**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give their assistance to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s organized for the World Heritage Fun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y shall facilitate collections made by the bodies mentioned in paragraph 3 of Article 15 for this purpose.

협약가입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위해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조직되는 국제적인 모금 운동에 대해 원조를 주도록 하고 또 제 15조 제 항에 규정된 기관이 행하는 모금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 **V. Conditions and Arrangemen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 **V.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 **Article 19 / 제 19 조**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request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or na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ituated within its territory. It shall submit with its request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1 as it has in its possession and as will enable the Committee to come to a decision.

모든 협약가입국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위해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

고, 요청을 보냈을 경우, 자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제 2조에 의거 동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한다.

#### **Article 20 / 제 20 조**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3, sub-paragraph (c) of Article 22 and Article 23, international assistance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may be granted only to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hich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decided, or may decide, to enter in one of the lists mentioned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제 13조 제 2항, 제 22조 및 제 23조의 (다)규정과 관련, 이 협약 하에서의 국제지원은 제 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유산목록중 어느 한 개의 목록에의 등재가 결정되었거나 등재될 수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에 한해 지원될 수 있다.

#### **Article 21 / 제 21 조**

1.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hall define the procedure by which requests to it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shall be considered and shall specify the content of the request, which should define the operation contemplated, the work that is necessary, the expected cost thereof, the degree of urgency and the reasons why the resources of the State requesting assistance do not allow it to meet all the expenses. Such requests must be supported by experts' reports whenever possible.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지원을 요청하는 신청 절차 및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보호사업의 계획, 필요한 작업, 예상 경비, 긴급도 및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의 능력 즉, 모든 경비를 부담시킬 수가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신청서는 될 수 있는 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Requests based upon disasters or natural calamities should, by reasons of the urgent work which they may involve, be given



immediate, priority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which should have a reserve fund at its disposal against such contingencies.

2. 재앙과 그 외의 천재지변으로 요청되는 지원신청은 긴급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의해 즉시 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또 동 위원회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사용할 수가 있는 예비비를 준비한다.

3. Before coming to a decision, the Committee shall carry out such studies and consultations as it deems necessary.

3. 동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필요한 연구 및 협의를 행한다.

### **Article 22 / 제 22 조**

Assistance grant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를 다음과 같다:

1. studies concerning the artistic, scientific and technical problems raised by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of this Convention;

1. 제 11조 제 2항 및 제 4항에 의거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서 제기되는 예술적,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2. provisions of experts, technicians and skilled labour to ensure that the approved work is correctly carried out;

2. 승인된 보존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공여;

3. training of staff and specialists at all levels in the field of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3.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있어 서 관련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

4. supply of equipment which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possess or is not in a position to acquire;

4. 해당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재 또는 구입할 수가 없는 기재의 공여;

5. low-interest or interest-free loans which might be repayable on a long-term basis;

5. 장기 상환조건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부;

6. the granting, in exceptional cases and for special reasons, of non-repayable subsidies.

6. 예외적, 특별한 이유의 경우 반환이 필요 없는 무상지원금의 공여.

#### **Article 23 / 제 23 조**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ay also provide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ational or regional centres for the training of staff and specialists at all levels in the field of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유산위원회는 또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직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또는 지역센터에 대해 지원을 줄 수 있다.

#### **Article 24 / 제 24 조**

International assistance on a large scale shall be preceded by detailed scientific, economic and technical studies. These studies shall draw upon the most advanced techniques for the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an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he studies shall also seek means of making rational

use of the resources available in the State concerned.

대규모의 국제원조는 상세한 학술적, 경제적 및 기술적 연구가 행해진 후에 주어진다. 이 같은 연구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및 기술 회복을 위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연구에는 해당국가의 가용자원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아울러 모색하여야 한다.

#### **Article 25 / 제 25 조**

As a general rule, only part of the cost of work necessary shall be born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ntribution of the State benefiting from international assistance shall constitute a substantial share of the resources devoted to each programme or project, unless its resources do not permit this.

원칙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 사업의 일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한다. 국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빼놓고 수혜국가는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중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Article 26 / 제 26 조**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the recipient State shall define in the agreement they conclude the conditions in which a programme or project for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is provided, shall be carried out.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receiving such international assistance to continue to protect, conserve and present the property so safeguarded, in observance of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agreement.

세계유산위원회와 수혜국가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이 주어지는 사업의 이행 조건에 대해 양자간 협정문을 체결한다. 국제지원을 받은 국가는 합의문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진다.

## VI. Educational Programmes

### VI. 교육 사업

#### Article 27 / 제 27 조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endeavor by all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educational and information programmes, to strengthen appreciation and respect by their peoples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e Convention.

1. 협약가입국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교육 및 정보사업을 통해서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 및 존중심을 높이도록 힘쓴다.

2. They shall undertake to keep the public broadly informed of the dangers threatening this heritage and of the activities carried on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2. 협약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Article 28 / 제 28 조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receive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the Convention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make known the importance of the property for which assistance has been received and the role played by such assistance.

본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을 받는 협약가입국은 지원의 대상이 된 유산의 중요성 및 지원의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Reports****VII. 보 고****Article 29 / 제 29 조**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in the reports which they submit to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give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is field.

1. 협약가입국은 유네스코의 정기총회가 의결한 기간 및 양식에 따라 동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그 외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관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 통보한다.

2. These reports sha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2. 제 1항의 보고는 세계유산위원회 공람에 부친다.

3. The Committee shall submit a report on its activities at each of the ordinary sess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의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 VIII. Final Clauses

### VIII. 최종 조항

#### Article 30 / 제 30 조

This Convention is drawn up in Arabic,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iv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본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한다. 이들 다섯 개의 원문은 똑같이 정문으로 한다.

#### Article 31 / 제 31 조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각 회원국에 의해 각기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고 수락되어야 한다.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비준 및 수락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Article 32 / 제 32 조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are invi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Organization to accede to it.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비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기총회에 초청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해 개방한다.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가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 **Article 33 / 제 33 조**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본 협약은 제 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및 가입서가 기탁된 날짜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그리고 가입서 제출 후 3개월부터 효력을 가진다.

### **Article 34 / 제 34 조**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to thos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have a federal or non-unitary constitutional system:

다음의 규정은 헌법상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의 제도를 취한 협약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the federal or central legislative power,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shall be the same as for those States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1. 본 협약의 규정중 연방 및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권한 아래서 실시되는 국가에서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협약가입국의 정부의 의무와 동일하다;

2.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comes under the legal jurisdiction of individual constituent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that are not obliged by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such States, countries, provinces or cantons of the said provisions, with its recommendation for their adoption.

2. 본 협약의 규정중 연방의 헌법상의 제도에 의해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 지워지지 않는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법적 권한에 실시 되는 경우에는, 연 방 정부가 이들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대해 채택에 관 한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 **Article 35 / 제 35 조**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the Convention.

1. 협약가입국은 본 협약을 폐기할 수가 있다.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하고, 유네스코 사무 총장에 기탁한다.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It shall not affect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denouncing State until the date on which the withdrawal takes effect.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수령 후 12개월부터 발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하는 날까지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rticle 36 / 제 36 조**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in Article 32,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31 and 32, and of the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35.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동 기구의 회원국, 제 32조의 비회원국 및 유엔에 대해 제 31조 및 제 32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그리고 전조의 폐기 통고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Article 37 / 제 37 조**

1. This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shall, however, bind only th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1. 협약은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개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해당 개정은 개정 협약의 협약가입국이 되는 국가에게만 해당된다.

2. If the General Conference should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2. 정기총회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했을 경우, 새로운 개정 협약에 따라 정한 바가 없는 한, 새로운 개정 협약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구협약을 비준, 수락하거나 가입할 수가 없다.

### Article 38 / 제 38 조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본 협약은 유엔 헌장 제 102조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유엔사무국에 등록한다.

Done in Paris, this twenty-third day of November 1972,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sevente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31 and 32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1972년 11월 23일 파리에서 유네스코 제 17차 정기총회 의장 및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은 원본 2통을 작성한다. 원본은 유네스코에 기탁하도록 하고 그의 인증 등본은 제 31조 및 제 32조에 규정된 국가 및 유엔에 속달한다. 이상은 유네스코가 파리에서 1972년 11월 21일 폐회한 제 17차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택한 협약의 정본이다

## 부록 7. Survey of the Impacts of Actions Plans for Dynamic Conservation of the GIAHS sites<sup>60)</sup>

### Background

Almost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series of GIAHS sites have been designated. Now the number of the GIAHS sites has reached 36 sites in 15 countries. In view of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GIAHS Programme, which is to aim at conservation of the GIAHS site while pursuing agricultur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ynamic conservation), it is the high time for us to extend our activity to consideration on which measures, activities, undertakings could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 of dynamic conservation.

In order to pursue thi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lready designated GIAHS sites including the impacts of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s for dynamic conservation from various aspects would be very effective. If the measures taken are evaluated and turn out to be not effective, analysis to detect the causes of the obstacles should be conducted to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s such as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the measures. Furthermore, effective methodology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should also be established to support this operation. It is our belief that only through appropriate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quality of the measures taken for conservation of GIAHS sites can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this survey is the first attempt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the GIAHS sites and impacts of implementation of measures of the action plans after their designation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under action plans are sufficiently achieving the objectives and whether there is any necessity for modification, improvement and alternation of the measures.

---

60) 2016년 9월에 각국에 요청한 설문으로, 본 결과를 바탕으로 GIAHS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됨

The outcome of this survey will be used to develop our thought on how best we can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s and furthermore, how we can establish a system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 **Request to Submit the Survey**

For this purpose, we would like to ask your cooperation in filling the required information in the survey sheet attached as Appendix and submit to the GIAHS Secretariat through E-mail (GIAHS-Secretariat@fao.org) by September 30<sup>th</sup>2016 with the following supporting materials, if available.

- a) Pictures of dynamic conservation activities or current state of the GIAHS sites.
- b) Land use map of each GIAHS site.

The outcome of this survey may also be used as a basic material to be used in a workshop which will be organized in near future to exchange experienc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ynamic conservation measures and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the action plans. Please designate the most appropriate writer who can compile and provide information for this survey. We may invite such a core writer to the workshop.

## **Appendix**

### **I. Summary Information of GIAHS Site**

<b>Name/Title of the GIAHS Site:</b>
<b>Date of designation:</b>
<b>Location:</b>
<b>Responsible Ministry/Institute:</b>
<b>Contact person:</b>
<b>E-mail address &amp; Phone No.:</b>

### **II. Description of the GIAHS site as described in the proposal document**

<p><b>1. Main features of the GIAHS site</b></p> <p>Please explain the GIAHS site(s) in your country with emphasis on;</p> <p><b>(1) Unique and remarkable features of the sites as a whole and;</b></p> <p><b>(2) Brief Description of the site(s) against each of the five GIAHS selection criteria</b></p>
---

1.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2.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systems;
3. Knowledge systems and adapted technologies;
4. 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Agri-culture); and
5. 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

### III. Dynamic Conservation Activities and Their Impacts

#### 1. Dynamic conservation activities after designation

##### 1.1 Main activities

Please write what are being and has been implemented as activities to implement dynamic conservation of the GIAHS site(s) in your country. These activities may include;

- i) Policie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 (please also write about any financial resource used for dynamic conservation);
- ii) Activities to conserve traditional technologies, practices, agro-biodiversity, landscapes by farmers in local communities of the GIAHS site;
- iii) Voluntary activities by farmers organizations, private companies, civil societies and voluntary groups.

#### 2. Impacts and Achievements

##### 2.1 The State of the GIAHS sites

Please provide the description on the current state of the GIAHS site. Are they conserved well or deteriorated? Are there any development aspects as a result of dynamic conservation? If deterioration is observed, please specify the major causes for the deterioration.

##### 2.2 The Impacts of the Action Plans Implemented

Please provide the description on the impacts of the activities implemented as the dynamic conservation in the following manner. Please also provide supporting data, where available, that can be comparable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 (A) Overall Impacts

##### (B) Agro-biodiversity and/or Biodiversity

- State of maintenance of agro-biodiversity and their sustainable use including related biodiversity conditions;

**(C) Agricultural development**

- Annual yield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e.g. crops, fish, fruits and livestock) in the GIAHS site;
- Any other chang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site including inflow of agricultural labour force, investment and

**(D) Economic Development**

- Increase in the sales of crops produced in the GIAHS site;
- Increase in farmer's income;
- Price of main GIAHS products;
- Increase in development of agro-tourism (tourists population and income);
- Others

**(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 Any change in the awareness, revaluation of the main features of the GIAHS site by local famers, local communities and nation as a whole;
- Involvement of various stakeholders (e.g. government, social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on dynamic conservation of GIAHS
- Women's role in production and other social life

**(F) Landscapes and Environmental aspect**

- Conservation of remarkable landscapes
- Conserv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V. Challenges faced by the GIAHS site**

**Challenges faced by the GIAHS site**

Please provide the description on the issues and challenges faced by the GIAHS site in implementing measures for dynamic conservation.

**V. Future Plans and Suggestions**

**1. Future activities plans**

**2. Comments and Suggestions**

## 참 여 연 구 원

목 차	소 속	참여자
1장 서론	농어촌연구원	이정환
2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모니터링 개념	(사)한국농어촌유산학회	최식인
3장 국내 농업유산 제도 및 현황	농어촌연구원	전택기 최예리
4장 국내외 사례 분석	(사)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유학열 이제이 김주인
5장 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개발		
- 모니터링 지표 개발방향	(사)한국농어촌유산학회	전영옥
- 모니터링 예비지표 도출		윤원근
- 모니터링 지표 검증		
-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	농어촌연구원	이정환
6장 농업유산의 체계적 인 보전관리방안 정립		
- 보전관리 체계	(사)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윤원근
- 모니터링 결과 환류		전영옥
- 모니터링 방법	농어촌연구원	이정환
- 제도적 연계방안		임상봉
7장 결론 및 제언	농어촌연구원	이정환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발 행 처

연구과제명 :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	
발 행 일	2016. 12
발 행 인	이 용 직
발 행 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